

월간

재정포럼

2021. September_Vol.303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9

권두칼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사회보험 재정관리 | 김용하

현안분석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 장우현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 문제 | 정재호

특집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 예산안 | 김태곤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송경호

정책토론포트

2021년도 PEMNA 온라인 총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코로나19 대응 직원 유지 크레딧에 대한 지침 공지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사회보험 재정관리 | 김용하 02

현안분석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08

정책성과 개선방향 | 장우현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 문제 | 정재호 38

특집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 예산안 | 김태곤 56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송경호 62

정책토론포트

2021년도 PEMNA 온라인 총회 8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코로나19 대응 직원 유지 크레딧에 대한 지침 공지 외 96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사회보험 재정관리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22년 국가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2년 조세부담률은 20.7%이고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산한 국민부담률은 28.6%이다. 2025년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과 유사한 20.6%인 데 반해 국민부담률은 29.2%로 높아졌다. 사회보장부담률이 0.7%p 높아진 결과이다. 조세 부담보다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중심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은 과거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발표된 사회보장위원회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도 이를 잘 알려준다. 2020년에 GDP 대비 12.5%인 사회보장지출이 2060년에는 27.6%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일반예산부담에 의한 것은 2020년 4.5%에서 2060년 4.8%로 단 0.3%p가 상승할 뿐이고 사회보험료 부담은 8.0%에서 22.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통합재정 관리의 핵심은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 재정관리를 여하히 하느냐가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의 필연적 결과이다.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한 공적연금

2060년 GDP 대비 14.8%p의 부담이 늘어나는 8대 사회보험은 이미 곳곳에서 재정상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2022년의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은 59.3조원이다. 국민연금 지출액이 30.9조원으로 늘어났고, 공무원연금은 20.1조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각각 4.6조원, 3.7조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 공적연금 지출액도 더욱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4대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다. 군인연금은 1977년경에, 공무원연금은 2000년경에 적립기금이 사실상 소진되었다. 공무원연금은 네 차례 개혁을 했고 군인연금은 세 차례 개혁을 하였지만, 2022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 보전액은 각각 3조원, 2.9조원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은 적립기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학연금은 2049년경에, 국민연금은 2057년경에 각각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방식으로 시작된 이들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적립금이 소진되고 재정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노년부양비에 따라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부담이 폭증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더 큰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조세수입으로 적자를 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금년에 900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립기금에 미래의 적자문제가 가려져 국민들 대다수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 • • •
**적립방식으로 시작된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적립금이 소진되고
 재정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노년부양비에 따라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부담이 폭증한다.**

급여 지출 증가로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적립기금제도를 가지고 있어 2057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이들 두 제도에는 기금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도 1년 급여 지출액의 50% 미만이다. 여기에 더해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매년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2022년 보험료율은 6.99%이지만, 현재의 지출 추이라면 2026년경에는 법정 상한선인 8%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2016년 이후 4년간 연평균 19.7%씩 증가했다. 2009년에 1조원대였던 급여비가 11년 만에 7조원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060년경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은 24%,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6%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제도의 보험료 부담이 소득의 30% 수준에 이르면, 그 당시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 • • • •

**우리나라의
조세 조달 능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재정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고지원을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인구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제도인데, 2019년에 보험료율을 1.6%로 인상한 데 이어 2022년에는 또 1.8%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립기금은 사실상 2021년에 소진된다. 현재는 수조원의 차입으로 명목상의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수지 적자가 없어지겠지만, 보장성 확대에 따른 급여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산재보험도 연금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에 턱없이 부족한 적립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재정 절감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무리한 정부 재정지원 요구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이처럼 8대 사회보험 재정은 장·단기적으로 건전성이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지금 당장 쓰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사회보장을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 방식으로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서는 가입자가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하면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 인상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무리하게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지 못하는 균형장치가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면서 보험료 인상은 부정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재정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조세 조달 능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100조원 내외의 고착된 적자 재정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만, 세금을 용이하게 더 부과할 만한 곳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제도까지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공채 발행뿐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재정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가능한 자제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는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면서 국고지원의 증액을 요구하지만, 조

세 부담 역시 사회보험료 부담 주체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현명한 요구라 할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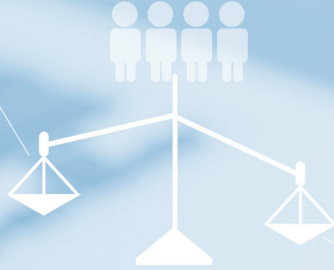
2022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956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22년에는 1,068.3조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3%에서 50.2%로 상승한다. 2025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8.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60%대에 이른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역시 가까운 미래에 일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전체가 적자 불감증과 채무 불감증에 빠졌던 일본은 이제 채무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재정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문제의 답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균형화

인구는 세계 제일의 고령화 사회로,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든 사회보험 재정이든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균형화 이외에는 답이 없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장기성 보험인 공적 연금은 단년도 균형을 넘어서 수급 부담의 균형구조로 한시바빠 이행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적인 균형구조는 어렵지만, 가능한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기 위해서 공적기금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고용보험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실업 위기에 대비하여 충분한 기금의 확보가 필요하고, 산재보험은 누적되고 있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 연금 지급을 위해서 책임준비금을 꾸준히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두가 현세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노년부양비가 100%를 넘는 미래에 우리의 자녀·손자녀 세대가 짊어질 무게를 생각한다면 방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
**사회보험 재정관리에는
 현세대의 희생이
 요구되지만,
 노년부양비가
 100%를 넘는 미래에
 우리의 후세대가
 짊어질 무게를
 생각한다면 방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장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 문제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¹⁾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wchang@kipf.re.kr)

I. 서론

우리나라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1981년 경제기획원 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관급 조직으로 성장한 현재, 초창기에 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위상에 있어서도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주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정경제의 구현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경쟁정책 당국의 정책성과 개선 가능성 모색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징금이 국민경제적으로 어떻게 부과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공정경제 정책의 개선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연구에서는 개별적이며 부분적인 효과를 확인한 경우는 드물게 있었어도 국민경제적 중요성 측면에서 전체적인 효과를 확인해 보려는 시도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1) 본고는 장우현·강희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과징금 유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에서 분석한 내용의 일부를 재정포럼에 소개할 목적으로 정리·발신시킨 원고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정성과관리 및 평가 측면에서 과징금의 정책성과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문서자료 형태로 기록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들을 실증분석 가능한 형태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경제 전반의 기업데이터와 결합하여 과징금 부과기업의 특징은 물론 과징금 부과 이후 과징금 부과기업의 성과 변화, 과징금이 부과된 산업의 시장집중도 등 결과지표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Ⅱ장에서는 과징금의 의의와 현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발표자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과징금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기반으로 구축한 과징금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산업생태계 자료와 연계한 결합 데이터베이스의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제Ⅴ장은 본 연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장으로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하여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제Ⅵ장에서는 분석된 결과에 기초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제Ⅶ장은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Ⅱ.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의의와 현황

본고의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과징금을 의결서로부터 직접 구축한 미시자료 수준에서 살펴보지만, 과징금의 본질과 현황에 대해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법적 근거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초로 과징금의 정책적 의의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정책과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의 근거나 성격에 관한 법적인 논의는 다수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법적인 논의나 성격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관한 것이므로 본 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목적들을 위한 수단으로 과징금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과징금의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정성과관리 및
평가 측면에서
과징금의 정책성과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은 크게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세 정책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살펴보면,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범용의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책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표 1>과 <표 2>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은 크게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경쟁정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정책 당국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주요 정책들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정책 수행을 위한 근거와 규율을 위해 규정된 관련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의 행위 남용이나,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기업들의 담합행위나 사업자 단체의 담합조장행위 금지, 그리고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 상대방의 거래가격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율이 포함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대분류 정책은 소비자정책이다. 전통적으로 경쟁당국은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소비자의 후생을 중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적인 근거로는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등의 법을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 대분류는 기업거래정책인데,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제성장 맥락에 따라 중요한 이슈가 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거래, 가맹사업 거래, 유통거래, 대리점 거래 등과 관련한 공정경제 이슈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 거래법」 등을 통해 규율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살펴보면, 과징금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에만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범용의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과징금의 법적인 근거는 앞서 소개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률들의 다양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의 예를 살펴보면 2021년 9월 현재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 제31조²⁾ 등이다. 이처럼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과 관련된 일반적 경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과징금의 정책적 의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공정경제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중 법적 처분에 있어 과징금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제6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관련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에 관련한 과징금을 규정한다. 제22조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관련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제24조2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을 규정한다. 제28조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관련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한다.

<표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정책분류와 관련 법률: 경쟁정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경쟁 정책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제3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가격남용	제3조의2
		출고조절	제3조의2
		사업활동 방해	제3조의2
		진입제한	제3조의2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 저해	제3조의2
	기업결합심사		
	경제력 집중억제	상호출자금지제도	제9조
		채무보증제한제도	제10조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제11조
		지주회사제도	제8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제11조의2 제11조의3
	부당공동행위 (담합)	가격의 결정유지 변경	제19조 제1항
		거래조건 및 대금지급 조건 설정	제19조 제2항
		거래제한	제19조 제3항
		시장분할	제19조 제4항
		설비제한	제19조 제5항
		상품의 종류규격제한	제19조 제6항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관리	제19조 제7항
		입찰담합	제19조 제8항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 방해	제19조 제9항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제26조 제1항
		사업자 수 제한	제26조 제2항
		사업활동 방해	제26조 제3항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	제26조 제4항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제23조 제1항 제1호
		차별적 취급	제23조 제1항 제1호
		경쟁사업자 배제	제23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고객 유인	제23조 제1항 제3호
		거래강제	제23조 제1항 제3호
거래상지위 남용		제23조 제1항 제4호	
구속조건부거래		제23조 제1항 제5호	
사업활동 방해		제23조 제1항 제5호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지원행위, 부당내부거래)	제23조 제1항 제7호		
특정불공정거래행위	신문업	제3조의 제21항 제23조 제1항 신문업 고시	
	병행수입	제23조 제1항 병행수입 고시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		제29조	

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 내용을 기반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 <https://www.ftc.go.kr/www/reviewPolicyList.do?key=20>, 검색일
 자: 2021. 8. 11.; 「공정거래법」,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를 기초로 저자 작성

경쟁정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정책 당국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주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의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과 규율을 위해
 규정된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과징금은 예산액이 4,175억원, 실제 부과 건수는 110건에 부과액은 3,803억원, 과징금 환급액은 2,516억원이다. 국민들의 공정경제 구현에 대한 수요와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 과징금 부과 건수나 규모는 현저히 과소한 측면이 있으며 경제적 중요성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표 2>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정책분류와 관련 법률: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

대분류	중분류	관련 법률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일반	소비자기본법
	불공정약관심사	약관법
	부당표시광고	표시광고법
	방문다단계판매	방문판매법
	할부거래	할부거래법
기업거래정책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법
	유통거래	대규모유통법
	대리점거래	대리점거래법

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 내용을 기반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 <https://www.ftc.go.kr/www/reviewPolicyList.do?key=20>, 검색일자: 2021. 8. 11.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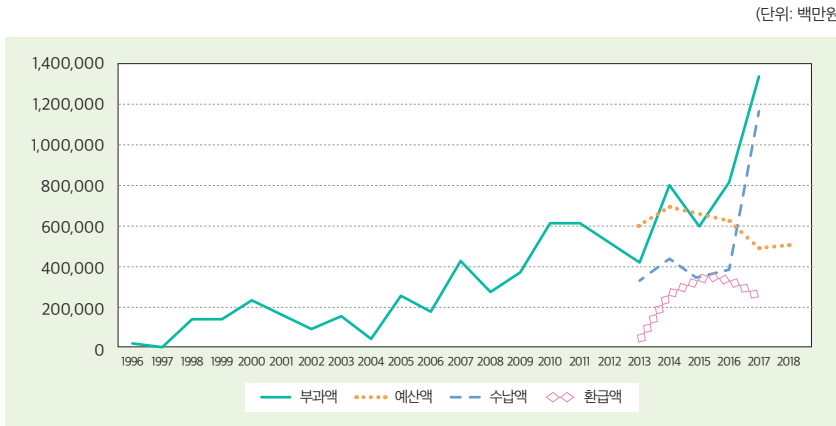
2. 과징금 부과 현황

다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통계연보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과징금의 부과 현황을 살펴보자.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설정된 예산액이 있으나, 위법행위의 적발과 심의에 따라 결정되는 과징금의 성격상 반드시 예상한 대로 부과되거나 수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부과액과 수납액 사이에는 차이가 생긴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액도 발생한다. 부과 대상에 불복하여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 승소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0건, 처분 대상 기업 263개, 과징금 예산액은 4,175억원, 부과액은 3,803억원, 재판 부분승소 또는 패소 등의 원인으로 인한 부과 과징금의 환급액은 2,516억원³⁾이다.

현황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뒤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 국민들의 공정경제 구현에 대한 수요와 현재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 과징금 부과 건수나 규모는 현저히 과소하고 경제적 중요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어, 과징금이 공정경제의 유효한 도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을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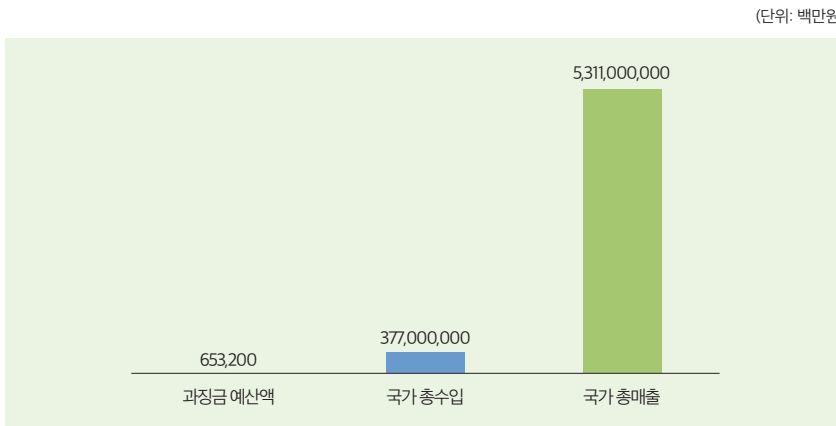
3) 공정거래위원회(2021); 국회에 산정책처(2020)

[그림 1] 연도별 과징금 예산액, 부과액, 수납액, 환급액 추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17; 2021);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2] 2015년 과징금 예산액, 국가 총수입, 국가 총매출 규모 비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6)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록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2017년까지의 자료 기준으로는 추세상으로 과징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 성장을 거처온 우리 경제의 규모로 볼 때 유의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센서스 총조사이며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계 중 하나인 경제총조사가 2016년에 2015년 기준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시점의 자료로 표준화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5년 예산 기준 과징금의 국가 총수입 대비

비록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2017년까지의 자료 기준으로는 추세상으로 과징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 성장을 거처온 우리 경제의 규모로 볼 때 유의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를
검토한 결과,
성과지표가 정성지표
또는 산출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정량적인 결과지표로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중은 0.1569%,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에 의한 국가 생산부문의 총매출액 대비 0.0123%에 불과하여, 공정경제 조타의 주된 도구로서의 과징금에 대한 기대 위상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통계자료와 「공정거래법」의 개별 조항을 기초로, 과징금이 실제 경제 현장에서 공정경제 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정책수단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과징금의 규모는 비중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격적으로 과징금의 부과가 실제 기업과 산업에 미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제Ⅲ장에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관련 재정성과관리체계 검토

본 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2020년도 성과계획서를 기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관련된 재정성과관리체계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관련된 성과지표들은 일반적으로 만족도 또는 단속 건수, 제도 개선 수 등 정성지표 또는 산출지표로 볼 수 있다. 성과지표 설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지표는 실제 경제적 성과에 관한 정량적 결과지표라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표 3>은 과징금이 성과지표에 포함된 대표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그램 II-1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과 관련된 단위사업 II-1-일반재정(1)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해당 단위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고발, 과징금 등 시정조치 건수, 만족도, 협약체결 건수 등으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는, 실제 과징금 부과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수익배분에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보다 타당한 결과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하도급 관련 지표들은 장우현·우석진(2015), 우석진·장우현(2018), 장우현(2019; 202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미 현재에도 실제 측정 가능한 지표라는 점에서

<표 3>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프로그램 II-1, 단위사업 II-1-일반재정(1)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 출처	분야	
		구분	'16	'17	'18	'19				'20
(1) 하도급 시정 조치 건수(건)	0.3	목표	100	107	110	118	121	고발 + 과징금 + 시정명령 + 과태료 + 경고 처분 건수	사건 처리 시스템	일반 재정
		실적	105	107	112	118	-			
(2)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고객만족도 (점)	0.2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1.5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 간 10점 차)한 뒤,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산술평균(70%)+전반적인 체감만족도(30%)	전문 조사 연구 기관 용역 보고서	일반 재정
		실적	신규	신규	62.3	59.4	-			
(3) 가맹·유통 분야 시정 조치 건수(건)	0.3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4	고발 + 과징금 + 시정명령 + 과태료 + 경고 처분 건수	사건 처리 시스템	일반 재정
		실적	60	59	61	64	-			
(4) 공정거래 협약 체결 건수(건)	0.2	목표	211	222	228	314	318	기존 협약체결 사업자수 + 신규 협약체결 사업자수	협약 체결 기업의 신청서, 보고서, 문서	일반 재정
		실적	220	227	306	314	-			
합계	1.0									

출처: 대한민국정부(2019), pp. 80~83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하도급 관련 정책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하도급자료와 기업생태계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충분히 정량적인 결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의 개선을 모색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성과관리체계를 고려해 보아도, 앞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결과지표보다 법에 따른 시정 건수⁴⁾ 등 산출지표를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 관련 정책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하도급자료와 기업생태계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충분히 정량적인 결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의 개선을 모색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4) 과징금이 포함된다.

본고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징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이를 위해 2008~2019년 의결서 자료를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자료와의 정합성 확인을 거쳐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구축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재정성과관리 체계에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제도적으로 과징금의 실효성이 적절히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체계의 미흡은 이후 장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과징금 성과의 미흡과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어지는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증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징금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해당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재정성과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량 결과지표 도출 사례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과징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업-산업생태계 정보 결합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자료에 기반한 과징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고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징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안에 담겨 있는 과징금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원자료로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자에 의해 정리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과징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008~2019년 의결서 자료를 전수 기준으로 확보하는 한편, 해당 의결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자료와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로 거쳐, 결과적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완료 상황에서 평가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 정리나 의결서 공개는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정책 제언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참고 자료로, 2019년 단년도의 의결서 목록 작성 결과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활용한 2019년에 작성된 의결서는 총 422건이며, 그중 대표 조치유형이 과징금으로 결정된 것은 96건이다. 그러나 대표 조치유형이 과징금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과징금을 조치로 포함하고 있는 의결서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전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표 4> 2011년~2017년 위반행위 대분류별 과징금처분 기업 수와 비율

(단위: 개, %)

2011~2017년 위반행위	과징금처분 기업 수	비율
가맹사업법 위반	9	0.44
경제력 집중 억제	21	1.02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47	2.28
방문판매법 위반	9	0.44
부당공동행위	1,428	69.32
불공정거래행위	191	9.27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107	5.19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5	0.2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4	0.19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6	0.29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61	2.96
하도급법 위반행위	172	8.35
전체	2,060	100.00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 번 의결되어도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등도 있어 동일 사건에 대해 하나의 문서 자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의결서를 전부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축한 주된 디지털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조치일자, 사건번호, 의결번호 및 사건명, 직권신고 여부, 위반행위 종류 분류 변수를 구축하고 대표피심기업명, 피심기업명과 주소 등 기업 식별용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관련 매출액과 산정 기준, 1차 조정액과 2차 조정액 그리고 최종 부과과징금 액수까지 확보함으로써, 의결서에 담긴 과징금 정보를 다양한 정량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구축한 DB에서는 2,060개 기업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건별로 확인하여 중복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을 고려한다면 처분기업의 수는 더 적은 숫자가 된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구축한 의결서 DB 자료를 기초로 위반행위 분류별로 과징금 처분 기업 수와 비율을 계산하면 <표 4>와 같다.

과징금 관련
위반행위를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부당공동행위(담합)와 관련된 과징금 처분 기업 수가 69.3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여러 기업이 연계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신고자감면제도의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구축한 의결서 데이터베이스를 한국기업데이터(2010~2018년)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 단년도 기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담긴 35만 9,582개의 기업 중 단 231개 기업만이 과징금 부과기업으로 확인되어,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전체 기업 대비 과징금 기업 수 비율은 0.06%에 불과했다.

유형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과 관련된 과징금처분 기업 수가 69.3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불공정거래행위가 9.27%, 하도급법위반행위가 8.35% 수준으로 유의한 데 반해 다른 대분류 항목들은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하여 상당히 적은 처분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의 수가 많은 것은 공동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담합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자진신고자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업들의 자진신고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기업-산업생태계자료와 과징금 DB의 결합과 기초통계

본 절에서는 1절에서 구축한 의결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대표적인 기업자료 중 하나인 한국기업데이터(2010~2018년) 등 기업생태계자료와 연계하여 정량분석자료를 구축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된 판결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법인등록번호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이 중 확인 가능한 법인등록번호와 의결서에 제시된 업종 및 기업 주소와 대표자 이름 등의 자료를 고려하여 의결서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합성을 재확인한 후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와 연계하였다.

참고로 본 장과 제V장에서 사용한 자료는 구축 의결서 데이터베이스 중 2011년부터 2017년의 자료인데, 이는 본고에서 활용한 기업생태계자료인 한국기업데이터 자료 중 2010~2018년도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기 때문이다.

먼저 결합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단년도인 2015년 자료를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와 연계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5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는 35만 9,582개의 기업자료가 있으나 이 중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들을 종합하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와 연계할 경우 확인되는 2015년 과징금 부과기업의 수는 단 231개이다. 이는 한국기업데이터 기준으로 0.06%의 기업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분류 산업별 기업 분포는 <표 5>와 같다.

5) 의결서에서 KISline 자료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기업의 정보를 추가 확보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 통합데이터베이스 기준 2015년 과징금 부과기업/비부과기업 대분류 산업별 분류

(단위: 개, %)

대분류명	부과	비부과	합계	과징금 부과기업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1	3,021	3,022	0.03
광업	0	411	411	0.00
제조업	87	132,132	132,219	0.0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	799	808	1.1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3,385	3,386	0.03
건설업	55	45,930	45,985	0.12
도매 및 소매업	25	90,215	90,240	0.03
운수업	16	9,442	9,458	0.17
숙박 및 음식점업	0	3,685	3,685	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16,323	16,335	0.07
금융 및 보험업	0	2,073	2,073	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11,348	11,348	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	17,318	17,339	0.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10,061	10,064	0.0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	58	59	1.72
교육서비스업	0	2,101	2,101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4,618	4,618	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	1,604	1,604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	4,826	4,826	0.00
국제 및 외국기관	0	1	1	0.00
합계	231	359,351	359,582	0.06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체적으로 기업 비중이 낮지만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그리고 건설업과 운수업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9개 대분류 산업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이 없는 등의 편차가 나타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참고로 다른 연도의 기업목록까지 추가 활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었던 2015년 과징금 부과기업의 최대 수는 248개였으며, 이들이 총 341건⁶⁾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2015년 단 한 해임에도 다른 사건으로 과징금을 중복 부과받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8개 기업 중 43개의 기업이 2번 이상, 그중 한 개 기업은 한 해에 아홉 번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분류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비중이 낮지만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과 운수업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9개 대분류 산업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이 없는 등의 편차가 나타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6) 참고로 외국기업,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을 수 없었던 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면 364건이므로 한국기업데이터 활용 시 364건 중 341건을 연계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2017년
연계자료를 기반으로
기업규모별로 과징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비해
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금액
비중은 소상공인의
경우 22.30%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은 0.17%에
그치는 등 기업규모에
반비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6> 2015년 과징금 부과기업/비부과기업 기초통계 요약

(단위: 백만원, 년)

과징금	기업 수	평균 과징금	평균 총자산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업력
비부과	359,351	-	20,077	9,711	524	9
부과	231	2,682	3,937,958	2,048,608	106,261	28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기업데이터와 연계 후 기초통계를 구성해보면 2015년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의 평균 총자산은 약 3조 9,400억원, 평균 매출액은 약 2조 486억원, 평균영업이익은 약 1,062억원인 데 비해 평균 과징금은 기업당 약 26억 8,200만원에 그쳐, 2015년 평균 영업이익 대비 평균 과징금 비율이 2.5%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수치를 계산해보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은 0.13%로서 비율을 계산하는 의미가 의심스러운 수준으로 낮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을 살려,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과 같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확인되는 1,202개의 과징금 부과기업 중 대기업은 241개, 중견기업은 405개, 중기업은 332개, 소기업은 141개, 소상공인은 44개로 분포되며,⁷⁾ 대기업의 경우 241개 기업이 총 365건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비해 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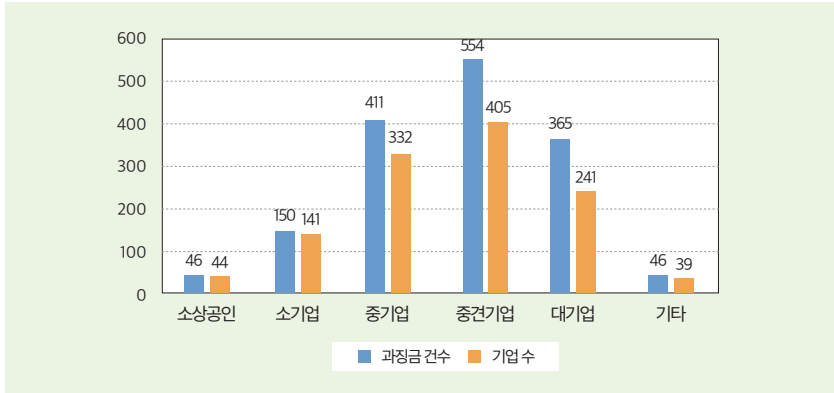
중요한 점은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금액 비중이 22.30%에 달하는 반면, 소기업은 이 수치가 3.33%, 중기업은 1.45%, 중견기업은 0.47%, 대기업은 불과 0.17%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본 비율은 관련 매출액에 대한 법적 상한 비율 등 명목적 비율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실효 과징금/매출액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연도의 매출액과 과징금 비율이며,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위법이사결정의 책임 단위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위법행위 역지력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제 V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소상공인은 과징금 부과 영향에 예상한 방향으로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데,

7) 원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만, 본 분석에서는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로 소상공인으로 분류하여 나누었다. 분류 기준은 한국기업데이터 기업규모를 적용하였다.

[그림 3] 2011~2017년 과징금 건수/기업 수 규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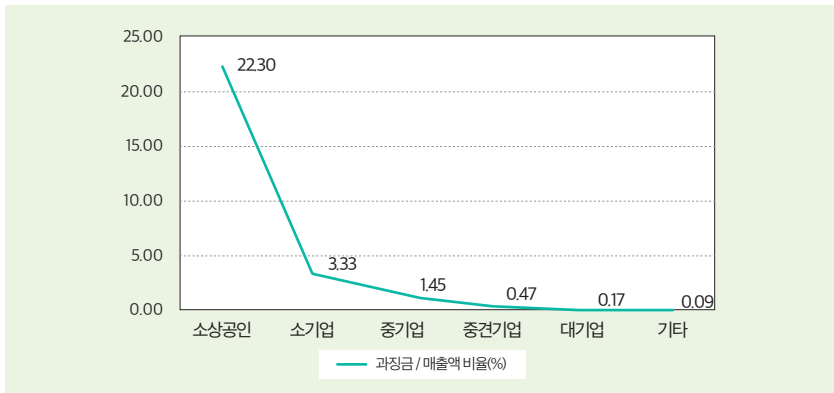
(단위: 건, 개)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2020)를 연계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2011~2017년 과징금 부과기업 기업규모별 과징금/매출액 비율

(단위: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2020)를 연계하여 저자 작성

이는 이와 같은 상대적 과징금 비중의 크기를 주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 평균 대비 0.17% 수준의 과징금이 기업행태를 교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징금의 형평성이나 과징금의 유효성 개선 측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수치로 볼 수 있다.⁸⁾

비록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기업 차이가 존재하며 적발 확률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참고를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한다. 만일 같은 비율을 적용했

대기업에 부과된 연간 매출액 평균 대비 0.17% 수준의 과징금은 기업행태의 교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 차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한 관대화 경향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국가 수입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기회 손실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이는 상대적인 차이이므로 관점에 따라서는 0.17%가 적절하고 22.30%가 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VI장에서의 억제력 분석 결과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2012) 등에서 확인되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적용되는 비율은 억제력도 없고 국제적으로 이상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요약하면, 소분류 산업분류가 확인되는 기업에 한정할 경우 2011~2017년간 연별로 집계한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기업 총매출액은 2경 7천조원에 달하지만 과징금 관련 매출액은 358조원, 부과 과징금은 5조 1천억원, 과징금 기업 수는 1,200개에 그친다.

다면 해당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7년간 총 465조원, 연간 66조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개산(概算)해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기간의 총 과징금 부과액수가 5조원 남짓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인상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단순히 매출액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과징금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경제 전체적인 구조모형 분석에 따른 수치가 아니므로 단순 참고 수치이지만, 만일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차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한 관대화 경향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이는 국가 수입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기회 손실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표 7>은 기업 규모별 기초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표 7> 통합데이터베이스 기준 2011~2017년 과징금 부과기업 규모별 기초통계

(단위: 백만원, 년, %)

기업 규모	평균 매출액	평균 총자산	평균 영업이익	평균 업력	평균 부과 과징금	과징금 건수	기업 수	과징금 /매출액 비율
소상공인	2,995	20,252	-113	14.11	668	46	44	22.30
소기업	11,851	12,255	321	15.96	394	150	141	3.33
중기업	67,117	94,648	1,441	22.03	975	411	332	1.45
중견기업	899,895	1,180,775	35,332	31.55	4,267	554	405	0.47
대기업	7,408,255	9,662,280	395,518	34.34	11,987	365	241	0.17
기타	2,173,670	12,417,881	106,057	32.82	1,986	46	39	0.09

주: 과징금/매출액 비율 계산 시에는 100만원 단위 반올림을 적용하지 않아 미세 단수 차이가 발생함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최종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요약하면, 소분류 산업분류가 확인되는 기업에 한정할 경우 2011~2017년간 연별로 집계한 총매출액은 2경 7천조원, 관련 매출액은 358조원, 부과 과징금은 5조 1천억원, 과징금기업 수는 1,200개이다. 연평균으로 보면 4천조원 규모의 매출액에 7,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 부과기업 수는 171개로 이들이 평균 224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소분류 산업 기준으로 보면 부과 과징금 기준으로 상위 산업은 토목 건설업, 건물 건설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보험업, 1차 철강 제조업 등이며, 특히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은 각각 84개 기업 183건 총 9,800억원 부과, 63개 기

업 114건 총 5천억원 부과로 유의한 반복성과 금액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총 223개 소분류 산업 중 7년간 한 번이라도 과징금이 부과된 산업의 수는 122개, 한 번도 과징금이 분류되지 않은 산업은 101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V.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2010~2018년)

본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소개한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먼저 과징금 부과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만일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개별 기업이 영업활동에 충분한 악영향을 받는다면 과징금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과징금 부여가 개별 기업의 영업지표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과징금의 억제적 효과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과징금에 의해 제약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특히, 해당 기업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적발하지 못해 일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충분하지 않은 금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개별 기업들이 더 많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적발 기업은 비교 기업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해당 분석은 중요하다. 예컨대, 위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들이 다수의 관급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통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일부의 담합에서만 적발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기업의 담합 이익은 늘고 매출액은 줄어드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분석은 과징금이 전체 시장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부과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주된 기능 중 하나가 시장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쟁의 제고임을 고려해볼 때 과징금이 개별 산업(시장)의 시장집중도 등 성과지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앞 장에서 과징금 부과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만일 과징금 부과가 해당 시장의 집중도나 경쟁도를 개선하는

**본 장에서는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분석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
과징금 부과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과 과징금이
전체 시장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과징금 부과 여부가 해당 기업의 재무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해 기본적인 잠재 변화의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처치가 변화에 추가적으로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

데 유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면 과징금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만일 해당 시장의 집중도나 경쟁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과징금 부과방식 및 운영 자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1. 과징금 부과가 해당 기업의 재무지표에 미친 영향 분석

먼저 과징금 부과 여부가 해당 기업의 재무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한 모형은 고정효과 패널 모형으로, 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연도와 산업의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구축한 패널의 길이가 충분하다는 장점을 이용해 기간별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기간별 증분을 분석하였다. 모형을 요약하면 기본적인 잠재 변화의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과징금 부과 여부가 변화에 추가적으로 미친 영향을 측정할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1기간 재무상태 변동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Delta y_{i,t} = \alpha + \beta F_{i,t} + x_{i,t-1}\gamma + \nu_i + v_t + \varepsilon_{i,t} \quad \text{식 (1)}$$

$\Delta y_{i,t}$: 기업 i 의 $t-1$ 연도부터 t 연도까지의 성과지표
(매출액, 영업이익) 증분

$F_{i,t}$: 기업 i 의 t 연도 과징금 부과 여부

$x_{i,t-1}$: 기업 i 의 $t-1$ 연도의 특성

ν_i : 기업고정효과

v_t : 시간고정효과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해 연도 과징금 부과기업의 매출액 증분은 평균 400억원 줄지만, 영업이익 증분은 평균 100억원 수준에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이 적절히 이뤄지고 과징금 부과가 행위 억제를 위한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표 8> 과징금 부과 기업 재무지표 효과 분석: 1기 전체 기업 고정효과모형

(단위: 백만원, 건, 개)

고정효과모형(기업, 연도)	(1) 매출액 증분	(2) 영업이익 증분
과징금기업 여부	-40,801*** (2,264)	10,339*** (837.0)
전기총자산	0.00522*** (0.000170)	0.0120*** (6.67e-05)
전기영업이익	-0.310*** (0.00230)	-
2012년	-1,076*** (220.5)	-45.86 (81.50)
2013년	-1,412*** (221.3)	32.59 (81.83)
2014년	-1,629*** (219.8)	53.47 (81.27)
2015년	-1,894*** (219.6)	130.8 (81.19)
2016년	-1,672*** (220.1)	128.0 (81.35)
2017년	-992.2*** (223.7)	229.5*** (82.70)
2018년	-1,752*** (234.8)	21.77 (86.82)
전기매출액	-	-0.0426*** (0.000258)
상수	2,079*** (170.1)	221.4*** (62.92)
관측치 수	2,163,458	2,163,458
결정계수	0.012	0.027
기업 수	569,494	569,494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2020)를 연계하여 저자가 직접 추정된 표임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오히려 이는 해당 기업에 평균보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들이 더 존재하여 이로부터 부당 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일관적이다. 특히 모형으로부터 예측된 정상이익 수준 대비 한 해 영업이익 추가 증분이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추정기간 적발된 한 기업에 7년간 누적 부과된 과징금 평균 32억원⁹⁾을 월등히 웃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해당 기업들에 적발되지 않은 더 많은 위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과징금 부과가 기업의 위반행위 억제에 충분한 유인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을 강

과징금 부과기업은 유사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400억원가량 줄지만 영업이익이 오히려 100억원 넘게 더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징금 부과가 행위 억제를 위한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적발된 한 해의 과징금 평균이 아닌, 해당 기업이 7년간 누적인 과징금의 평균 크기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매출액에서는
감소가 확인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증가가 확인되어
전체 기업 분석과
방향성에 있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력히 함의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유사한 기업과 비교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아도 오히려 과징금 이상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면 과징금이 행위억제의 수단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의 규모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음에는 대기업/중견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으로 나누어 과징금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9>에 전체 분석이 요약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매출액에서는 감소가 확인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증가가 확인되어 전체 기업 분석과 방향성에 있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분석해 볼 경우에도 규모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감소할 뿐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일관적이다. 매출액 증분은 감소하지만, 영업이익 증분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한정해서 분석할 경우 소상공인은 1기간 효과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반에서 음(-)의 효과가 나타나, 과징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를 고려할 때 적발된 사건이 전체 업무량 대비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 과징금이 유효한 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기업과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과징금의 규모가 위법행위의 억제에 충분한 규모가 아닐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하게 2기와 3기, 즉 과징금 부과 후 2년 후와 3년 후의 결과를 살펴봐도 앞서 확인한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1년 후와 달리 부과 후 2년 후와 3년 후에는 영업이익의 부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는다.¹⁰⁾ 정리하면 과징금 부과기업은 부과받지 않은 유사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줄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과징금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적발된 사건이 주된 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의 영향이 재무지표에 단기적으로 정상 반영되는 현상이 발견되지만, 이와 같은 현상도 장기적으로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위법행위의 적발이 충분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우현·강희우(2020)를 참고

<표 9> 과징금 부과 기업 재무지표 효과 분석: 1기 기업규모별 고정효과모형

(단위: 백만원, 건, 개)

고정효과모형 (기업, 연도)	(1) 매출액 증분 (대/중견)	(2) 영업이익 증분 (대/중견)	(3) 매출액 증분 (중소)	(4) 영업이익 증분 (중소)	(5) 매출액 증분 (소상공인)	(6) 영업이익 증분 (소상공인)
과징금기업 여부	-73,076*** (21,549)	26,387*** (8,067)	-2,824*** (378.2)	462.5*** (116.1)	-7,091*** (267.2)	-206.9*** (67.64)
전기총자산	-0.0126*** (0.00238)	0.0273*** (0.000935)	0.0121*** (0.000376)	-0.0238*** (0.000114)	0.0496*** (0.00091)	0.0126*** (0.00023)
전기영업이익	-0.154*** (0.0169)	-	-1.223*** (0.00501)	-	-1.424*** (0.00536)	-
2012년	-23,353** (10,369)	2,481 (3,879)	-610.5*** (29.58)	14.30 (9.085)	-149.8*** (8.434)	-2.523 (2.135)
2013년	-34,031*** (10,353)	4,631 (3,873)	-684.9*** (30.53)	56.79*** (9.379)	-163.3*** (30.53)	-3.761* (2.051)
2014년	-40,857*** (10,307)	2,654 (3,856)	-866.4*** (31.05)	78.91*** (9.542)	-216.9*** (7.841)	-4.827** (1.985)
2015년	-55,461*** (10,276)	7,432* (3,844)	-948.1*** (31.75)	115.9*** (9.758)	-239.1*** (7.7)	-1.985 (1.949)
2016년	-44,216*** (10,235)	5,668 (3,828)	-885.6*** (31.78)	167.0*** (9.772)	-266.6*** (7.734)	-6.157*** (1.958)
2017년	-6,731 (10,253)	8,914** (3,835)	-682.1*** (32.25)	184.3*** (9.927)	-243.4*** (7.874)	-2.962 (1.994)
2018년	-25,232** (10,375)	804.3 (3,882)	-1,154*** (33.77)	193.9*** (10.41)	-331.5*** (8.257)	-2.053 (2.092)
전기매출액	-	-0.0535*** (0.00199)	-	-0.0711*** (0.000346)	-	-0.0916*** (0.00031)
상수	60,892*** (7,610)	3,043 (2,911)	1,468*** (22.52)	575.9*** (7.149)	382.4*** (6.622)	120.1*** (1.706)
관측치 수	35,925	35,925	1,086,006	1,086,006	975,279	975,279
결정계수	0.007	0.037	0.071	0.119	0.095	0.109
기업 수	5,693	5,693	275,375	275,375	261,538	261,538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3. 대/중견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는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을 의미함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2020)를 연계하여 저자가 직접 추정함 표임

하게 이뤄지거나, 적발된 경우에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하게 과징금이 책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함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처분행위 유형에 따른 분석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의 예시로서는 앞선 제IV장에서 약 70%에 달하는 처분이 부당공동행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당공동행위와 부당공동행위가 아닌 경우로 나누

반면, 매출액 대비 과징금 규모가 컸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기간 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반에서 음(-)의 효과가 나타나, 과징금의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다.

<표 10> 과징금 부과 기업 재무지표 효과 분석: 부당공동행위 위반과 그 외

(단위: 백만원, 건, 개)

고정효과모형 (기업, 연도)	(1) 매출액 증분 (부당공동행위)	(2) 영업이익 증분 (부당공동행위)	(3) 매출액 증분 (부당공동행위외)	(4) 영업이익 증분 (부당공동행위외)
과징금기업 여부	-24,776*** (2,747)	7,396*** (1,031)	-89,051*** (3,323)	25,235*** (1,431)
전기총자산	0.006*** (0.0002)	0.0123*** (0.00007)	0.0136*** (0.00002)	0.0131*** (0.00007)
전기영업이익	-0.325*** (0.002)	-	-0.142*** (0.002)	-
2012년	-1,076*** (223.55)	-32.16 (83.95)	-1,255*** (187.8)	-49.97 (80.82)
2013년	-1,418.34*** (224.69)	47.94 (84.38)	-1,497*** (188.8)	59.07 (81.23)
2014년	-1,418.34*** (224.69)	55.06 (83.89)	-1,674*** (187.7)	54.21 (80.75)
2015년	-1,612.13*** (223.35)	94.85 (83.81)	-1,972*** (187.5)	140.0* (80.68)
2016년	-1,809.07*** (223.16)	110.07 (84.02)	-1,783*** (188)	118.7 (80.88)
2017년	-902.23*** (227.35)	-236.87*** (85.38)	-1,135*** (191)	251.1*** (82.2)
2018년	-1,719.22*** (238.13)	18.38 (89.44)	-1,997*** (200)	-55.31 (86.09)
전기매출액	-	-0.047*** (0.0003)	-	-0.0585*** (0.0003)
상수	2,040.52 (172.04)	275.63*** (64.66)	1,840 (144.6)	388.2*** (62.26)
관측치 수	2,029,961	2,029,861	2,029,111	2,029,111
결정계수	0.013	0.03	0.008	0.035
기업 수	518,652	518,562	518,552	518,552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2020)를 연계하여 저자가 직접 추정한 표임

어 살펴본 결과를 기업규모는 전부 포함, 효과는 1기 효과로 설정하여 추정하고 제시하고자 한다.¹¹⁾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두 하위그룹 모두 매출액에는 음(-)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과징금처분과 관련한 위반행위와 관계없이 과징금이 억제적 효과를 미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1)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별 분석을 수행했으며, 전체 분석과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2. 산업별 과징금 부과금액이 산업 시장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우리는 앞선 기업별 실증분석을 통해,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가 충분히 적발되고 있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이 책정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 전반적인 규모 대비 집행되는 과징금 건수나 금액이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과징금의 부과 목적 중에는 시장경쟁의 제고 등 산업·시장구조 개선 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소분류 산업별로 과징금 부과 액수가 산업·시장구조의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산업분석에 있어 1기간 시장구조 변동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Delta y_{i,t} = \alpha + \beta F_{i,t} + x_{i,t-1}\gamma + \nu_i + \nu_t + \varepsilon_{i,t} \quad \text{식 (2)}$$

$\Delta y_{i,t}$: 소분류 산업 i 의 $t-1$ 연도부터 t 연도까지의

시장집중도 (CR3, HHI) 증분

$F_{i,t}$: 소분류 산업 i 의 t 연도 과징금 부과금액

$x_{i,t-1}$: 소분류 산업 i 의 $t-1$ 연도의 특성

ν_i : 산업고정효과

ν_t : 시간고정효과

참고로 시장집중도 지표로 사용한 CR3는 각 산업(시장)별로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을 합계한 지표이며, 허핀달-허쉬만 지수(HHI)¹²⁾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시장집중도 지표이다.

$$HHI_I = \sum_{i \in I} s_i^2 \quad \text{식 (3)}$$

s_i : I 산업에 속한 기업 i 의 시장점유율(%)

과징금의
부과 목적 중에는
시장경쟁의 제고 등
산업·시장구조 개선
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소분류 산업별로
과징금 부과액수가
산업시장 구조의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2) 해당 지수의 탄생 배경은 Hirschman(1964), pp.761~762를 참고

<표 11> 과징금 소분류 산업 1기, 전체 산업, CR3, HHI 고정효과모형

(단위: 백만원)

고정효과모형(산업, 연도) 종속변수	(1) 매출액 HHI	(2) 매출액 CR3	(3) 총자산 HHI	(4) 총자산 CR3
부과과징금금액	0.000270 (0.000893)	6.67e-06 (7.52e-06)	-0.00271 (0.190)	5.78e-07 (0.000117)
전기총자산	1.61e-06*** (5.65e-07)	2.42e-08*** (4.75e-09)	-	-
전기영업이익	5.28e-06 (1.88e-05)	-2.46e-09 (1.58e-07)	-0.000657 (0.00435)	-6.03e-08 (2.68e-06)
2012년	6.003 (67.91)	-0.167 (0.571)	-2,196 (14,533)	-0.588 (8.971)
2013년	17.48 (68.00)	0.174 (0.572)	-16,013 (14,608)	-4.203 (9.018)
2014년	14.21 (67.93)	-1.088* (0.572)	-1,448 (14,577)	5.849 (8.999)
2015년	36.95 (68.10)	0.0738 (0.573)	-6,259 (14,673)	5.623 (9.058)
2016년	-18.01 (68.08)	-0.509 (0.573)	-5,365 (14,626)	-3.439 (9.029)
2017년	91.65 (68.28)	1.128** (0.574)	-15,705 (14,661)	-5.283 (9.050)
2018년	121.9* (68.72)	1.377** (0.578)	11,180 (14,818)	16.60* (9.148)
전기매출액	-	-	0.000149 (0.000737)	1.29e-07 (4.55e-07)
상수	-84.18 (53.63)	-0.939** (0.451)	5,373 (14,570)	-2.248 (8.995)
관측치 수	1,770	1,770	1,770	1,770
결정계수	0.011	0.038	0.003	0.006
소분류 산업 수	223	223	223	223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2020)를 연계하여 저자가 직접 추정한 표임

즉, HHI는 한 산업에 속한 각 기업의 % 표시 점유율의 제곱합으로서, 독점의 경우 10,000의 값을 가지며, 완전경쟁의 경우 0의 값에 수렴하는 지표이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2,500이 넘으면 집중도가 높은 시장, 1,500 이하의 값을 가지면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으로 판단한다. <표 11>은 매출액 기준 시장집중도와, 참고를 위해 총자산 기준 시장집중도의 변화를 성과지표로 하여 과

징금 부과액수가 시장집중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참고로 종속변수로는 매출액 HHI와 매출액 CR3를 기본으로, 총자산 HHI와 총자산 CR3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부과과징금 금액의 증가는 1기의 경우 시장집중도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건성 확인을 위해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분류 산업 중에는 과징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0의 값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분석해 보았고, 결과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기간 분석을 수행해 보아도, 산업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과징금의 부과가 시장구조에 미친 영향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

**분석 결과 소분류
산업별 과징금
부과액수가
산업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과징금이 시장구조에
미친 영향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VI. 정책 제언: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성과 제고방안

우리는 앞서 과징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와 기업생태계자료를 결합하고 과징금 부과 현황과 과징금 부과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지표는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정량적 결과지표가 아닌, 중간 단계의 산출지표나 만족도 등 주관적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에서의 성과지표 달성 여부만으로는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에서 경제적 유효성이 달성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규모 면에서 과징금은 경제규모 대비 또는 부과 대상의 규모 대비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규모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나 산업분포도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징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매출액 대비 부과 비율이 달랐는데,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비율이 22%에 달했지만 대기업의 경우 0.17%에 그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 과징금은 부과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특정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에서는 발각되지 않은 추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우현·강희우(2020)를 참고

현재의 과징금제도는 전반적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지표를 과징금의 목적에 맞는 결과 정량지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 기업들에 비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이 현저히 낮고 과징금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대기업을 포함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선정 수준은 상당 수준 현실화하여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가적 위법행위에서 기인할 수 있는 비정상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효과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단속된 행위 외의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있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지만, 단속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영업의 일부에 그치는 대기업/중견기업 등에서는 보다 유의한 비정상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형평의 문제와 함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대규모 기업들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산업의 시장집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과징금이 해당 목적에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볼 때, 현재의 과징금제도는 전반적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지표를 과징금의 목적에 맞는 결과 정량지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시장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지표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하도급법」 위반 사례의 경우는 하도급 수익배분 개선 등 사용 가능한 정량지표를 추가로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 후생 개선을 위해 미국 FTC의 접근방법과 마찬가지로 예산당 소비자후생 개선 등 더 복잡한 경제적 구조모형 추정에 기반한 경제적 지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과징금은 건수와 금액 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발 건수를 늘리거나 금액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고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을 두 배 늘려 단속 건수를 두 배로 증가시킨다 해도 경제규모 대비 여전히 과소한 수치이므로, 단속 건수의 증가로 과징금의 경제적 유효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된 고려 요소는 과징금 금액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규모별로 보았을 때 과징금 부과액의 재무지표 효과가 확인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대비 과징금 금액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100배 이상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만일 과징금 자체를 주된 공정경제 구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금액은 상당 수준 높게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로 살펴본다면 EU나 미국의 경우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20% 수준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도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행위 개선에 더 도움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⁴⁾ 의사결정의 주체와 관리 책임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상 우리 경제에 속한 기업들의 모든 위법행위를 충분히 색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련 매출액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책임과 행위교정을 고려한다면, 관련 매출액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과징금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 방향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 개 중앙부처의 공적 역량 중 상당 부분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제도의 실제 효과성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과징금 금액 상한의 인상과 적극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징금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실질적·적극적인 민사 활용, 집단소송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금액 산정이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적용이 경제 현실에 비해 과한 면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의 경제규모와 현재의 경제규모가 현저하게 다름에도 관련된 정액 과징금 액수가 법 조항에서 적절히 조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번 감액한 과징금도 법원에서 더 삭감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현재 과징금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대해 과소 추정하고 과징금으로 발생하는 사익의 손실에 대해 과다 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함의한다.

만일 법체계의 문제로 인해 과징금을 효과적인 금액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행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에 있어 재정정책과 조세정책 측면에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통해 영업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공정거래상 위반행위가 확인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하여 대응

**획기적인 과징금
금액 상한의 인상과
적극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징금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실질적·적극적인
민사 활용,
집단소송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법체계의 한계로
과징금의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업과 산업에 적용되는
재정정책과 조세정책
측면에서의 보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 한국개발연구원(2012)을 참고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과징금이
역진적인 부과
효과를 통해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경제 측면에서 부당한 행위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의 지원을 결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만일 재정당국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외의 부처에서도 공정경제 달성을 주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다면, 부처가 보유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때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사항을 참고하고 공조하여 결정하는 것도 과징금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경제 목표 추구에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를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양식 자체에 들어가는 내용 중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변수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성적인 문장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주소, 대표자명, 업종으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며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해당 정보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필요할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확보하여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면 원천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언한다. 지금처럼 단속 건수와 기업의 수가 지나치게 과소한 상황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것처럼 의결서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할 수 있고 기업정보도 매칭할 수 있겠지만,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VII. 결론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미시자료를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과징금이 기업의 위법행위에 억지력을 미쳐 국민경제에 의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단속 건수나 과징금 액수에 있어 경제규모 대비 유의하게 과소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산업 또한 편중되어 있고 유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우려스러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별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반복 위반사항이 적지 않게 확인되어 기초통계 자체만으로도 과징금의 억제에 대해 상당 부분 회의적인 결과가 도

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효과 분석 결과에서도 과징금이 개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구조의 개선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과징금이 공정경제를 위한 유효한 도구로서의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요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특히 행위 예방적·억제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오히려 과징금이 역진적인 부과와 미흡한 효과로 인해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기업과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인 만큼, 여러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과징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형사 고발 등의 억제수단에 대한 실증분석은 아직 수행하지 않았으며, 현존하지 않는 다른 대안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정의상 자료가 없어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업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점에 대해 가설만 제기했을 뿐 심도 있게 원인까지 규명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실증분석이 그렇듯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자료 조건에서 최대한 내생성을 통제하고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시도했으나 과징금 부과기업과 비부과기업 사이의 내생성에 대해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경제 구현에 있어 과징금의 경제적 영향력이 기대와 달리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도로 낮다는 사실에 대한 실증적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비록 아쉬움이 있지만 과징금 한도를 상향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과징금 결정 사례 등은 향후 과징금의 효과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부족한 연구이지만 본 연구의 내용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하는 주된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을 촉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IPF

**본고의 내용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하는 주된
정책 수단인 과징금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을 촉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도 통계연보』, 2018.

_____, 『2020년도 통계연보』, 2021.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 2013.

_____, 『2014년도 대한민국 재정』, 2014.

_____, 『2015 대한민국 재정』, 2015.

_____, 『2016 대한민국 재정』, 2016.

_____, 『2017 대한민국 재정』, 2017.

_____, 『2018 대한민국 재정』, 2018.

_____,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정부, 『2020년 성과계획서(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정부, 2019.

우석진·장우현, 『대기업과의 수직관계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24권 1호, 2018.

장우현, 「중소기업 재정지원 빨대효과 완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협업생태계 개선 제언」, 『재정포럼』, 통권 제278호, 20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 8~31.

_____,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재정포럼』, 통권 제292호,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 6~31.

장우현·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Ⅲ)』, 연구보고서 2015-11, 한국개발연구원, 2015.

한국개발연구원, 「끊이지 않는 담합, 해법은?」, 『나라경제』,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pp. 24~28.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 2010~2018년도 자료」,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DB자료」, 2020.

Hirschman, Albert O., "The Paternity of an Index,"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64), 1964, pp. 761~762.

<웹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 <https://www.ftc.go.kr/www/review/PolicyList.do?key=20>, 검색일자: 2021. 8.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검색일자: 2020. 11. 11.

통계청, 「경제총조사」,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ip/2/index.action, 검색일자: 2020. 11. 11.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 문제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cheung@kipf.re.kr)

I. 서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개인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해외직구 건수는 6,358만건으로 2019년의 4,299만건에 비해 약 48% 증가하였다. 해외직구 건수는 2010년 358만건에서 2013년 1,116만건으로 처음으로 1천만건을 넘은 이후 7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0년의 해외직구 건수와 비교해 보면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의 해외직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주문 발달, 모바일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물품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아마존(amazon.com)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쇼핑몰과 전문 국제 배송업체의 등장으로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손쉽게 주문하고 배송받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은 대규모 기업형 무역을 의미했다. 수입업체가 대량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수입해 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전에도 개인 물품이 국경을 넘어 통관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해외 친인척들의 선물, 기업들 간의 샘플(시제품) 등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소액의 개인 간 교역에 대해서는 ‘소액면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반 수입 건수는 2020년에 3,128만건이지만 개인들의 해외직구 건수는 6,358만건으로 더 많다. 앞으로도 개인들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이 둘의 차이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수입과 해외직구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소액물품이 일반 수입업자를 통해 국내로 수입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만,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되면 소액면세제도에 의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모두가 면세된다. 이러한 과세 형평성 이외에도 일반 수입업자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간 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 수입업자는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 당사자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구매대행업자는 수입 당사자가 아닌 대행업자라는 차이로 납세의무가 없다. 대신 소액면세한도 이상의 물품을 해외직구한 국내 소비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작 해외직구를 이용한 본인은 납세의무자인지 모르고 수입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얼마만큼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 구매자는 이러한 통관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아는 해외직구 구매자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일반 수입과 해외직구 구매대행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해외직구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와 통관서류 보관 의무 등에 초점을 두고 형평성을 해치는 제도적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형평성을
해치는 제도적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II.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현황

1. 전 세계 해외직구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자가 약 13억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구매자는 약 2.7억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1> 전자상거래 이용 구매자

(단위: 백만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내 전자상거래 이용	909	985	1,042
국외 전자상거래 이용 (해외직구)	162	196	271
합계	1,071	1,181	1,313

출처: UNCTAD, "Measuring domestic and cross-border e-commerce," 2019. 12., p. 15

UNCTAD(2019)에 따르면, 해외직구 지출액 관련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표 2> 2018년 해외직구 금액 비교

(단위: 억원, 원)

구분	수출	해외직구 금액 ¹⁾		1인당 해외직구 금액 ²⁾	
		미국 (억원)	중국 (억원)	미국 (원)	중국 (원)
수입					
한국		16,456	5,209	31,888	10,094
일본		25,433	2,651	20,101	2,095
미국		-	57,722	-	17,669
중국		175,493	-	12,601	-

주: 1) 해외직구 금액은 한국 천달러, 일본·미국·중국 억엔인 원자료를 2018년 말 고시환율을 사용하여 억원으로 통일

2) 1인당 해외직구 금액은 산업통계분석 시스템의 2018년 각 국가별 인구수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2019. 9. 17.;
 일본 경제산업성, “Results of FY2018 E-Commerce Market Survey Compiled,” 2019. 5. 16.;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15/mall1501/index.jsp>, 검색일자: 2021. 1. 5.;
 산업통계분석 시스템, <https://istans.or.kr/co/newCoTab.do?score=C184>, 검색일자: 2021. 1. 5.

<표 3> 2017년 해외직구 매출액(추정) 상위 10개국

(단위: 십억달러, %)

국가	해외직구 매출액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미국	102	6.6
중국	79	3.5
영국	31	7.0
일본	18	2.6
독일	15	1.0
프랑스	10	1.8
캐나다	8	1.8
이탈리아	4	0.7
한국	3	0.5
네덜란드	1	0.2
상위 10개국	270	3.0
전 세계	412	2.3

출처: UNCTAD, “Measuring domestic and cross-border e-commerce,” 2019. 12, p. 20

UNCTAD(2019)에 따르면, 해외직구 지출액 관련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해외직구 지출액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미국의 해외직구 지출액을 발표하고 있다. 이 두 자료를 모은 것이 <표 2>다. 양 국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해외직구 지출액을 수집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직구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으로부터 해외직구를 구매하는 금액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인구수를 감안할 경우 그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해외직구를 구매하는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지만, 이는 중국 인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해외직구를 통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금액은 미국과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미국의 수출액은 약 1천억달러, 중국은 약 790억달러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상위 10개국 안에 드는데 우리나라의 해외직구를 통한 수출액은 약 3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으로부터 해외직구를 구매하는 금액은 인구수를 감안할 경우 그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 해외직구 현황

가. 해외직구 면세 통관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표 4> 해외직구 물품 과세(건수)

(단위: 천건, %)

연도	면세 통관		과세 통관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0	3,369	94.1	210	5.9	3,579
2011	5,289	94.4	313	5.6	5,602
2012	7,602	95.7	342	4.3	7,944
2013	10,725	96.1	434	3.9	11,159
2014	14,896	95.9	634	4.1	15,530
2015	15,043	95.0	798	5.0	15,841
2016	16,583	95.3	812	4.7	17,395
2017	22,367	94.8	1,225	5.2	23,592
2018	30,589	94.8	1,657	5.1	32,255
2019	41,006	95.4	1,982	4.6	42,988
2020	61,011	96.0	2,564	4.0	63,575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57&stts_cd=245710&clas_div=&idx_sys_cd=, 검색일자: 2021. 2. 24.

해외직구 물품은 대부분 면세로 통관되고 있으며, 전체 해외직구 건수의 약 5% 정도가 과세되고 있다.

기준 약 358만건이던 거래건수는 2013년에 처음으로 1천만건을 넘어 1,116만건에 이르렀으며, 이후 2020년에는 6,358만건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의 해외직구 건수와 비교해 보면 약 18배 증가하였다.

해외직구 물품은 대부분 면세로 통관되고 있으며, 전체 해외직구 건수의 약 5% 정도가 과세되고 있다. 2020년에 면세 통관된 해외직구 건수는 약 6,101만건으로 전체에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나. 해외직구 품목별 반입 현황

해외직구를 통해 가장 많이 반입되는 품목은 건강식품이다. 건강식품은 지난 10여 년간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식품 다음으로는 가전제품, 의류, 기타 식품, 화장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많이 반입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해외직구를 통해 의류와 함께 가전제품의 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5> 해외직구 품목별 반입 건수

(단위: 천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건강식품	4,974	6,638	9,840	12,348
가전제품	2,112	3,776	5,840	10,341
의류	2,722	4,651	6,847	8,080
기타 식품	2,821	3,329	3,908	5,347
화장품, 향수	2,867	3,310	3,731	3,499
신발류	1,648	2,050	2,612	2,960
완구 인형	1,212	1,652	1,734	2,677
핸드백, 가방	825	1,088	1,539	2,129
기타	4,411	5,745	6,936	16,196
합계	23,592	32,239	42,989	63,575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57&stts_cd=245710&clas_div=&idx_sys_cd=, 검색일자: 2021. 2. 24.

다. 해외직구 국가별 반입 현황

해외직구는 미국, 중국, 홍콩, 일부 유럽국가 등으로부터 반입되고 있다. 그중에서 미국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금액이 가장 많다. 그러나 해외직구의 미국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그 대신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가전제

<표 6> 해외직구 국가별 반입금액

(단위: 백만달러, %)

국가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국	1,472	53.4	1,534	48.8	1,603	42.7
중국	310	11.3	403	12.8	705	18.8
독일	213	7.7	262	8.3	332	8.8
홍콩	155	5.6	185	5.9	210	5.6
일본	172	6.3	180	5.7	198	5.3
영국	238	8.7	317	10.1	375	10.0
기타	195	7.1	263	8.4	331	8.8
합계	2,755	100.0	3,143	100.0	3,754	100.0

출처: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57&stts_cd=245705&clas_div=&idx_sys_cd=, 검색일자: 2021. 2. 24.

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샤오미 등 가전제품의 해외직구 반입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여겨진다.

Ⅲ. 해외직구 거래 유형 비교

1. 해외직구 거래 유형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쇼핑사이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직접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의 방법이 있다. 첫째, 직접구매는 국내 소비자가 직접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주문, 결제, 배송 요청을 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배송받는 방식이다. 둘째, 배송대행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쇼핑몰 등)에서 직접 주문 및 구매한 물품을 해외 배송대행지로 보낸 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아 수령하는 방식이다. 셋째, 구매대행은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구매대행은 쇼핑물형과 위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매대행(쇼핑물형)은 국내 소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쇼핑사이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직접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이다.

최근 들어
국내 인터넷상거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구매대행(쇼핑몰형)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및 구매(결제)를 하면,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구매대행(위임형)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선택한 후 업체와 견적(제품가격, 배송료, 수수료 등)에 합의하면,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변하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생소할 당시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당시는 해외직구가 국가 간 무역 거래인 일반 수입과 동일하게 인식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경험 부족과 위험성을 감안해 전문적인 배송대행을 이용하였다.

이후 국내 소비자들이 점차 해외직구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해외 인터넷상거래에서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직접구매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한국으로의 직접 배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 인터넷상거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구매대행(쇼핑몰형)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직접구매에 따른 위험부담을 국내 소비자 본인이 아닌 구매대행(쇼핑몰형)에게 전가할 수 있고, 언어장벽의 불편함, 배송불안 및 카드보안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이버쇼핑몰, 쿠팡 등의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국내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거래가 진행되는 편리함 등의 장점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20년에 해외 물품 구매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외직구 유형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구매대행, 직접구매, 배송대행을 모두 이용해본 응답자는 66명(13.2%)이었다.

<표 7> 최근 1년 이내 경험이 있는 해외 물품 구매 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구매대행	직접구매	배송대행
이용자	328	253	201
비율	65.6	50.6	40.2

출처: 한국소비자원(2020), p. 18

가. 직접구매

직접구매 혹은 직접배송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쇼핑몰 등)로부터 직접 물품을 주문하여 구매(결제)하고, 해외 판매자에게 배송을 요청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아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2020)에 의하면, 해외 물품을 직접구매할 때 미국의 아마존(Amazon)과 아이허브(iHerb)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온라인 쇼핑몰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2020)에 의하면, 해외직구 유형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직접구매 시 이용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단위: 명, %)

구분	업체명	본사 소재국	이용자	비율
1	아마존(Amazon)	미국	61	24.1
2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중국	53	20.9
3	아이허브(iHerb)	미국	43	17.0
4	이베이(eBay)	미국	18	7.1
5	큐텐(Qoo10)	싱가포르	15	5.9

출처: 한국소비자원(2020), p. 19

나. 배송대행

배송대행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직접 주문 및 구매(결제)를 했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까지 직접배송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 비용이 상당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쇼핑몰 등)에서 직접 주문 및 구매(결제)한 물품을 해외 배송대행지로 보낸 후 배송대행업

<표 9> 해외구매 시 이용한 배송대행 사이트

(단위: 명, %)

구분	업체명	이용자	비율
1	몰테일	62	30.8
2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31	15.4
3	오마이집	16	8.0
4	뉴욕걸즈	14	7.0
5	아이포터	13	6.5
6	유니옥션	8	4.0

출처: 한국소비자원(2020), p. 2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하면
구매대행은
쇼핑물형과 위임형으로
나눌수 있다.
구매대행(쇼핑물형)은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물들이 해당된다.

체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아 수령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배송대행사로는 몰테일, 오마이집, 뉴욕결즈, 아이포터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2020)에 의하면, 해외직구 배송대행으로 몰테일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런 배송대행 전문회사뿐만 아니라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배송대행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구매대행

구매대행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쇼핑물 등)에서 직접 주문 및 구매(결제)를 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하면 구매대행은 쇼핑물형과 위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매대행(쇼핑물형)은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 쇼핑물에서 직접 물품 주문 및 구매(결제)를 하면,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국내로 발송하여 국내 소비자가 수령하는 방식이다. 구매대행(위임형)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선택한 후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여 제품 견적(제품가격, 배송료, 수수료 등)에 합의하면,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국내로 발송하여 국내 소비자가 수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매대행(쇼핑물형)은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물들이 해당된다. 이들 국내 온라인 쇼핑물들은 내국 물품 판매와 함께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대행도 병행하고 있다.

<표 10> 구매대행 시 이용한 온라인 쇼핑물

(단위: 명, %)

구분	업체명	이용자	비율
1	네이버쇼핑	84	25.6
2	쿠팡	71	21.6
3	11번가	32	9.8
4	G마켓	28	8.5
5	옥션	26	7.9

출처: 한국소비자원(2020), p. 19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위임형 구매대행은 배송대행보다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들이 구매대행(위임형)도 함께 운영하는 추세이다. 배송대행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로부터 원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배송 의뢰하는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구매대행(위임형)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로부터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여 구매대행(위임형)업체에 의뢰하면, 국내로 배송되기 때문에 한 번의 절차를 통해, 카드보안 등의 위험 요인 없이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위임형 구매대행은 배송대행보다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들이 구매대행(위임형)도 함께 운영하는 추세이다.

라. 해외직구 거래 유형 비교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직접구매(직접배송), 배송대행, 그리고 구매대행(쇼핑몰형)과 구매대행(위임형) 네 가지를 비교해보면, 우선 국내 소비자가 직접 주문 및 구매를 하는데 이때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국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지에 차이가 있다. 대행자는 배송대행과 구매대행에서만 존재하는데, 이들 대행자는 배송만을 대행하거나 혹은 구매와 배

<표 11> 직접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 비교

구분	직접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위임형)
국내 소비자	해외판매자에게 주문 및 구매	- 해외판매자에게 주문 및 구매 - 배송 의뢰	국내 쇼핑몰에서 주문 및 구매	국내 쇼핑몰에서 주문 및 구매
해외 판매자	국내로 배송	자국으로 배송	자국 혹은 국내로 배송	자국 혹은 국내로 배송
대행자	-	해외로 배송된 물품을 국내로 배송 대행	해외판매자에게 주문 및 구매 배송의뢰	해외판매자에게 주문 및 구매 배송의뢰
배송자	해외판매자가 배송 의뢰	배송대행업체가 배송 의뢰	해외판매자가 배송 의뢰 (혹은 구매대행자가 배송 의뢰)	해외판매자가 배송 의뢰 (혹은 구매대행자가 배송 의뢰)
수입 신고 및 통관 (신고인)	배송대행사의 위탁사 (특송, 관세사)	배송대행사의 위탁사 (특송, 관세사)	배송대행사의 위탁사 (특송, 관세사)	배송대행사의 위탁사 (특송, 관세사)
수입계약 명의자	국내 소비자	국내 소비자	국내 소비자	국내 소비자
납세의무자	국내 소비자	국내 소비자	국내 소비자	국내 소비자

출처: 저자 작성

네 가지 해외직구 방식의 공통점은 구매자가 어떤 방식을 이용하건 물품의 통관은 관세사 혹은 배송업자가 진행하며, 수입계약 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국내 소비자라는 점이다.

송 모두 대행하는지에 차이가 있다. 해외직구 방식에 따라 배송자가 해외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구매대행자가 되기도 한다.

해외직구 네 가지 방식에서 공통점은 구매자가 네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건 상관없이 특송업체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은 공통적으로 배송업자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 혹은 배송업자(특송)가 진행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가 네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건 상관없이 수입계약 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국내 소비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IV.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자 비교

이번 장에서는 기존의 일반 수입업과 해외직구의 구매대행업을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반 수입업자와 해외직구의 구매대행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비교해 볼 때, 해외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든 쇼핑물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구매대행업자와 일반 수입업자 사이에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 국내 전자상거래 쇼핑물에서 동일한 물품이 업체별로 국내 배송 또는 해외 배송으로 모두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몰을 보면 특정 외국산 청소기를 판매하는 업자가 여러 명 있다. 이들의 판매가격은 천차만별로 다양하고, 국내 배송 또는 해외직구라고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 배송은 일반 수입업자가, 해외직구 배송은 구매대행(쇼핑물형)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일반 수입업자는 본인이 특정 외국산 청소기를 수입하여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을 사이버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구매대행(쇼핑물형)업자도 동일한 사이버몰에서 동일한 외국산 청소기를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이 둘의 차이점은 사이버몰에서 주문할 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닌지 정도이다. 그리고 배송기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국내 배송도 늦어질 수 있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인증을 통해 손쉽게 발급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이버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는 서로 다른 구매대행업자와 일반 수입업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구매대행은 수입할 물품을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만, 일반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원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을 자신의 판단에 의해 수입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반 수입업자는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사업을 하지만,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판매 소비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어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일반 수입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배송비, 수수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금 등을 부담하고 추후에 미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전가하기 때문에 금융비용도 부담하게 되며, 해당 수입물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배송비, 제세금 등의 부담도 수입업자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구매대행은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면서 이미 국내 소비자로부터 배송비와 제세금 등을 받았기 때문에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구매대행은 물품비용만 국내 소비자로부터 선불로 받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추후 수입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구매대행업자는 제세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셋째, 판매되는 동일한 해외 물품을 기준으로 이 둘의 차이점을 보면, 일반 수입업자는 이미 국내에 수입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구매대행(쇼핑몰형)업자는 아직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의 차이는 국내 소비자가 선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관세 행정 관점에서 일반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의 차이는 소비자가 요청하기 이전에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소비자의 요청 이후에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느냐는 차이이다. 관세 행정에서 이런 차이점은 수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즉, 일반 수입업자는 수입 주체가 일반 수입업자이기에 현재 「관세법」에서는 일반 수입업자 자신이 납세의무자이지만,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수입 주체가 국내 소비자이기에 납세의무

그러나 동일한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는 서로 다른 구매대행업자와 일반 수입업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관세법」에서는 일반 수입업자 자신이 납세의무자이지만, 구매대행은 수입 주체가 국내 소비자이기에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가 된다. 즉, 수입업자는 납세의무가 있지만, 구매대행업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표 12> 일반수입과 구매대행(쇼핑물형) 비교

구분	일반 수입	구매대행(쇼핑물형)
공통점	해외로부터 물품 수입	해외로부터 물품 수입
물품 용도	판매(수익)용	자가소비용
물품 주문형태	대량 주문	소량 주문
수입 신고 및 통관	수입업자 (수입업자에게 위탁받은 자)	대행업자 (대행업자에게 위탁받은 자) (*소비자는 관계 없음)
수입계약 명의자	수입판매업자 명의	국내소비자 명의
납세의무자	수입업자	국내소비자
고객 확정시기	수입통관 이후 판매시점 (위탁수입은 사전확정)	수입통관 이전 사전 확정 (국내 소비자)
물품 대금	통상 물품인도 또는 판매시점	소비자 선납 (사전 고지된 매매가격에 포함)
배송비 등 수수료	수입업자 부담	소비자 선납 (사전 고지된 매매가격에 포함)
제세금	수입업자 부담	소비자 부담
수익	수입물품 판매	수입 대행
수입물품 판매 위험부담	수입판매업자가 수입 물품 판매 여부에 따른 손익 위험 부담	없음
위험부담	수입판매업자가 수입거래 책임 부담 (물품파손, 오배송, 지연배달 등)	구매대행업자가 수입거래 책임 부담 (물품파손, 오배송, 지연배달 등)

출처: 저자 작성

자는 국내 소비자가 된다. 즉, 수입업자는 납세의무가 있지만, 구매대행업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일반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로 동일하게 수익을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국내 소비자도 이들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반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 사이에는 납세의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제도적으로 위험부담이 있는 일반 수입업자에 비해 위험부담이 없는 구매대행업자가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V. 제도개선 방안

앞서 일반 수입업과 구매대행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해외직구를 구매대행을 통해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납세의 무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로서 본인에게 통관 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1. 납세의무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물품가격 및 관세 등을 수령했음에도 고의로 저가로 신고해 물품금액과 관세 등을 포탈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 등은 구매대행업자가 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외직구 소비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법」 제19조 제5항에서는 구매대행업자도 국내 소비자와 함께 연대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거나,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도 국내 소비자와 함께 연대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표 13>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 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4%80%EC%84%B8%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1. 2. 17.

관세 등은
구매대행업자가
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외직구 소비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구매대행의 정의를
구매대행(쇼핑몰형)에
맞게 규정하여
일반 수입업자와
유사하게
구매대행(쇼핑몰형)
업자에게도
납세의무자 연대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관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업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구매대행업자의 정의가 요즘 성행하는 구매대행(쇼핑몰형)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구매대행(위임형)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즘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위임형 구매대행보다는 국내 인터넷쇼핑과 거의 차이가 없는 구매대행(쇼핑몰형)을 더 선호하여, 쇼핑몰형 구매대행이 현실적으로 압도적인 상황에서 구매대행을 위임형 구매대행에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서도 「관세법」에 명시하고 있는 화주가 납세의무자라는 조항에 근거해 판단하고 있다. 「관세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기에 하기에, 「관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화주가 납세의무자라는 조항에 의해 구매대행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정의를 구매대행(쇼핑몰형)에 맞게 규정하여 일반 수입업자와 유사하게 구매대행(쇼핑몰형)업자에게도 납세의무자 연대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서류 보관 의무

다음으로 서류 보관 의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 화주는 수입신고를 한 이후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통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되었기 때문에, 해외직구의 납세의무자인 국내 개별 소비자에게 서류 보관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는 해외직구 통관 관련 아무런 서류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설령 관련 서류를 보관하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소액면세되는 물품은 대부분 특송의 목록통관방식으로 통관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거래 1위 품목인 건강기능식품은 소액이지만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통관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액면세 대상이 아닌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한 국내 소비자도 서류 보관 의무가 있다. 해외직구를 한 국내 소비자는 자신의 물품이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되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다. 예를 들어, FTA 협정세율 적

<표 14> 「관세법」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관세법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4%80%EC%84%B8%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1. 2. 17.

용으로 관세는 0%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일반 수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통관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일반 수입신고가 아닐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신고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설령 국내 소비자가 관련 서류를 보관하려고 해도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 관련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배송대행, 구매대행 혹은 해외직구 물품 배송인(특송업자 등)은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구매대행업자도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며, 배송업체와 연계된 관세사들이 수입신고를 대행하고 관세사들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해외직구 관련 수입 서류 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에게 서류 보관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닌 구매대행, 배송대행, 배송인 등 수입 서류를 보유한 자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납세의무자인 국내 소비자에게는 관련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서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일반 수입의 경우 수입을 통해 이윤을 보는 일반 수입업자들에게 수입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 무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직구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우선 10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대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대행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는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반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의 제도적 차이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¹⁾ 

**해외직구 관련
수입 서류 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에게
서류 보관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닌
구매대행, 배송대행,
배송인 등 수입 서류를
보유한 자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1) 관세청 보도자료,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2021. 6. 22.

<참고문헌>

관세청 보도자료,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2020. 11. 18.

_____,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2021. 6. 22.

_____,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2019. 9. 17.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 2020. 6.

일본 경제산업성, “Results of FY2018 E-Commerce Market Survey Compiled,” 2019. 5. 16.

UNCTAD, “Measuring domestic and cross-border e-commerce,” 2019. 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4%80%EC%84%B8%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1. 2. 17.

산업통계분석 시스템, <https://istans.or.kr/co/newCoTab.do?scode=C184>, 검색일자: 2021. 1. 5.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15/mall1501/index.jsp>, 검색일자: 2021. 1. 5.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57, 검색일자: 2021. 2. 24.

_____,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57&stts_cd=245705&clas_div=&idx_sys_cd=, 검색일자: 2021. 2. 24.

_____,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57&stts_cd=245707&clas_div=&idx_sys_cd=, 검색일자: 2021. 2. 24.

_____,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57&stts_cd=245710&clas_div=&idx_sys_cd=, 최종 검색일자: 2021. 2. 24.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검색일자: 2021. 2. 24.



2022년 예산안 편성

■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 예산안

김태곤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2022년 예산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 예산안



김태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I. 서론

“인류의 역사는 곧 전염병의 역사다(윌리엄 맥닐)”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간사에서 수많은 전염병이 발생했었다. 조선 후기에도 전염병과 대기근이라는 위기가 있었다. 이를 겪는 과정에서 임시 빈민구제기구였던 ‘진휼청’이 상시화되었고,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과세체계였던 대동법이 안착되며 조선의 경제·사회구조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를 맞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이후 팬데믹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2.3억명, 희생자는 470만명을 넘어서고도 증가 추세는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엄중한 코로나19 방역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는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팬데믹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전 부문의 격차 완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본예산 기조 유지는 물론, 6차례 추경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는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어나가고 있다.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 더해, 국가와 국가재정이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담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한파를 거친 모두가 피해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생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한다.

II.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2022년 예산안의 모습과 의미

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으로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2021년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였다. 총수입은 548.8조원으로,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라 금년 제2차 추경 대비 6.7%가 늘어난다.

한편, 국가채무는 965조원(GDP 대비 47.3%)에서 1,068조원(GDP 대비 50.2%)으로 증가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폭(+112.3조원)은 2021년 본예산(+150.8조원) 대비 △38.5조원 축소된다. 또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2차 추경 기준 △4.4%(△90.3조원)에서 △2.6%(△55.6조원)로 크게 낮아지며 재정적자 심화 흐름이 반전되는 터닝포인트가 조성되었다.

이는 위기 극복과정에서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 증대→건전성 개선’이라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는 모습으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장재정을 통한 조기경제 회복, 세수 증대 등 선순환이 시현된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선순환은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재정운용 측면에서, 2022년 예산안은 세 가지의 핵심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첫째, 회복·상생·도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이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국민들이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

는 것은 물론, 코로나 과정의 신(新)양극화 대응을 위한 “상생”,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 업그레이드를 통한 미래로 “도약”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히 반영했다.

② 둘째, 현 정부 국정운영 5년 성과를 완성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예산이다.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라는 목표를 완수하고,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선언 등 현안 과제들의 추진도 적극 뒷받침한다.

③ 셋째,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수행하면서도, 경기회복에 따른 개선세수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한시지출 정상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재원을 핵심사업에 재투자하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재정혁신도 병행하였다.

<표 1> 2022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조원)

구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안
	본예산	2차 추경	
총수입 (증가율)	482.6 (0.2)	514.6 (6.8)	548.8 (6.7 ¹⁾)
총지출 (증가율)	558.0 (8.9)	604.9 (18.1)	604.4 (8.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75.4 (△3.7)	△90.3 (△4.4)	△55.6 (△2.6)
국가채무 (GDP 대비, %)	956.0 (47.3)	965.3 (47.3)	1,068.3 (50.2)

주: 1) 2022년 총수입 증가율은 2021년 2차 추경 대비 비율임

2. 투자의 중점

2022년 예산안은 '회복·상생·도약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2가지 핵심과제와, 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②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 ③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④ 국민보호와 삶의 질 제고라는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였다.

가. 핵심과제: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먼저 코로나19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백신·방역 소요의 충분한 보강과 소상공인 회복·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였다.

우선 백신·방역 부문에는 총 5.8조원을 편성하였다. 전 국민 백신접종을 위해 mRNA 백신 8천만회분, 국산 백신 1천만회분, 도합 9천만회분 백신 신규 구입(2.6조원) 소요 등을 포함하여 3.5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 0.5조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손실보상,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공공인프라 확충·지역 방역체계 고도화에도 1.8조원을 투자한다.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재도약 지원을 위해서는 단계별 지원에 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9조원을 편성하였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로 2021년 2차 추경 1조원에 더해 내년 1.8조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4조원의 긴급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에 2천만원의 긴급

경영자금 수혈, 재기 소상공인에게 사업화자금 2천만원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경제 선도 예산과 한국판 뉴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우선 2022년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인 점을 감안하여 11.9조원의 재정지원을 단행하였으며, 이중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에는 미래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8.3조원이 편성되었다. 친환경차 보급은 2021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3.6만대를 지원하여 2022년 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탄소저감 설비 도입 지원을 위한 7.6조원 규모의 녹색금융 공급, 탄소 흡수원의 지속 확충을 위한 도시숲 확대 소요도 (0.3조원) 적극 반영하였다. 그리고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사업 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 지원과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0.5조원을 투자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33.7조원을 투자한다.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뉴딜에 9.3조원, 그린뉴딜 사업에 13.3조원을 투자하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 새롭게 추가된 휴먼뉴딜에는 11.1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나. 4대 중점 투자 방향

4대 중점 투자 방향의 첫 번째는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이다.

일자리의 조기 회복을 위해 총 31.3조원으로 211만개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노인(84.5만개), 장애인(2.7만개), 여성(인턴 0.8만명), 청년(2.7만

개), 저소득층(6.6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5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청년 14만명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5.9만명의 SW인력 양성 등 총 106만명의 민간일자리에 대한 지원 역시 포함되어 있다.

대면활동 감소 등으로 위축된 내수부문을 문화·관광·의료 등 서비스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총 1.2조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관광도시 6개소, 스마트병원 3개소 확대 등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예술인 2.1만명에 대한 창작준비금, 콘텐츠 분야에 5천억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창출할 것이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글로벌화 및 청년·지역창업 활성화 지원 예산도 1.6조원이 편성되었다. 비대면·BIG3·그린 등 유망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에 0.2조원을 지원하고 2,7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VC 투자를 유치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비수도권의 창업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K-반도체 전략 실현, 미래차 조기 전환,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8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7월에 발표한 K-글로벌 백신 허브 비전을 차질 없이 구현하기 위해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펀드 신규 조성(2020~2023년)도 지원한다.

SOC 투자는 역대 최대인 27.5조원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교통망·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첨단화에 3.4조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GTX A·B·C 본격 추진을 위해 0.6조원을 투자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11개)의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두 번째는 포용적 회복·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신(新)양극화 대응이다.

18.8조원을 투자하여 소득·고용안전망을 중층적으로 보강한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5.02% 인상하고,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00% 현실화 등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6.4조원으로(+1.4조원) 확대한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6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20.1만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에도 41.3조원을 투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저소득층 초중고생 31만명 대상 연 10만원의 학습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한다. 공적 임대주택은 21만호를 신규 공급하고(2018~2022년 100만호 수준 달성)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월 20만원의 월세 한시특별지원 및 무이자 월세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통합문화이용권 등 3대 문화바우처 지원 대상도 245만명까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대상 선정 시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 범위와 수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를 대폭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월 10만원 생계지원금을 신설한다.

농어가 소득안정 및 농어촌 활력 제고에도 6.3조원을 투자한다. 먼저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세→60세로 완화하고, 여성·외국국적 농업인 4만명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신규 지원한다. 특히 0.6조원 규모의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를 통해 345개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하였고, 지방소비세 약 1조원 순증 등,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자주 재원을 확충하였다. 한편,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교육·생활 등 인프라 패키지를 2.7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생활 SOC 3개년 계획도 2022년 당초 목표를 +2.6조원 초과 달성한 32.6조원 투자로 완성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지역균형 뉴딜의 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2022년 13.1조원, 2025년까지 63.5조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가속화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이다.

국민생활 전 분야에서의 체감도 높은 디지털 전면 전환, 소위 All Digital에 7.0조원을 투자한다. AI 의사 ‘닥터앤서’를 2.0 단계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탐지·복구’의 사이버방역 전(全) 주기 지원으로 기업·국민의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보장한다.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기술개발 등 디지털·그린 분야 한국판 뉴딜 R&D 투자를 총 3.5조원(전년 대비 +47.0%)으

로 대폭 확대한다. 신약·의료기기 개발, 세계 최초 Lv4. 자율차 상용화 등 미래 주력 산업인 BIG3 분야의 선도자 도약(First Mover)에도 2.7조원을 투자한다.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할 혁신형 인재 양성은 20조원이 편성되었다. AI, 첨단소재, 수소, 바이오헬스 등 20대 신기술 분야의 전문·융합인력을 포함한 총 15.7만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산학 연계 고도화를 위해 LINC 3.0 재설계 등에 0.6조원을 투자하고 기업이 참여·주도하는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 증점은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이다.

우선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55.2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7.3조원으로, 민군기술협력, 미래전 대비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R&D 확대를 통해 전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전력운영비도 37.9조까지 확대했으며, 특히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인당 67.6만원, 급식비는 1인당 1.1만원으로 상향하여 복무여건을 개선하였다.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에도 6.0조원이 편성되어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ODA 부문에서는 COVAX AMC 1억불 공여 등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 가능한 그린·디지털·보건을 중심으로 전략적 ODA를 대폭 확대한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의 3대 재난안전 확보에 21.8조원이 편성되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자연재해에


충실히 대비하면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청년 1.5만명 마음건강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새롭게 등장한 사회위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 개량 및 스마트 상수관망 구축에 7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충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우선 학대아동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35개로 확대하는 등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여성에 대해서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연령 상향, 경력단절여성 인턴·취업 지원 강화 등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갖출 것이다.

끝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육아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에도 6.6조원이 편성되었다. 먼저 현재 7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2년부터 8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수혜아동이 총 273만 명으로 +43만명 확대된다. 또한 월 30만원의 0~1세 영아수당 등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시행을 위한 예산도 4.1조원이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임신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 지원금액·기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 지원금도 추가 지급하는 등 출산·육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Ⅲ. 맺음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 정부 또한 총 6차례의 추경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확장적 본예산 편성을 통해 위기극복을 뒷받침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2020년 GDP 역성장 폭은 △0.9%로 주요국 대비 최소 수준이며, 올해 2분기까지의 회복속도도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빠르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안주하고 있을 수는 없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방역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초를 다투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주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다시 한 번 고삐를 잡을 때이다.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을 위한 2022년 예산안은 그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kyungho@kipf.re.kr)

I. 개요

1. 추진 배경

정부는 2021년 8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9월 3일(금) 국회에 제출하였다.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선제적 총량관리·재정혁신을 통한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포용적 경제회복·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한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5년의 국정성과를 완성하며,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2022년 예산안은 ① 일자리 조기 회복 및 내수 촉진을 통한 강한 경제회복, ② 소득·고용안전망 보강

과 지역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 ③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④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을 통한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을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정하였다.

5년 단위 중기계획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영 계획에서는 ① 포용적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속, ② 총량 관리 강화 및 선제적 위험대응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③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민주성 제고를 중기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제기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확대된 격차(신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함과 동시에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성 제고 및 조세특례 정리, 세외수입 확대 등 수입 기반을 확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및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운영 과정에서 국민 참여, 의견수렴 확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운용을 강화하여 재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표 1> 2022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

목표 포용적 경제회복·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4대 투자 중점	1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 ·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SOC 고도화·첨단화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3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 ·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안 주요내용」, 2021. 8. 27.

<표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

2018~2022년	2019~2023년	2020~2024년	2021~2025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 (한국형 뉴딜, 포용기반 확충, 전 국민 안심사회 실현)	포용적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속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건전성 강화 노력 병행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	총량관리 강화 및 선제적 위험대응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운용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	재정운용·관리과정에서 혁신성·포용성 제고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민주성 제고

출처: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II. 재정 총량

<표 3>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총량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안	2021년 대비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예산	추경	예산	예산	추경	2023년	2024년	2025년	
총수입	482.6	514.6	548.8	13.7	6.7	570.2	593.9	618.5	4.7
국세	282.7	314.3	338.6	19.8	7.8	352.9	367.7	383.1	5.1
세외	28.9	29.3	26.7	△7.6	△8.9	27.4	28.4	30.0	0.6
기금	171.0	171.0	183.5	7.3	7.3	189.9	197.7	205.4	4.7
총지출	558.0	604.9	604.4	8.3	△0.1	634.7	663.2	691.1	5.5
예산	375.0	409.7	409.2	9.1	△0.1	426.6	444.2	461.8	5.3
기금	182.9	195.2	195.3	6.8	0.1	208.1	219.0	229.2	5.8
의무	266.1	279.1	301.1	13.2	7.9	311.7	327.0	342.7	6.5
복지 분야 법정지출	131.3	131.4	140.1	6.7	6.6	149.7	159.3	169.5	6.6
지방 이전재원	108.9	121.2	131.3	20.6	8.3	133.6	139.2	145.1	7.4
이자지출	18.3	17.9	19.7	7.7	10.1	20.4	20.4	21.0	3.5
기타 의무지출	7.6	8.6	10.1	32.9	17.4	7.9	8.0	7.1	△1.7
재량	291.9	325.8	303.3	3.9	△6.9	323.0	336.2	348.4	4.5
조세부담률	-	20.2	20.7	-	-	20.7	20.7	20.6	-
국민부담률	-	27.9	28.6	-	-	28.8	29.0	29.2	-
관리재정 수지 (GDP 대비)	△112.5 (△5.6)	△126.6 (△6.2)	△94.7 (△4.4)	-	-	△104.7 (△4.7)	△108.4 (△4.7)	△109.2 (△4.6)	-
통합재정 수지 (GDP 대비)	△75.4 (△3.7)	△90.3 (△4.4)	△55.6 (△2.6)	-	-	△64.5 (△2.9)	△69.4 (△3.0)	△72.6 (△3.0)	-
국가채무 (GDP 대비)	956.0 (47.3)	965.3 (47.3)	1,068.3 (50.2)	-	-	1,175.4 (53.1)	1,291.5 (56.1)	1,408.5 (58.8)	-
경상 GDP 성장률	5.6		4.2	-	-	4.0	4.0	4.0	-

출처: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기획재정부,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1.

1. 재정수입

2022년 예상되는 재정수입 규모는 548.8조원으로 2021년 추경 대비 국세수입이 24.4조원 증가(7.8%), 국세외수입이 9.9조원(5.0%) 증가하여 총수입은 2021년 추경 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법인세(73.8조원, +8.2조원, +12.6%), 부가가치세(76.1조원, +6.7조원, +9.7%), 종합소득세(20.8조원, +4.2조원, +26%)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1) 2021년 2차 추경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는 종합부동산세(29.6%), 종합소득세(26.0%), 법인세(12.6%)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2021~2022년 한국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21		2022	
	실질GDP 증가율	GDP 디플레이터	실질GDP 증가율	GDP 디플레이터
OECD	3.8	1.8	2.8	1.7
IMF	4.3	-	3.4	-
KDI	3.8	-	3.0	-
한국은행	4.0	-	3.0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1, 2021*;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2021*; 한국경제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21. 5.;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

중기계획상의 2021~2025년 기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0~2024년 중기 재정전망의 연평균 증가율 3.5%에서 1.2%p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입이 증가하는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기금수입은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동 기간 중 세외수입은 연평균 0.6%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수입 전망은 <표 3>에서와 같이 2021년 예상 경상GDP 성장률 5.6%, 2022년 4.2%, 2023~2025년 4.0%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표 4>에서 국내외 기관들의 2021~2022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1년 3.8~4.3%, 2022년 2.8~3.4% 수준을 예상하고 있어 약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경우 정부의 전망 전제치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전제로 둔 4.2%의 경상성장률을 토대로 추계해도 국세 수입이 7.8%나 증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표 5>의 명목GDP 성장률과 총국세수입 성장률 수치를 확인해보면 이 둘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2016~2018년은 국세수입의 성장률이 명목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으며 2019~2020년은 총국세수입 성장률이 명목GDP 성장률보다 낮았다. 2018년의 경우는 정부가 최초 예상한 총국세수입보다 25.4조원이 더 국세로 걷혀(실적치 - 예산안) 예측 오차가 약 9.5%에 달하기도 했다. 총국세수입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이외에도

<표 5> 명목GDP와 총국세수입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총생산 (명목GDP)	1,323	1,389	1,440	1,501	1,563	1,658	1,741	1,836	1,898	1,924	1,933
성장률	10.0	5.0	3.7	4.2	4.1	6.1	5.0	5.5	3.4	1.4	0.4
총국세수입	177.7	192.4	203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성장률	8	8.3	5.5	-0.5	1.8	6.0	11.3	9.4	10.6	0.0	-2.7
실적-예산	7.3	4.8	-2.8	-8.5	-10.9	2.2	9.8	14.3	25.4	-1.3	5.8
오차율	4.3	2.5	-1.3	-4.0	-5.1	1.0	4.2	5.7	9.5	-0.5	2.1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c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검색일자: 2021. 9. 10.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대외 경제의 여건이나 국내 자산시장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부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들에 대해서는 예상의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추경 대비 26%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법인세도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총세입 증가의 주요 견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증을 통해 향후 전망의 예측 오차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재정지출

가. 총량

2022년 총지출 규모는 604.4조원으로 2021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8.3% 증가한 수준이지만 2021년 추경예산(604.9조원)과 비교하여서는 약 5천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획되었던 작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2년의 총지출 증가율은 8.3%로 2021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 8.9%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 이에 대해 정부 예상대로 올해 중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줄어들고 가정한다면 총지출 증가율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추경을 기준으로 2020년(15%), 2021년(11%)과 비교하여 2022년 70조원 이상 대규모의 추경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2022년의 총지출 증

<표 6> 연도별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p)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수입	6.0	7.9	7.6	1.2	0.2	13.7
총지출	3.7	7.1	9.7	9.3	8.5	8.3
총수입-총지출	2.3	0.8	-2.1	-8.1	-8.3	5.4

출처: 기획재정부, 『예산안 개요』 각 연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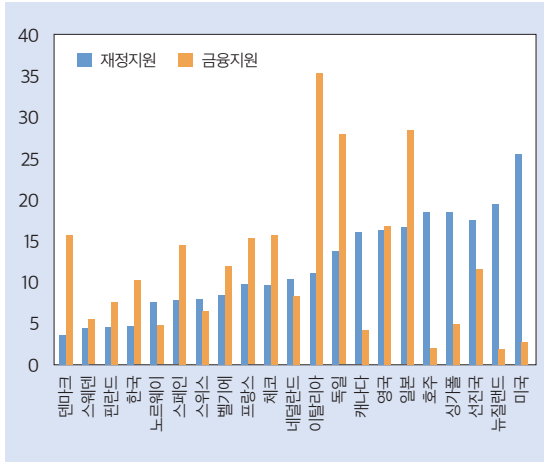
가율은 과거 2년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은 전년 본예산 대비 총수입이 13.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2018년 이후 4년 만에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재정지출 규모는 연평균 5.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총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 4.7%보다는 높게 유지하되 각 연도별 증가율은 낮아지도록 조정하여²⁾ 재정건전성 관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의 재정정책 대응의 규모를 국가 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GDP 대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원(4.5%), 금융지원(10.1%) 수준으로 선진국(advanced economies) 평균 재정지원(17.31%), 금융지원(11.4%)과 비교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재정지출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 제언을 정리하자면, OECD는 Economic Outlook(2021. 5.)을 통해 단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경제회복세

[그림 1]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재정정책 규모



출처: IMF, *Fiscal Monitor*, April 2021, 2021.

가 확실해지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재개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존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효과적이며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IMF는 보고서³⁾를 통해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했다고 언급하였다. 이 결과 2020년 실질GDP 성장률은 -1.0%로 G20 국가 중에서 역성장을 최소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중기계획에 대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과도하게 확장된 재정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KDI는 2020년에 발표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규모로 적자 재정을 지속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중기재정계획에 향후 예상되는 경기 회복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⁴⁾ 주요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독일은 2022년 재정지출을 전년 대비 19.1% 감소시킬 예정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1년 69.8%에서 2022년 74.5%로 상승한 후 2023년부터는 하락하여 2025년 69.2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⁵⁾ 영국은 2025년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4년부터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⁶⁾ 또한 캐나다 2022-23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GDP 대비 연방채무(Federal Debt)가 2021-22 회계연도 51.2%에서 2025-26 회계연도에는 49.2%로 감소할 전망이다.⁷⁾

위 내용을 종합하자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이로 인해 타 국가에 비하여 추가적인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기에 재정구조의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향후 긴급한 추가 재정지출 요구가 발생할 경우 대응여력이 악화될 수 있

3) IMF,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 2021. 4.

4) 허진욱,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관한 평가와 시사점」, KDI 현안분석, 2021. 4. 이 보고서의 분석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계획을 평가한 것으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10)을 참고하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리재정수지는 2020~2024년 중기계획상의 수치보다는 2022~2024년 중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0.9~1.5% 개선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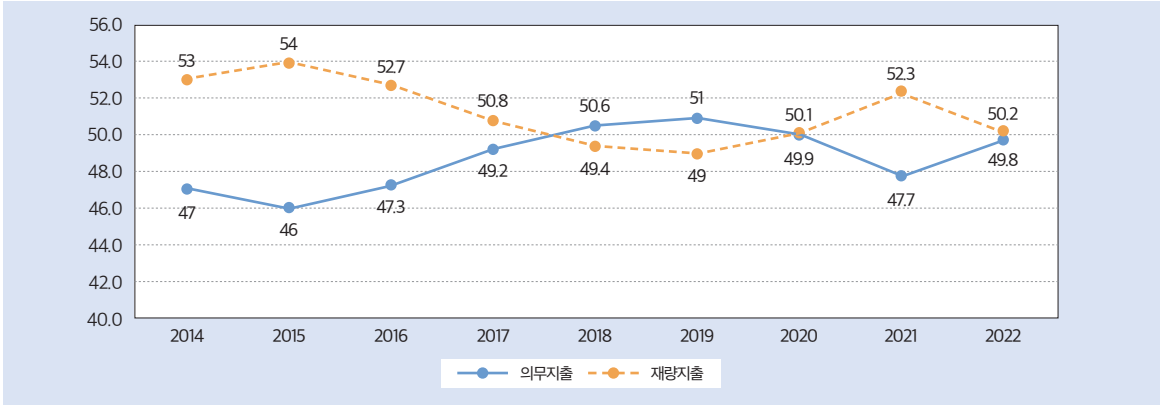
5) 독일연방재무부, 2021~2025 중기재정운용계획, 2021. 6.

6)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 3.

7)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1*, 2021. 4.

[그림 2]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비중 변화

(단위: %)



주: 2014~2021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2022년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8년~2021~2025년)」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7>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재량지출 전망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2017~2021 계획	203.5	211.0	220.0	230.2	240.9	-	-	-	-	4.3
2018~2022 계획	-	211.9	228.8	248.3	262.3	274.7	-	-	-	6.7
2019~2023 계획	-	-	230.3	257.8	276.1	285.8	301.3	-	-	6.9
2020~2024 계획	-	-	-	256.6	288.5	306.6	320.0	326.1	-	6.2
2021~2025 계획	-	-	-	-	291.9	303.3	323.0	336.2	348.4	4.5
2020~2024 계획 대비 증가율	-	-	-	-	1.2	△1.1	0.9	3.1	-	-

주: 본예산 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최근 5년)」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8>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의무지출 전망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2017~2021 계획	197.0	217.9	233.3	246.5	260.1	-	-	-	-	7.2
2018~2022 계획	-	217.0	241.7	256.4	273.6	292.9	-	-	-	7.8
2019~2023 계획	-	-	239.3	255.6	270.7	289.5	302.8	-	-	6.1
2020~2024 계획	-	-	-	255.6	267.3	282.5	295.7	314.2	-	5.3
2021~2025 계획	-	-	-	-	266.1	301.1	311.7	327.0	342.7	6.5
2020~2024 계획 대비 증가율	-	-	-	-	△0.4	6.6	5.4	4.1	-	-

주: 본예산 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최근 5년)」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9> 주요 의무지출 전망 및 산출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의무지출	2,661,061	3,011,180	3,116,916	3,270,029	3,427,169
증감		350,119	105,736	153,113	157,140
증감률		13%	4%	5%	5%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	1,312,864	1,400,866	1,497,461	1,593,045	1,694,996
증감		88,002	96,595	95,584	101,951
증감률		7%	7%	6%	6%
증가요인		25%	91%	62%	65%
② 지방이전 재원	1,089,014	1,312,578	1,336,141	1,392,459	1,451,144
증감		223,564	23,563	56,318	58,685
증감률		21%	2%	4%	4%
증가요인		64%	22%	37%	37%
③ 이자지출 및 기타	259,182	297,735	283,315	284,526	281,030
증감		38,553	-14,420	1,211	-3,496
증감률		15%	-5%	0%	-1%
증가요인		11%	-14%	1%	-2%

출처: 대한민국 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고,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의무지출, 재량지출

2022년 예산안 기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규모는 각각 301.1조원, 303.3조원으로 각각의 비중은 49.8%, 50.2% 전체 재정지출 규모를 거의 동일하게 양분하고 있다. 2021~2025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2022~2025년 각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은 49.1~49.6%, 재량지출 비중은 50.2~50.9%로 약 50% 정도씩의 재정지출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1~2025년 연평균 6.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동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 4.5%를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에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율의 거의 50:50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21~2022년 의무지출은 13%가 증가한 이후 2022~2025년 연평균 3.45% 증가하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2021~2022년 의무지출 증가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9>는 2021~2025년 각 연도별 의무지출 증가 요인을 각 구성요소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2021~2022년 의무지출 증가분 약 35조의 64%는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증가(약 22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증대하면서 의무지출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고령화에 따른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의 지속적인 완화 조치와 지출 단가의 인상에 따라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재

<표 10>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관리재정수지 전망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17~2021 계획	△28.3	△28.6	△33.0	△38.4	△44.3	-	-	-	-
2018~2022 계획	-	△28.5	△33.4	△44.5	△54.2	△63.0	-	-	-
2019~2023 계획	-	-	△37.6	△72.1	△81.8	△85.6	△90.2	-	-
2020~2024 계획 (GDP 대비 %)	-	-	-	△71.5 (△3.5)	△109.7 (△5.4)	△123.2 (△5.9)	△128.2 (△5.9)	△127.5 (△5.6)	-
2021~2025 계획 (GDP 대비 %)	-	-	-	-	△112.5 (△5.6)	△94.7 (△4.4)	△104.7 (△4.7)	△108.4 (△4.7)	△109.2 (△4.6)
2020~2024 계획 대비 증감 (GDP 대비 % 증감)	-	-	-	-	△2.8 (△0.2)	28.5 (1.5)	23.5 (1.2)	19.1 (0.9)	-
실제관리재정수지	△18.5	△10.6	△54.4	△112					

주: 본예산 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최근 5년)」,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량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과 민간경상이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의미의 재량지출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60 장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시나리오에 따라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은 약 75~7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무지출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의 중기계획은 복지제도 개편과 더불어 전달체계의 개선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에 포함되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한 의무지출은 2021년 약 55.8조원에서 2025년 약 75.4조원으로 연평균 7.8% 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동 기간 4대 연금에 대한 의무지출 증가 금액 약 19.5조원은 해당 기간 복지 분야 법정지출 증가 금액 약 38.2조원의 51%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4대 연금의 구조 개혁이 향후 재정건전화 및 의무지출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94.7조원의 적자이며, 이는 GDP 대비 4.4%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1년 추경 대비 31.9조원 감소하였으나 향후 2025년까지 4.4~4.7%의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규모가 2018~2022 계획에서는 2%대, 2019~2023 계획에서는 3% 후반, 올해 중기 계획에서는 4% 중반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의 적자로 관리재정수지 통계를 공식 관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세 등 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결과이다. 2021~2025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1년과 2020년에 이어 약 112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2022~2025년에도 매년 약 100조원대의

<표 11>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국가채무 전망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17~2021 계획	637.8	682.7	722.5	756.8	793.5	-	-	-	-
2018~2022 계획	-	708.2	741.0	790.8	843.0	897.8	-	-	-
2019~2023 계획	-	-	740.8	805.5	887.6	970.6	1,061.3	-	-
2020~2024 계획 (GDP 대비 %)	-	-	-	805.2 (39.8)	945.0 (46.7)	1,070.3 (50.9)	1,196.3 (54.6)	1,327.0 (58.3)	-
2021~2025 계획 (GDP 대비 %)	-	-	-	-	956.0 (47.3)	1,068.3 (50.2)	1,175.4 (53.1)	1,291.5 (56.1)	1,408.5 (58.8)
2020~2024 계획 대비 증감 (GDP 대비 % 증감)	-	-	-	-	11 (△0.6)	△2 (0.7)	△20.9 (1.5)	△35.5 (2.2)	-
실제 국가채무	660.2	680.5	723.2	846.9					

주: 본예산 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최근 5년)」,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2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 1,068.3조원 규모로 GDP의 50%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표 12>를 통해 국가채무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재원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⁸⁾는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63.1%에서 2025년에는 6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적자성 채무는 연평균 14%의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적자성 채무 증가가 동 기간 동안 국가채무 증가분의 약 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채발행을 통해 상환됨으로써 이자비용의 증가를 동반하게 된다. 국채발행

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2021년 14.8조원에서 2022년 16.4조원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1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이자지출은 향후 금리 인상 기조 및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대외 신인도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등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따라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 급속하게 확대된 국가채무는 확장 재정을 통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1,068조원은 GDP 대비 50.2% 수준이지만 선진국보다는 크게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IMF 보고서(*Fiscal Monitor*, 2021. 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8)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공적자금 국채 전환을 통한 상환이 적자성 채무 상환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적자성 채무는 국채의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용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이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이에 해당된다(기획재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1, p. 172).

〈표 12〉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경	전망				
국가채무	965.3	965.9	1,068.3	1,175.4	1,291.5	1,408.5
적자성 채무	609.3 (63.1)	609.9 (63.1)	686.0 (64.2)	766.2 (65.2)	854.7 (66.2)	953.3 (67.7)
금융성 채무	356.0 (36.9)	356.0 (36.9)	382.3 (35.8)	409.2 (34.8)	436.9 (33.8)	455.3 (32.3)

주: 1. 2021년은 2차 추경 기준

2. ()안은 비중

출처: 대한민국 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D2) 비율은 42.2%로 선진국 평균인 103.8%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108.2%), 일본(234.9%), 프랑스(98.1%), 이탈리아(134.6%), 캐나다(86.8%), 영국(85.2%) 등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호주(63.1%), 독일(68.4%) 등이 평균보다 낮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20%p 이상 차이가 난다. 하지만 동일한 국가부채 규모를 갖고 있더라도 기축통화국 여부, 향후 해당 국가 성장을 전망 및 인구구조 등에 따라 유지 가능한 적절한 국가부채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순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가부채 수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타 국가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D1) 기준 지표보다는 일반정부부채(D2) 기준을 주 지표로 활용하고 공공부문부채(D3)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⁹⁾ D1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로 가장 좁은 개념의 국가부채 통계이다. 이에 반해 D2는 D1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이고, D3는 D2에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를 더한 가장 넓은 개념의 국가부채이다.¹⁰⁾ 또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공무원연금의 총당부채 규모는 약 944조원에 달하며, 이를 정부부채(D2)에 더하는 경우 2019년 기준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91.4%까지 올라가게 되며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 부담이 없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해도 정부 부채비율은 75%에 달한다.¹¹⁾ 따라서 실질적인 국가의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 총당부채까지 고려하는 경우 D1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단순히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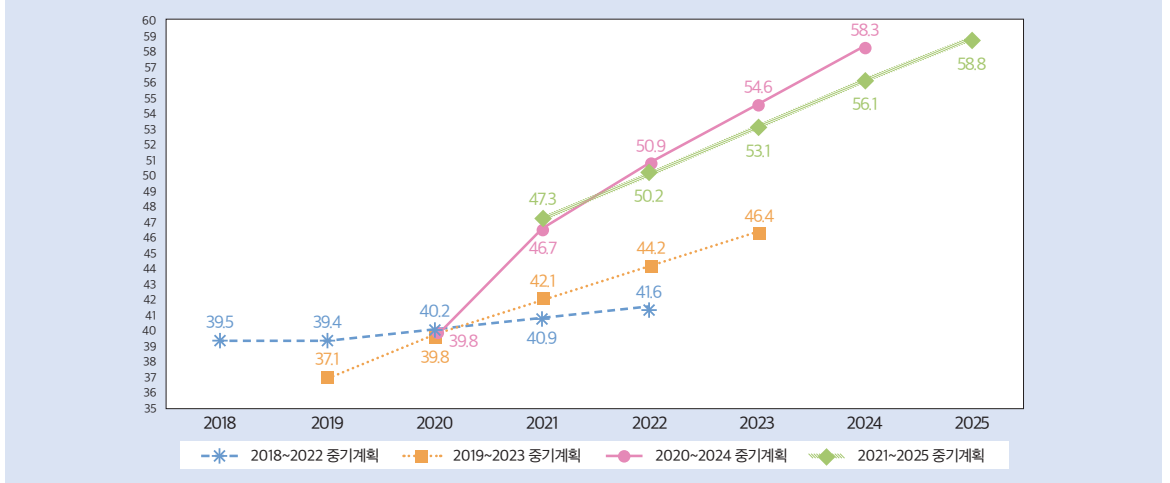
9) D3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19년 기준 59%이다. 타 국가의 경우 멕시코(47.5%), 호주(79.9%), 영국(89.7%), 캐나다(117.5%), 포르투갈(126.2%), 일본(253.6%) 수준이다.

10) D3 기준의 국가부채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금융공기업(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부채는 포함하지 않게 된다. 또한 국가별로 금융공기업이 비중과 존재 유무가 차이가 발생하여 금융공기업의 비중이 큰 국가의 부채수준은 국가 비교에서 과소평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11) 박형수,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 K-policy 브리프, 2021. 3.

[그림 3]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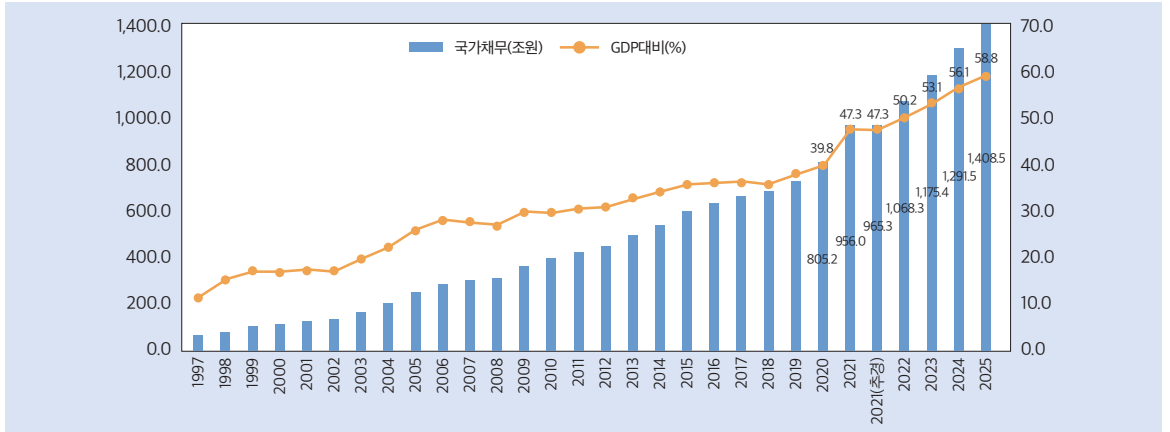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최근 4년),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GDP 대비 %)



주: 2021(추경)은 2차 추경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통계-주제별 통계-정부-재정-국가채무현황(1997~2019)」,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검색일자: 2020. 9. 10.;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앞의 논의에서와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국가 간 비교의 기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가 타 국가에 비해 빠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4월호 기준(2020년 이후는 예측치)으로 코로나19 사태 속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추이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2019년 42.2%에서

2021년 53.2%로 약 26%(11%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증가율로는 11번째이며 기축통화국인 미국(22.8%), 일본(9.2%) 유로존의 독일(17.8%), 프랑스(17.5%)보다도 높다. 시계열을 5년 후인 2026년으로 확대하면 재정 악화 추세는 더 가팔라진다. 2026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중(69.7%)은 OECD 중 17위로 올해(25위)보다 8계단 뺄 전망으로 채무 증가 속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Ⅲ. 분야별 자원배분

2022년 분야별 예산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전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지출 증가율에서는 교육 분야의 지출이 16.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지방행정(14.3%), 환경(12.4%) 분야 역시 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인 교

<표 13>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558.0 (8.9)	604.4 (8.3)	634.7 (5.0)	663.2 (4.5)	691.1 (4.2)	(5.5)
1. 보건·복지·고용	199.7 (10.6)	216.7 (8.5)	232.2 (7.1)	246.1 (6.0)	259.3 (5.3)	(6.7)
2. 교육	71.2 (Δ2.0)	83.2 (16.8)	84.8 (2.0)	87.4 (3.0)	90.0 (3.0)	(6.0)
3. 문화·체육·관광	8.5 (5.8)	8.8 (3.9)	9.1 (3.5)	9.4 (3.5)	9.8 (3.4)	(3.6)
4. 환경	10.6 (17.8)	11.9 (12.4)	12.9 (8.5)	13.7 (6.1)	14.5 (5.9)	(8.2)
5. R&D	27.4 (13.1)	29.8 (8.8)	32.3 (8.5)	34.0 (5.2)	35.4 (4.0)	(6.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20.8)	30.4 (6.0)	32.6 (7.5)	35.0 (7.2)	36.4 (4.1)	(6.2)
7. SOC	26.5 (14.1)	27.5 (3.8)	28.7 (4.4)	29.5 (2.5)	30.2 (2.4)	(3.3)
8. 농림·수산·식품	22.7 (5.3)	23.4 (3.4)	24.0 (2.3)	24.4 (2.0)	24.9 (1.8)	(2.4)
9. 국방	52.8 (5.4)	55.2 (4.5)	57.7 (4.4)	60.3 (4.6)	63.1 (4.5)	(4.5)
10. 외교·통일	5.7 (3.5)	6.0 (5.7)	6.2 (3.3)	6.4 (3.2)	6.6 (3.2)	(3.8)
11. 공공질서·안전	22.3 (7.0)	22.4 (0.3)	23.4 (4.4)	24.3 (4.1)	25.1 (3.1)	(3.0)
12. 일반·지방행정	84.7 (7.2)	96.8 (14.3)	100.4 (3.7)	103.0 (2.6)	105.8 (2.7)	(5.7)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출처: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1, p. 13

〈표 14〉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지출 증가율 변화

(단위: %)

분야	2016~2020	2017~2021	2018~2022	2019~2023	2020~2024	2021~2025
보건·복지·고용	4.6	12.9	10.3	9.2	7.7	6.7
교육	4.5	11.7	7.0	3.8	1.8	6.0
문화·체육·관광	6.8	△8.2	5.5	5.4	4.2	3.6
환경	△0.6	△2.0	△0.5	9.3	8.7	8.2
R&D	1.5	0.9	5.2	10.8	7.2	6.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7	△0.7	5.5	12.4	10.7	6.2
SOC	△6.0	△20.0	△2.0	4.6	6.0	3.3
농림·수산·식품	△0.2	0.1	△0.1	2.6	2.3	2.4
국방	3.6	6.9	6.5	6.2	5.0	4.5
외교·통일	1.7	5.2	6.3	6.9	4.1	3.8
공공질서·안전	3.5	4.2	4.3	4.0	4.2	3.0
일반·지방행정	5.4	10.0	8.0	3.0	4.7	5.7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육 분야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어 국세 총수입 증가에 따라 2021년 53.2조원에서 2022년 64.3조원으로 전년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20.8%에 이르는 것이 높은 증가율의 원인이다.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 분야 지출은 2021년 18조원에서 2022년 18.9조원으로 약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 정부의 총지출(604.4조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출산을 하락으로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 배분의 기본 방향은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투자를 확대, ② 미래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뉴딜 2.0 등 산업·R&D·환경 분야를 적극 지원, ③ 교육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는 방향으

로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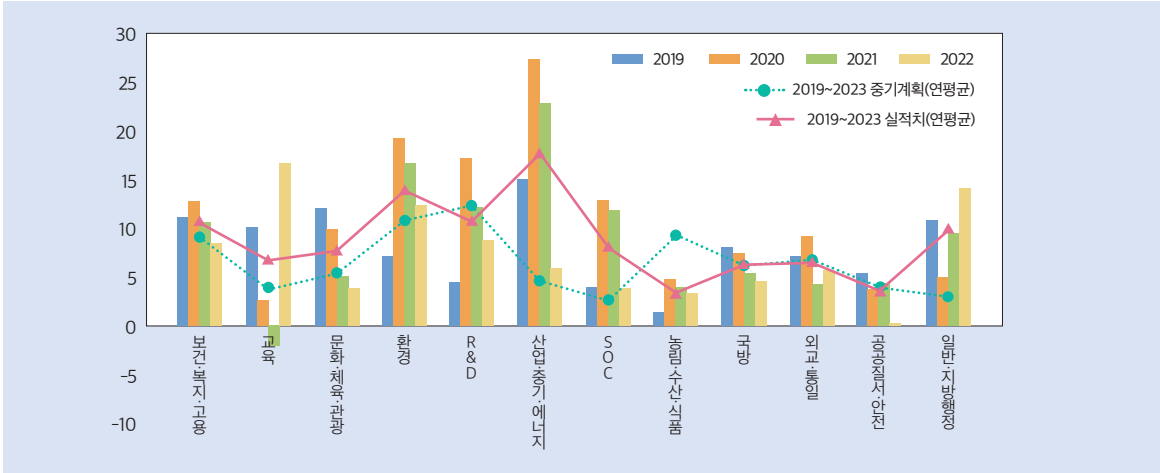
교육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방향은 지자체-대학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및 온라인을 통해 이를 일반 국민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생에게 학습목적 특별 바우처를 지급하고 고교무상교육 달성하며 국민의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및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충 등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이 신설되었다.

2021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8.5%로 전체 평균 지출 증가율 8.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

[그림 5] 예산안 각 연도 분야별 지출 증감률(2019~2022년)

(단위: %)



주: 점선은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반영된 분야별 연평균 증감률이며, 실선은 2019~2022 각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실제 재원 증감률을 연평균한 수치임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예산안 기준

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완화되었다. 또한 0~1세 영아수당이 도입되어 2022년 월 30만원에서 2025년 월 5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증액될 예정이며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도 7세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구직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중점 투자 방안으로 포함되었다.

[그림 5]는 예산안 각 연도 분야별 지출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9~2022년 실제 재원 증감률을 연평균한 수치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중기·에너지 분야가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분야는 2022년 전년도의 지출 증가율 20.8%보다는 낮은 6%의 지출 증가를 계획하고 K-반도체, 미래차, 조선업 등 주요 전략산업을 지

원하기 위해 자금,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는 33.7조원이 배정되어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2.7조원이 증액(추경 대비 1.2조원 증액)되었고, 2020년 추경에 편성되어 시작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산은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플랫폼·콘텐츠·기술 개발 기반 강화 등에 0.8조원, (그린뉴딜)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조원, (휴먼뉴딜)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등 청년정책에 2.2조원, 기초학력 향상 및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격차 해소에 1.3조원 등 재원이 신규로 배정되었다.

IV. 3대 재정혁신

2022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상황을 중장기적 계획하에 관리하고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노력도 비중 있게 담겨 있다.

먼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을 검토하고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감액하여 미래 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과 예시로 코로나 긴급 금융지원금(△1.5조원), 한시 일자리·생계 유지 지원금(△1.1조원), 국방개혁2.0 등 병력 감축(△0.3조원),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대 경상경비(특수활동비, 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의 절감(△128억원)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일시적으로 배분된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량지출의 10%(약 30조원)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의문이다. 현재는 재량지출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계획과 강제성을 갖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재정혁신 방안은 거의 모든 부처가 공동과제를 발굴·기획·집행하는 방식으로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사 및 중복 사업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재정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으로, 이와 같은 협업예산을 2021년 12개 과제(9.9조원)에서 2022년 17개 사업(13.9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협업예산의 예시로 다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K-글로벌 백신허브 사업(0.2 → 0.7조원), 미래차 개발 및 보급(2.0 → 3.4조원),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양성(1.2조원 → 1.6조원) 등이 포함되었다.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유사·중복 예산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협업예산에 포함된 과제들은 모두 작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들로 이와 같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유사·중복을 제거하는 협업과제 선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한 사례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이 재정혁신 방안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재정혁신 방안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예산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의 예산 공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민주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 자체를 재정건정성 개선을 위한 재정 혁신 노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V. 맺음말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 2.0, 2050 탄소중립 투자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있어

서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비교하여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와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의 기초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게 제약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은 국가 위기 발생 때에는 적용을 면할 수 있으며, 경기둔화 시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도 완화할 수 있어 강제성·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재정준칙의 적용 시점을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하여 2025년으로 미뤄둔 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 여섯 차례의 추경이 편성되었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는 과도하게 늘어난 재정 적자규모를 점차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정지출의 방향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이 크게 타격을 받아 산업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으로 확장 재정은 산업별 불균형 완화와 피해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4대 연금 지출

을 포함하는 의무지출 구조 개혁 방안, 지출구조조정과 유사 중복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의 비중은 26.8%로 OECD 평균인 33.9%¹²⁾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세제 개혁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KIPF**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각 연도.
 _____, 『예산안 개요』, 각 연도.
 _____,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1.
 _____, 「2022년 예산안 주요내용」, 2021. 8. 27.
 _____, 「2021~2025년 국가재정운영계획」, 2021.
 신용상,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1. 6.
 박형수,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 K-policy 브리프, 2021. 3.
 한국경제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21. 5.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
 허진욱,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관한 평가와 시사점」, KDI 현안분석, 2021. 4.

12)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9.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1*, 2021.

_____,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 2021. 4.

_____, *Fiscal Monitor, April 2021*, 2021.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1. 3.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202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co.kr, 검색일자: 2021. 9. 1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검색일자: 2021. 9. 10.

_____, 「국내통계-주제별 통계-정부·재정-국가채무 현황(1997~2019)」,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검색일자: 2020. 9. 10.

BIS, <https://www.bis.org/statistics>, 검색일자: 2021. 9. 10.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 9. 10.

PEMNA Online Plenary Conference/ Day 1
September 8-9, 2021

Sustainable and Resilient
Expenditures for a Post-COVID
Recovery

Fabian Seid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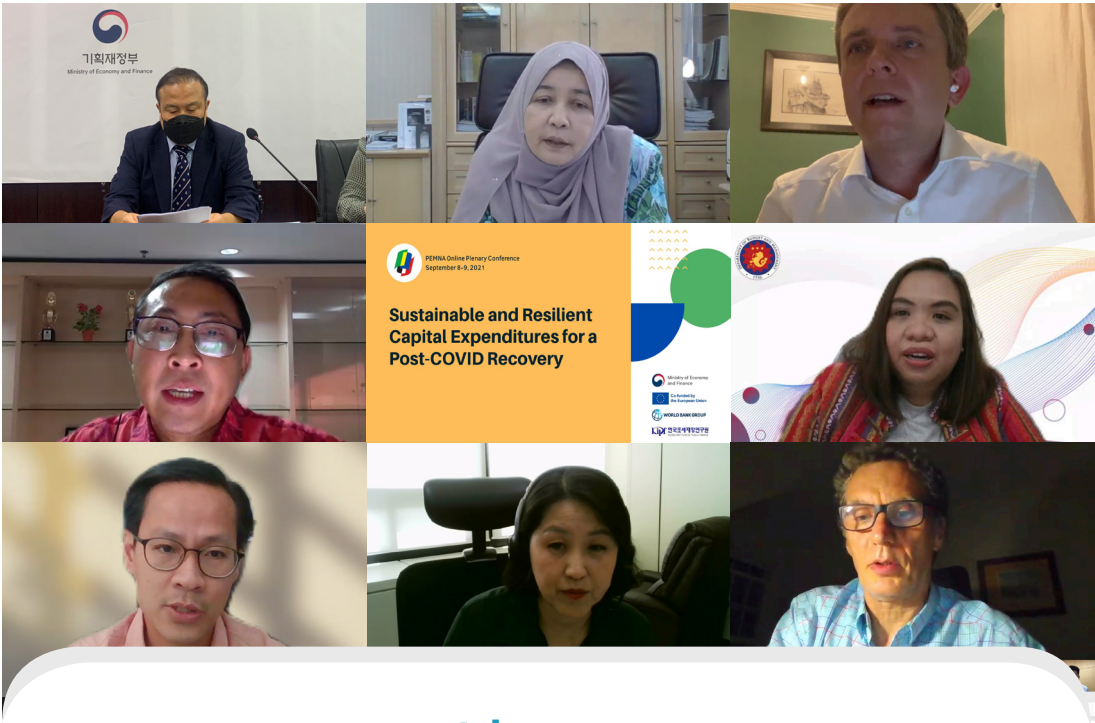
Ministry of Economic and Finance
Group

A Zoom meeting interface. On the left, a video feed of Fabian Seidler, a man with short grey hair wearing a dark suit jacket over a white shirt. The background behind him is a presentation slide with an orange header and a blue footer. The slide text reads: 'PEMNA Online Plenary Conference/ Day 1', 'September 8-9, 2021', 'Sustainable and Resilient Expenditures for a Post-COVID Recovery', and 'Ministry of Economic and Finance Group'. On the right side of the Zoom window, there is a grid of 15 small video icons, all of which are greyed out, indicating that other participants are muted. At the bottom of the Zoom window, there is a control bar with icons for mute, video, chat, and other meeting functions.

정책토론포트 |



■ 2021년도 PEMNA 온라인 총회



2021년도 PEMNA 온라인 총회

개요

- 회의명 2021년도 PEMNA 온라인 총회
- 주제 Sustainable and Resilient Capital Expenditures for a Post-COVID Recovery
- 일시 2021년 9월 8일(수) ~ 9일(목)
- 주최 세계은행
-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원 기획재정부 및 유럽연합

* 본 원고는 2021년 9월 8일(수)~9일(목),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하에 『Sustainable and Resilient Capital Expenditures for a Post-COVID Recovery』를 주제로 열린 2021년도 PEMNA 온라인 총회의 요약자료입니다. 본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협력체)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WB),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PEMNA는 올해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자본지출 방안을 심층 논의함

- 총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은 공동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은 예산분과와 국고회계분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함

공동세션

9월 8일
수요일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I

- Alma Kanani (The World Bank)

■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Alma Kanani(세계은행, Practice Manager)는 장기화된 위기 속에서 공공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금번 회의의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자본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Opening Remarks II

- Ji-Chul Ba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배지철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로 더욱 중요해진 공공재정의 역할과 한국의 노력을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공공재정관리 및 혁신 지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로서 PEMNA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각국의 노력으로 더 나은 2022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Opening Remarks III

• Daniel Hachez (Delegation of the EU to Thailand)

■ EU 태국대표부 Daniel Hachez 국제협력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기후중립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EU의 노력을 간략히 소개한 후 PEMNA를 통해 유익한 지식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힘

Joint Session 1. The Changing Role of MOF in Ensuring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of Capital Expenditures

Presentation

• Delphine Moretti (IMF)

■ IMF는 위기 이후 회복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투자관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투자계획을 중기예산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회복을 위해서는 현대적이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핵심임
- 기존 공공투자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하고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공공투자계획에서 유지보수 및 자본투자는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함

- 조달과정에서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한편, 예산에 부합하는 내에서 시기적절하게 공공투자계획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터링 역시 중요함

■ 위기 이후의 공공투자계획에 대한 관리지침은 국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짐

- 위기 이후의 중기예산계획 부문에서 국가 역량 단계별 관행은 다음과 같음
 - 기본단계: 정부나 의회의 승인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약속이 중요함
 - 중간단계: 우선순위에 대한 배분 및 외부자금 동원에 대한 확실성이 중요함
 - 고급단계: 중기예산계획에 대한 실질적 집행과 함께 프로젝트의 투명성이 중요함
- 유지에 대한 국가 역량 단계별 관행은 다음과 같음
 - 기본단계: 중앙정부 및 하위정부의 일상적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배분이 필요
 - 중간단계: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자본적 유지보수를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일상적 유지보수의 자금 지원을 늘림
 - 고급단계: 모든 정부자산과 기관을 포괄하는 정기적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모델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재원 지원을 확립함

Presentation

• Eko Roestanto (Ministry of Finance,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인프라투자 현황과 투자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여건은 주변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비해 열악한 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최근 5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자본지출은 정체된 경향을 보이며, 코로나19 대응 지출로 인해 2021년까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향후 인프라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주요 재원조달 방안으로 PPP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밝힘

- 인도네시아는 인프라개발계획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중진국의 덩을 탈출하는 한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국가결정기여(NDC)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인도네시아는 2020~2024년 인프라 개발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민간투자 유치, 고품질의 인프라에 투자, 서비스 개선을 언급하였으며, 인프라 재원 중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므로 민간투자 및 SOE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방침임
- 인도네시아의 2020~2024년 인프라 개발계획 예산 6,445조루피아 중 정부예산은 2,385조루피아이며, 나머지 재원은 SOE를 통해 1,353조루피아, 민간투자를 통해 2,707조루피아 조달을 계획하고 있음

Presentation

• Jim Brumby (The World Bank)

■ 세계은행은 성공적인 공공투자를 위해서는 정부

수입, 정부투자, 양질의 인프라자본,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정부수입은 투자를 위한 재정여력을 높이고, 투자는 수입을 다시 증가시킴
- 초기 자본금이 클수록 영향도 커짐
- 수입 확대를 통한 선순환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세제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공공투자관리와 거버넌스는 투자를 위한 재정여력과 인프라 수요라는 큰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공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적격성, 인프라 수명, 국가, 재원의 네 요소 간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이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적격성은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갖춰야 하며, 프로젝트 전체 주기와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야 함
- 인프라 수명은 계획, 설계, 재원, 건설, 운영, 유지보수, 철거뿐 아니라 시행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함
- 국가는 무수한 하위단위 구성요소가 있고 정치적 과정이 있어 예측과 실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재원의 경우 페이그 원칙의 공공부문 재원 및 민간자본으로부터의 차입·출자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공공투자관리 부문에서 세계은행은 공공투자의 계획, 실행, 회계 개선 및 조세정책과 행정의 현대화, 공공부채의 투명성, 민간금융 어젠다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현재 약 100여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Presentation

• Yu Jin Kim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자본지출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보건·노동부문의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 이에, 한국은 사회인프라 확충에 민관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평균 13.4~14% 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단축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었음
 - 지속가능한 자본지출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조달방식인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한편, 한국은 타당성조사, 적격성 심사, 민간투자대안 마련의 3단계를 통해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재정부담을 비교하고 실행함
 -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국가경제 차원의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를 결정함
 - 적격성 심사 단계에서는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지출을 비교하여 적격성 달성 여부를 판단함
 - 적격성 심사 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의 민간투자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이때 사업비의 수준, 사용료, 보조금의 규모는 정부 측에서 제시함

Presentation

• Nguyen Duc Long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tnam)

- 베트남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GDP의 약 33.7%를 공공투자 부문에 지출하였으며, 이 중 수송, 전력, 관개, 보건, ICT 인프라 부문에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지원자격 검토, 투자정책의 개념적 검토(5단계), 투자결정(3단계)을 거쳐 공공사업과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결정
 - 첫 단계인 지원자격 검토 단계에서는 국가 우선순위에 있는 산업인지를 판단하는데, 10조동 이상 규모, 환경적인 영향, 5만명(산간지방은 2만명) 이상의 이주, 500헥타르 이상의 경작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밖에도 특별한 정책이나 매커니즘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음
 - 투자정책의 개념적 검토는 투자준비기관, 평가패널, 정부, 국회 내 심의기관, 국회 등의 5단계를 거침
 - 투자결정은 투자준비기관의 타당성조사, 평가패널의 타당성 조사, 총리 검토 및 결정의 3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됨

Joint Session 2. Balanc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Short-Term Stimulus

Presentation

• Adrian Fozzard (The World Bank)

- 세계은행은 자본지출의 지속가능성과 탄력성의 강화를 위한 재무부의 역할 측면에서 기후변화예산 태깅(Climate Change Expenditure Tagging)에 대한 개괄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였음
 - 기후변화예산 태깅은 2013년 네팔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들이 진행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음
 - 각국은 기후변화예산 태깅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기후변화 정책목표에 맞춘 자원의 조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재원의 동원, 정책 공약에 대한 리포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출은 에너지, 산림 및 환경, 인프라, 교통, 수자원 등으로 분류되며, 각 분야에 대한 적응, 완화 및 지원활동 등으로 다시 구분됨
 - 국가마다 범위, 측정, 분류, 개입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제도 발전이 현재 진행 중임
 - 한편, 예산에 미치는 영향 및 실제 지출 추적은 제한적이며, 방법론이 국내용에 국한되어 있어 국제 비교가 힘들고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 등이 현행 기후변화예산 태깅의 한계점 및 개선점으로 지적됨

2021년도 PEMNA 총회 예산분과

9월 9일
목요일

B-CoP Session 1. Financing Capital Investments

Presentation: Pre-Feasibility Study in Korea

• Jae Hyeon Kim (Korea)

- 한국은 예비타당성조사(Pre-Feasibility Study: PFS)를 통하여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으로 사전 검증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이전에는 일선 부처가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 1994~1998년 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단 1개 사업을 제외한 32개 사업이 통과됨
 -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당국이 공정한 시각에서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1999~2020년 간 932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었고 이 중 36.5%에 해당하는 340개 사업(178.9조원 규모)이 부적격 판정을 받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①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 이상 및 국고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과 ② 신규사업 중 중기사업계획 500억원 이상 기타 재정사업임

- ①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정보화 사업,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됨
- ②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이 포함됨

- 예비타당성은 대상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대상사업 선정 - 조사 수행 순으로 진행됨

■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종합평가(AHP) 개편, 정책성 평가 내 실화, 복지사업 평가방식 개편,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등임

-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조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함
 - 수도권의 AHP는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인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임
- 종합평가(AHP) 거버넌스도 개편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
- 정책성 평가 내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하여 일자리, 주민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고려함
- 기존에는 복지사업을 SOC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개편 후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

별 점검방식으로 전환함

- 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함

Presentation: Financing Capital Investments

• Tom Ferris (Consultant Economist)

■ 아일랜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2010년 트로이카(Troika)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시작함과 동시에 강력한 재정 조정을 진행함

※ 트로이카(Troika)는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임

-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2013년 말 성공적으로 종료됨
- 예산 관련 개혁도 단행하였으며 이에에는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중기 공공지출 우선순위 설정,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제정 등이 포함됨
 - 재정책임법에 따라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가 법정 기구로 설립되고, 국내 및 EU 재정준칙을 입법화함

■ 아일랜드는 지출제한제도, 공공지출코드, 외부검증 절차,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자본투자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공공자본지출은 재정한도 내 설정한 지출상한하에서 운용됨
 - 국가개발계획 Project Ireland 40의 2018~2027년간 총투자규모는 1,160억유로임
 - 필요 재원은 국내 및 EU로 분류되며 국내 재원

- 은 공기업 투자와 민관투자 사업을 활용함
- 2025년 자본지출은 GNI 대비 약 5%로, 2017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임
- 공공지출코드(Public Spending Code)는 공공지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규칙, 절차 및 지침을 포함함
- 이는 2017년 IMF 공공투자관리평가(Public Investment Management Assessment: PIMA)의 권장사항을 포괄함
- 각 부처는 공공지출코드 이행사항에 대해 매년 품질보증 절차(Quality Assurance Process: QAP)를 실시해야 함

B-CoP Session 2. Climate Tagging of Public Expenditur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resentation: Philippines' Climate Budgeting

• Mary Joy O. de Leon (Philippines)

- 2015년 필리핀은 기후변화지출 태깅(Climate Change Expenditure Tagging: CCET)을 도입하여 예산과정에 기후변화 대응이 포함되도록 함
- 총괄부처는 예산관리부(공공지출관리), 기후변화위원회(기후변화정책 대응), 내무부(지방정부 성과 관리)임
- 시행부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로 기후변화예산을 식별, 태깅 및 추적하여 기후지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함

- 기후변화지출 태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진행되며, ① 기후예산안 작성, ② 예산 요약서 작성, ③ 예산청문회, ④ 기후지출 발표, ⑤ 세출예산안 및 세출법안 작성 순으로 이루어짐
- 특징적인 정책수단은 기후예산안 검토, 우선순위 조정 등임
- 각 부처에서 태깅한 기후변화 예산에 대하여 기후변화위원회가 검토함
- 예산안 검토 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는 국가 우선순위 정책과의 연계 여부 및 계획의 완전성에 따라 재정여력하에서 조정됨
- 기후변화지출 태깅에는 기후변화 저감·적응·재난위기경감 내각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예산 사업이 포함됨

※ 기후변화 저감·적응 재난위기경감 내각위원회(Cabinet Cluster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Mitigation - Disaster Risk Reduction)는 생태계 회복력 및 기후변화 취약지역의 적응력 강화를 지원함

- 2021년 기후변화지출은 2,824억필리핀페소로 이중 97%가 기후변화 적응 지출이며, 저감 지출은 3%임
- 2022년 기후변화지출은 2,845억필리핀페소로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나, 저감 지출이 17%까지 확대될 예정임
- 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과 연계 시, 기후변화지출의 50% 이상이 수자원 확보로 나타남
- 기후변화지출 태깅의 당면 과제는 역량 강화, 태깅 정확성 증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후변화지출 간 연계임



- 또한, 대학·지방정부 간 연계,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태깅 사업과 성인지 연계, 기후변화지출 태깅 결과와 정책 의사결정 연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Presentation: Climate Tagging of Public Expenditures-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Irnaldi Prayudha (Indonesia)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6년 국가예산에 대한 기후변화예산 태깅(Climate Budget Tagging: CBT)을 실시함
 - 기후변화예산 태깅 목적은 기후변화 저감·적응 관련 사업의 식별 및 추적임
 - 재무부, 국가개발기획부, 환경삼림부 외 관련 부처들이 함께하며, KRISNA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함
 - * KRISNA는 중앙정부 사업의 계획-예산-평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2020년 기준 11개 지방정부도 기후변화예산 태깅을 실시 중이며, 6개 지방정부가 추가로 시범 시행 중임

■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예산 태깅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각 부처는 KRISNA 시스템에서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표시함
- ② KRISNA 시스템은 재무부의 SMART 시스템과 연동하여 태깅 결과를 보여줌
- ③ 태깅 결과를 검토하고 탄소배출 감축량을 확인함

④ 태깅 및 감축량 결과를 바탕으로 Green Sukuk*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 보고서를 작성함

* Green Sukuk은 자금의 용도를 기후변화 및 환경 사업에 특화한 이슬람 채권임

- 2020년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예산은 전체 예산의 2.8%인 77.8조루피아임
 - 적응 예산이 33.3조루피아, 저감과 저감 및 적응 예산이 44.5조루피아가 나타남
 - 기후변화예산 중 84%가 에너지 및 교통 관련 사업에 할당되었으며, 그 외 산림, 농업, 폐기물 등에 할당됨
 - 기후변화예산 중 88%가 인프라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 단, 2018년 132.5조루피아 → 2019년 97.7조루피아 → 2020년 77.8조루피아가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각 부처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예산 태깅의 당면 과제는 부처의 예산 태깅 확대,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간 연계로 인도네시아는 이를 해결하여 태깅의 범위를 넓히고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021년도 PEMNA 총회 국고회계분과

9월 9일
목요일

T-CoP Session 1-1. Cash Forecasting and Management under Uncertainty

Presentation: Cash Forecasting and Management under Uncertainty

• Mike Williams (International Expert)

- 국고관리의 세 가지 필수 요건으로 국고단일계정, 현금예측, 그리고 적극적인 현금관리를 강조함
 -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성하에서는 재정 및 통화 당국 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더욱 중요함
 - 현금예측에서는 사후대처 방안보다 정확한 사전예측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일선 부처, 재정 및 통화 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
 - 현금예측이 빚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안 및 현금관리 계획안을 국가 상황에 맞춰 항상 준비해야 함
 -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현금 버퍼 외에도 공기업과 중앙은행을 통한 비상 자금조달 방안 등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코로나19 확산은 현금흐름 예측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음
 - 코로나19로 인해 현금흐름 예측 주기가 더욱 단축되었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도 더욱 자주 개최되고 있음

Presentation: Cambodia Cash Forecasting and Management under Uncertainty

• Socheat Chea (Cambodia)

- 캄보디아는 과세당국과 직접 소통하고, 현금계획 관련 IT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자금예측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정확한 현금흐름 예측을 위해 추정치와 실적치 간의 오차를 연구하고 일선 부처 및 과세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현금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킴
 - IMF의 지원으로 현금계획 관련 IT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한 현금관리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음
 - “Online Web-based Application”이라는 IT 시스템으로 일선 부처와 예산당국이 현금계획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적으로 현금관리를 할 수 있게 됨
- 예측하지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으로 정부준비금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 부유층의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재정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급여를 동결하고, 공무원 신규채용을 제한함
 -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2년 정부채권 발행을 준비 중임



Presentation: Cash Forecasting and Management under Uncertainty

• Sarimah binti Husain (Malaysia)

- 말레이시아는 현금흐름 관련 기관 간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단기투자 유치, 지출 우선순위 조정, 외부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함
 - 정부는 부채 및 현금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정부지출에 대응하고자 기타 예측 가능한 분야의 지출 및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IFMIS 시스템인 iGFMAS를 통해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현금흐름 관리를 지속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IFMIS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국고단일계정이 이미 확립되어 있어 효과적인 현금예측 및 관리가 가능함

T-CoP Session 1-2. Foundations of Effective Multi-annual Commitment Controls of Large Public Investments to Ensure Propoer Financing in a Context of COVID Fiscal Stress

Presentation: Fundamentals of Commitment Controls and Multi-Annual Commitment Controls

• Suhas Joshi (IMF)

- IMF는 정부지출 관련 현금흐름 문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당국과 일선 부처 간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일선 부처와 예산당국 모두 현금흐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의 재정여력(fiscal space)을 감안한 현실적인 현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일선 부처와 예산당국 간의 신뢰가 필요함
 - 사업 관련 일선 부처뿐만 아니라, 재무부도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지출을 관리 및 감독하는 FMIS와 같은 IT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Presentation: Government Investment Financing and Governance

• Moch Abdul Kobir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투자와 수출 확대 동력에 집중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함
 -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수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해 수출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물류비용 효율화를 위한 수출행정 지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림

- 인도네시아는 정부투자위원회를 통해 공공투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함
 - 정부투자위원회는 투자자금인 회전기금(revolving fund)과 기부기금(endowment fund)을 운용하며, 다년간 정부사업 및 공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투자 관련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고 정부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함

Presentation: Budget System of Korea & Control of Total Project Costs

• Bon Nyoung Koo (Korea)

- 한국은 국가 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관리제도의 예시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관리 제도를 소개함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건설공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사업추진 효과 등 정책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함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다년간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고자 시행됨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2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의 전체 규모(설계비, 건설비, 보상비 등 모두

포함)를 단계별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됨
- 제도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당국에서 향후 대규모 예산 지출이 언제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됨

T-CoP Session 2. Climate-related Disaster Risk Assessment of Assets and Risk Financing to Mitigate the Impact on Public Finances and Government Balance Sheets

Presentation: Philippine Disaster Risk Financing and Insurance Strategy


• Amor Rollyn D. Dais (Philippines)

- 필리핀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무엇보다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예측 시스템 향상에 힘쓰고 있음
 - 필리핀 정부자산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기 위해 각 자산의 위치와 자연재해 발생 가능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는 데이터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글 어스(Google Earth)와 같은 기존 기술과 더불어 자국의 기후 예측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필리핀은 재난의 규모와 정도를 구분하여 리스크 정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 관련 재난기금, 재해보험, 재난채권 등을 운용하고 있음
 - 피해보상에 관련된 자금조달은 피해규모가 크



지 않고 자주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기금과 비상기금을 활용하고, 더 규모가 큰 재난의 경우에는 보험과 보험 관련 채권을 활용함

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공조가 필요함

- 재난 리스크 관리 관련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또한 중요함 

■ 필리핀의 재난 관련 기금과 비상기금은 연간 예산에 포함되어 편성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음

- 기타 태풍 또는 지진 피해 보상에 대한 재원은 재난보험으로 충당함
- 현재 태풍과 지진 피해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으로 재난채권을 도입할 예정이며, 공공자산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 중임

**Presentation: Financial Instruments
Reducing Impact of Climate-related
Disaster Risks on Public Assets in Vietnam**

• Luu Anh Nguyet (Vietnam)

■ 베트남은 기후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자연재해 관련 피해 복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예산 외 재해보험, 국제원조, 기부금 등으로 자금조달처를 확대함

- 2014년 이전까지는 재난 피해 복구 자금이 대부분 정부예산으로 충당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연재해 방지 및 관리 기금과 재난보험 등을 도입함

■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국가 재정이 받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공공자본에 대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기후 관련 리스크 보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코로나19 대응 직원 유지 크레딧에 대한 지침 공지]

■ 미국 국세청(IRS)은 2020년 8월 4일,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시행되었던 “직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ERC)”을 올해 연말 까지 연장하기로 정하면서 추가 지침을 발표함¹⁾

● 해당 지침은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구제안인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ARP) Act of 2021) 중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적용될 직원 유지 크레딧(ERC)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직원 유지 크레딧(ERC)이란, 코로나19 상황에서 종업원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고용한 종업원의 급여 중 일부를 크레딧으로 받아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크레딧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함

■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적용되는 직원 유지 크레딧(ERC)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 2022년 1월 1일 이전

에 적격 임금을 지급하는 적격 고용주에게 지난 분기와 같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함

- 고용주는 적격 직원 1인당 급여 1만달러 중 70%인 최대 7천달러 한도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음

- 적격 사업장의 조건은 해당 분기 적격 고용주의 총수입이 지난 해 분기 수입의 80% 미만이어야 함

- PPP(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과 중복신청이 허용됨

●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적격 고용주의 대상에 신생사업체를 포함시킴

- 신생사업체란, 2020년 2월 15일 이후 무역 또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총 연 매출이 100만달러 이하인 회사를 말함

- 신생사업체는 2021년 3~4분기를 합쳐 10만달러 한도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영국 - 불확실한 조세취급 보고규정 도입]

■ 영국 국세청은 대기업과의 세법 해석 분쟁과 관련하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 20일 대기업의 불확실한 조세취급 보고규정 초안을 공개함^{2), 3)}

1) IRS, "Treasury, IRS provide additional guidance to employers claiming the employee retention credit, including for the third and fourth quarters of 2021,"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provide-additional-guidance-to-employers-claiming-the-employee-retention-credit-including-for-the-third-and-fourth-quarters-of-2021>, 검색일자: 2021. 8. 18.

2) 영국 국세청, "Large businesses: notification of uncertain tax treatment," Policy Paper, 2021. 7. 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arge-businesses-notification-of-uncertain-tax-treatment/large-businesses-notification-of-uncertain-tax-treatment>, 검색일자: 2021. 8. 18.

3) JDSUPRA, "Notification of Uncertain Tax Treatment by Large Businesses in the UK," 2021. 8. 6., <https://www.jdsupra.com/legalnews/notification-of-uncertain-tax-treatment-5630210/>, 검색일자: 2021. 8. 18.

- 동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과 관련한 불확실한 조세처리는 영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총당금 인식(회계기준과 세무취급상 차이), 또는
 - 법률에 대한 영국 국세청의 해석과 다른 해석에 기반한 세무취급, 또는
 - 법원이 세무상 처리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한(substantial) 경우
- 보고의무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기업 및 특정 거래에 적용되며, 영국 국세청은 약 2,300개의 회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보고의무 대기업 기준: 매출 2억파운드⁴⁾ 또는 자산 20억파운드⁵⁾
 - 보고의무 건당 거래금액 기준: 500만파운드⁶⁾
 - 관련 세목: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보고 예외 항목은 아래와 같음
 - 대기업 입장에서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 그룹 내 거래와 관련되고, 관련 계열사들의 법인세 순차액(the net difference across a group for corporation tax)이 500만파운드 미만일 때
 - 외국법인의 영국 고정사업장 이익 및 조세심판원 해석과 동시에 관련될 때

- 이전가격 및 조세심판원 해석과 동시에 관련될 때

- 동 제도는 대기업과 영국 국세청 간 세법 해석이 달라 미납되는 세금이 많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것으로, 불확실한 조세 처리를 식별하는 영국 국세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동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1년 9월 13일이며, 2022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보고서에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아일랜드 - 2021년 코로나19 외 재정법안]

- 아일랜드 대통령은 2021년 7월 19일, 2021년 코로나19 외 재정법안⁷⁾에 서명하였으며, 그중 조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종 VAT 감면, 납기연장 제도가 연장되었음
 - 관광·접객업 VAT 세율을 13.5%에서 9%로 인하하는 조치는 기존 2020년 11월~2021년 12월 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⁸⁾ 금번 법안을 통해 2022년 8월까지로 연장됨
 - VAT 등과 관련하여 적격 납세자의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세액의 납기가 기존⁹⁾ 지원책하

4)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천 200억원임

5)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조 2천억원임

6)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억원임

7) 공식 명칭은 Finance (Covid-19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1임; 아일랜드 의회, "Finance (Covid-19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1," 2021. 7. 19., <https://www.oireachtas.ie/en/bills/bill/2021/89/>, 검색일자: 2021. 8. 18.

8) KPMG, "COVID-19 support for business," 2021. 7. 1., <https://home.kpmg/ie/en/home/insights/2021/07/finance-covid-19-miscellaneous-provisions-bill-2021-gov.html>, 검색일자: 2021. 8. 18.

9) Irish Tax Institute, "Debt Warehousing & Interest Suspension," <https://taxinstitute.ie/covid-19-hub/debt-warehousing-interest-suspension/>, 검색일자: 2021. 8. 18.



에서 거래재개된 후 12개월로 연장되었으나, 금번 법안을 통해 2022년 말까지 무이자 연장, 이후 상환 완료 시까지 저금리(연3%) 연장됨

- 특정 주택의 대량 구매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를 인상하였음
- 주택에 적용되는 인지세율은 최대 2%¹⁰⁾이나, 2021년 5월 이후 최근 1년간 특정¹¹⁾ 주택에 대한 누적 구매수량이 10채 이상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됨
- 이는 완공 시기에 가까운 주택단지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매입에 불이익을 제공하여,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¹²⁾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납세자에 대해서는 4만 5천유로¹⁵⁾를 한도로 함

- 2021년 3월에 도입되어 5월까지 적용되던 제도를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연장 적용함
-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공제의 형태로 제공함

-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임대료 면제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임대인의 임대료 면제는 자발적·확정적이어야 함
- 임차인은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전문적인 활동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소규모 회사 또는 소규모 단체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함
-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2021년 11월 15일까지 과세관청에 합의 서면을 제출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벨기에 -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

- 벨기에 과세관청은 2021년 7월 29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제도를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함¹³⁾
- 공제액은 임대료 면제액의 30%이며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최대 월 5천유로¹⁴⁾를 한도로 하고

[룩셈부르크 - 지방사업세 결손금 이월공제 및 사회보장분담금 소득공제]

-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2021년 8월 10일, 지방사업세(municipal business tax)에 대하여 결손금 이월공제 및 사회보장분담금 소득공제의 적용을

10) 가치 100만유로 이하 시 1%. Citizens Information, "Stamp duty on property,"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housing/owning_a_home/buying_a_home/stamp_duty.html, 검색일자: 2021. 8. 18.

11) 아파트 등 일부 주택은 적용 제외됨

12) 아일랜드 정부, "Minister Donohoe announces Stamp Duty measure for bulk purchasers for homes," Press release, 2021. 5. 18., <https://www.gov.ie/en/press-release/0b75f-minister-donohoe-announces-stamp-duty-measure-for-bulk-purchasers-for-homes/>, 검색일자: 2021. 8. 18.

13)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Clarifies Tax Reduction Requirements for Landlords," 2021. 8.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03_be_1.html, 검색일자: 2021. 8. 19. ;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Réduction d'impôt en cas de renonciation au loyer," <https://finances.belgium.be/fr/Actualites/reduction-impot-renonciation-loyer-06-09-2021>, 검색일자: 2021. 8. 19.

14) 2021년 8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6만원임

15) 2021년 8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71만원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간함¹⁶⁾

- 199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199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결손금은 무기한 이월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기준 연도 이전 17년 동안에 발생한 결손금만 이월공제가 가능함
-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은 지방사업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 사회보장분담금을 익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지방사업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고, 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납부한 사회보장분담금을 다음 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독일 - 2020/2021 조세정책 데이터 보고서 발간]

- 독일 연방재무부가 연방통계청, 연방은행,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원(FIT)과 협력하여 2005~2021년 역대 조세수입에 관한 통계와 2020/2021년도 조세정책을 통한 지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¹⁷⁾

- 보고서는 연방통계청의 특별평가(Sonderauswertungen)와 재정데이터, 세수추계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2020년도 세수는 약 7,280억유로¹⁸⁾였으며, 세수 추계 결과 2025년도 세수는 9천억유로¹⁹⁾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2021년도 상위 10% 소득세 부담자가 총소득세수의 약 55%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도 소득세 최고 세율(Einkommensteuer-Höchstsatz)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약 260만명이었으며 이들이 소득세수의 46%를 납부함
- 2010~2019년 사이 독일 민간가구의 현금자산이 6조 7천억유로²⁰⁾로 약 2조 2천억유로²¹⁾ 증가함

- 제1장은 세수를, 제2~8장은 각각 소득세, 사업체 부과세목, 부가가치세, 상속세, 자동차세, 에너지 전기세, 교회세의 자세한 통계를, 제9장은 사회적 책적 조세법규의 재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음

- 제1장 세수(Steueraufkommen)에서는 역대 항목별 세수와 2017년 10월~ 2021년 10월 임기인 제19기 연방국회에서 제정한 15개 세법의 재정 효과를 보고함

16) IBFD, "Luxembourg Clarifies Application of Loss Carry Forward and Deduction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or Municipal Business Tax," 2021. 8.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11_lu_1.html, 검색일자: 2021. 8. 19.; 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Directs, "Circulaire du directeur des contributions I.C.C. n° 31 du 10 août 2021," <https://impotsdirects.public.lu/dam-assets/fr/legislation/legi21/2021-08-11-ICC-31-du-1082021.pdf>, 검색일자: 2021. 8. 19.

17) 독일 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atensammlung-zur-steuerpolitik-2020-2021.html, 검색일자: 2021. 8. 25.

18)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01조 7,935억원임

19)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38조 4,810억원임

20)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22조 6,070억원임

21)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27조 3,980억원임



- 입법된 15개 세법 중 「항공세법개정법」²²⁾만 연간 약 7억 8,500만유로²³⁾의 세수확대 효과를 보였고 나머지는 세수를 감소시킴
- 제9장에서는 사회정책적 조세법규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그 재정효과를 요약하였음

- 자녀양육자, 기혼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혜택을 포함하는 세법상의 가족정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780억 9,500만유로²⁷⁾에 달하는 재정의 부(-)의 효과를 가져옴
-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진수 연구원>

<표 1> 제19기 연방국회가 제정한 주요 세법의 재정 영향 요약

(단위: 백만유로)

법	단위	연간효과	과세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세법상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이행법 ²⁴⁾ (2019. 12. 21.)	총계	-1,685	-	-425	-630	-1,165	-1,370	-1,420	-
	연방	-1,178	-	-224	-701	-945	-1,038	-1,248	-
	주	-328	-	-192	+98	-118	-201	-35	-
	게마인데	-179	-	-9	-27	-102	-131	-137	-
제1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 ²⁵⁾ (2020. 6. 19.)	총계	-2,730	-	-235	-2,495	-	-	-	-
	연방	-1,437	-	-121	-1,316	-	-	-	-
	주	-1,231	-	-105	-1,126	-	-	-	-
	게마인데	-62	-	-9	-53	-	-	-	-
제2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 ²⁶⁾ (2020. 6. 29.)	총계	-28,500	-	-23,385	-12,840	-5,370	-6,860	-3,085	-
	연방	-13,885	-	-11,463	-6,260	-1,515	-2,289	-1,119	-
	주	-12,259	-	-10,225	-5,396	-1,430	-2,130	-1,044	-
	게마인데	-2,356	-	-1,697	-1,184	-2,425	-2,441	-922	-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에서 발간한 Datensammlung zur Steuerpolitik(조세정책 데이터 보고서) 2020/2021에서 발췌

<표 2> 사회정책적 조세법규의 재정적 영향 요약

(단위: 백만유로)

법령	2021년
A. 사회정책적 근거로 마련된 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39호 일요일, 공휴일, 심야 노동자 보조금에 대한 면세규정 외 4건	-3,745
B. 조세가능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비정상적인 지출부담에 대한 공제규정 외 6건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비정상적인 지출부담: 「소득세법」 제33a조 제1항 친족의 생활 유지와 직업훈련 비용에 대한 공제규정 외 1건	-5,865 -1,085
C. 가족정책적 보상 대책으로 마련된 법령 - 아동수당 및 자녀양육공제의 효과를 내는 다수의 세제정책	-49,240
D. 이분이승법 절차에 대한 법령	-22,990
E. 세액감면에 대한 법령 - 「소득세법」 제35a조 제3항 리모델링, 유지보수 수공업 서비스 비용에 대한 감세규정 외 1건	-2,740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에서 발간한 Datensammlung zur Steuerpolitik(조세정책 데이터 보고서) 2020/2021에서 발췌

22) 「항공세법개정법」, Gesetz zur Änderung des Luftverkehrssteuergesetzes vom 12. Dezember 2019 (BGBl. I, 2019, Nr. 48, S. 2492 ff.)

23)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803억원임

24) 「세법상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이행법」, Gesetz zur Umsetzung des Klimaschutzprogramms 2030 im Steuerrecht vom 21. Dezember 2019 (BGBl. I, 2019, Nr. 52, S. 2886 ff.)

25) 「제1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 Gesetz zur Umsetzung steuerlicher Hilfsmaßnahmen zur Bewätigung der Corona-Krise (Corona-Steuerhilfegesetz) vom 19. Juni 2020 (BGBl. I, 2020, Nr. 30, S. 1385 ff.)

26) 「제2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 Zweites Gesetz zur Umsetzung steuerlicher Hilfsmaßnahmen zur Bewätigung der Corona-Krise (Zweites Corona-Steuerhilfegesetz) vom 29. Juni 2020 (BGBl. I, 2020, Nr. 31, S. 1512 ff.)

27) 2021년 8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7조 4,844억원임

[오스트리아 - 치의산업 분야에서 250만유로 규모의 조세포탈 적발]

-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는 2021년 8월 8일 치의산업 분야에서 적발된 7건의 총 250만유로²⁸⁾ 규모 조세포탈행위를 보고하고 치의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예고함²⁹⁾
 - 2020년 1월 ~ 2021년 7월의 기간 동안 86개의 치과와 치의산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됨
 - 그중 2건에서 약 100만유로³⁰⁾의 세금추징이 이루어졌으며, 5건은 현재 조사 중이나 약 1,500만유로³¹⁾의 추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모든 연방주에 소재하는 치의산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으며 정확한 일정은 미정임
- 공급체인 치의산업체가 치과용품과 치과용 보철합금에 대한 계산서를 회사 명의로 익명의 현금판매로 분할 발급함으로써 치과가 현금 구입분을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키도록 하고 치의산업체와 치과 모두 매출을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게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진수 연구원>

[스위스 - 자본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스위스에서는 오는 2021년 9월 26일 직접민주제 도입 국민발안제도³²⁾를 통하여 발의되고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거절된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완화 및 자본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임³³⁾
 - 해당 법안은 99%-Initiative라는 시민협의회가 발의하였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소득은 세금계산 시 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를 통한 추가 세입은 낮은 또는 중간 수준의 근로소득을 가진 국민을 지원하는 데 쓰이거나 복지정책을 위해 쓰여 국민적 결속력을 고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임
 - 국회에서 거절된 국민제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채택 여부가 정해지며, 채택된다면 99%-Initiative와 국회의 조율하에 자본소득의 개념, 가중치 적용구간, 추가 세수 활용방안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됨
- 스위스 연방국회에서 해당 안을 기각한 이유로는 스위스가 이미 다른 OECD 국가들보다 균등한 소득분포를 가지고 있어 입법의 당위성이 떨어지고

28)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억 3,435만원임

29)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 <https://www.bmf.gv.at/presse/pressemitteilungen/2021/August/steufa-dentalbereich.html>, 검색일자: 2021. 8. 19.

30)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7,374만원임

31)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6억 610만원임

32) 원어: Volksinitiative,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상원에 제출하면 연방하원에서 찬반을 결정하는 제도임. 연방하원에서는 국민발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대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입법 여부가 최종 결정됨

33) 스위스 연방재무부, <https://www.efd.admin.ch/efd/de/home/das-efd/gesetzgebung/abstimmungen/99-prozent/99-prozent-dossier.html>, 검색일자: 2021. 8. 19.



<표 3> 자본소득세율 인상안의 기대효과 예시

(단위: 프랑)

구분	현행 과세소득 (일괄 100%)	국민제한 과세소득 (차등 적용)
노동소득(봉급 등) 15만프랑 ³⁴⁾ 에 대하여	150,000프랑	150,000프랑
자본소득 (이자 또는 임대료) 15만프랑에 대하여	150,000프랑	175,000프랑 ³⁵⁾ (100,000*100% + 50,000*150% = 175,000)

주: 가중치 적용구간을 10만프랑 이상으로 설정했을 경우임

출처: 스위스 연방재무부, <https://www.efd.admin.ch/efd/de/home/das-efd/gesetzgebung/abstimmungen/99-prozent/99-prozent-dossier.html>, 검색일자: 2021. 8. 26.

해당 법안은 오히려 스위스의 금융강국 입지 약화 및 국민의 저축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점을 들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진수 연구원>

[스페인 -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세항목 개정]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7월 10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항목의 내용을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관보로 게재함^{36), 37)}

- 해당 법령은 Law 11/2021로 공표되었으며, EU

의 조세회피방지 지침(ATAD-Directive 2016/1164(2016))을 국내 법제화하는 데 중점을 둠

- 주요 개정 조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 그리고 조세통칙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38), 39)}
- 고정사업장(PE)에서 파생되는 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ATAD의 제7조와 제8조를 구현하기 위해 특정외국법인(CFC) 규칙을 개정
 - 특정외국법인(CFC)의 범위는 자본, 지분, 수익 또는 의결권의 50% 이상을 스페인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CIT)가 스페인에서 납부할 세금의 75% 미만인 경우로 한함
 - 고정사업장(PE) 소득을 포함하도록 특정외국법인(CFC) 규칙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스페인 국내법에 의해 제공되던 세금면제를 제외함
- EU 회원국 또는 EEA 협정 국가로 이전된 자산에 대한 세금 유예를 5년으로 제한하는 ATAD 제5조를 구현하여 출국세(Exit tax) 제도를 개정
- 현재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알려진 조세 피난처의 개념을 확장

34)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766만원임

35)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2,341만원임

36) IBFD, "Spain Heavily Modifies Various Taxes To Prevent and Fight Tax Fraud," 2021.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21_es_1.html, 검색일자: 2021. 8. 17.

37) 스페인 정부, "Ley 11/2021," <https://www.boe.es/boe/dias/2021/07/10/pdfs/BOE-A-2021-11473.pdf>, 2021. 7. 10., 검색일자: 2021. 8. 18.

38) IBFD, "Corporate Income Tax: Spain Implements ATAD's Exit Tax and CFC Rules As Part Of Measures To Prevent and Fight Tax Fraud," 2021.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7-21_es_2, 검색일자: 2021. 8. 17.

39) IBFD, "General Tax Legislation: Spain Imposes New Information Obligation on Crypto Holders As Part Of Measures to Prevent and Fight Tax Fraud," 2021.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7-21_es_5, 검색일자: 2021. 8. 17.

-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이란, 조세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또는 세금이 낮거나 없는 지역을 뜻함
- 부동산 투자신탁 법인(SOCIMI 또는 REIC)의 미분배 이익에 대해 15%의 특별세를 도입
 - 미분배 이익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지 않거나 재투자되지 않는 경우 특별세를 적용하도록 함
-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새로운 등록의무 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 스페인 및 해외에서 암호화폐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는 스페인 중앙은행(Banco de España)에 등록해야 하며 신규고객 식별과 정보 보존 및 업데이트 등의 의무를 지님⁴⁰⁾
 - 등록의무 기업은 암호화폐를 스페인 통화로 교환하는 서비스업체, 암호화폐 지갑 관리인 및 암호화폐 투자 펀드 관리 기업등임
 - 공개되는 거래정보는 암호화폐의 취득, 전송, 교환, 양도, 수집 및 징수 등 거래에 참여한 자와 양도된 암호화폐의 종류 및 수량, 거래가격 및 날짜 등으로 구성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그리스 - 개인소득세의 감면기한 연장]

- 그리스 정부는 2021년 8월 3일, 2020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일괄 납부하는 개인에게 3%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감면혜택을 연장하기로 함^{41),42)}
- 기존 2021년 7월 30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3%의 개인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1년 8월 27일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31일까지 일괄납부를 해야 함

- 개인소득세 신고서는 2021년 9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2021년 7월과 8월분의 분할납부는 2021년 9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포르투갈 -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연기]

- 포르투갈 정부는 2021년 7월 27일,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을 연기함^{43),44)}

40) mobbeel, "Cryptocurrencies have to comply with AML requirements in Spain," 2021. 6. 16., <https://www.mobbeel.com/en/blog/cryptocurrencies-have-to-comply-with-aml-requirements-in-spain/>, 검색일자: 2021. 9. 3.

41) IBFD, "COVID-19 Pandemic: Greece Grants 3% Reduction in Tax Due in Certain Cases," 2021. 8.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11_gr_2.html, 검색일자: 2021. 8. 17.

42) 그리스 재무부, "Παρατείνεται η προθεσμία υποβολής των φορολογικών δηλώσεων έως τις 10 Σεπτεμβρίου," [https://www.minfin.gr/web/guest/graphieio-typou/-/asset_publisher/coBUZhPGE9t9/content/parateinetai-e-prothesmia-yποboles-ton-phorologikon-deloseon-eos-tis-10-septembriou-2021?inheritRedirect=false&redirect=https%3A%2F%2Fwww.minfin.gr%2Fweb%2Fguest%2Fgraphieio-typou%3Fp_id%3D101_INSTANCE_coBUZhPGE9t9%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https://www.minfin.gr/web/guest/graphieio-typou/-/asset_publisher/coBUZhPGE9t9/content/parateinetai-e-prothesmia-yपोboles-ton-phorologikon-deloseon-eos-tis-10-septembriou-2021?inheritRedirect=false&redirect=https%3A%2F%2Fwww.minfin.gr%2Fweb%2Fguest%2Fgraphieio-typou%3Fp_id%3D101_INSTANCE_coBUZhPGE9t9%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 검색일자: 2021. 8. 17.

43)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Postpones VAT Filing Deadlines," 2021. 8.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04_pt_1.html, 검색일자: 2021. 8. 17.

44) 포르투갈 정부, "DESPACHO N.º 260 /2021-XXII," 2021. 7. 27., 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pt/informacao_fiscal/legislacao/Despachos_SEAF/Documents/Despacho_SEAAF_260_2021.pdf, 검색일자: 2021. 8. 17.



- 해당 조치는 Order no. 260/2021-XXII으로 관보에 게재됨

■ 부가가치세 월별 납부제도와 분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각각 10일 및 5일씩 신고 마감일이 연장됨

- 부가가치세 월별 납부제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신고는 각각 9월부터 12월의 20일까지 접수해야 함
 - 기존에는 각 월의 10일까지 접수해야만 했음
- 부가가치세 분기별 납부제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021년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년 11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함
 - 기존에는 2021년 11월 15일까지 접수해야만 했음

■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은 해당 신고 마감일이 속하는 달의 25일로 연기되었음

- 부가가치세 월별납부제도는 매월 15일이 납부기한이며 분기별 납부제도는 해당 월의 20일이 납부기한이었으나 제도별로 각각 10일과 5일 연장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핀란드 - 2022년 예산안 발표]

■ 핀란드 재무부는 2021년 8월 13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을 완화

하고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⁴⁵⁾

- 법인세 이자비용공제 한도 폐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비세 인상 등과 관련된 개정 방향을 발표함
- 개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세부사항은 2021년 9월에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임

■ (법인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이자비용공제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추후에 공표될 예정임

- 일반적 이자비용은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의 25%까지 공제 가능함⁴⁶⁾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및 비용공제 한도 조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세율 적용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추후에 공표될 예정임
- 일반 가사 서비스, 간호 및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60%로 인상하고, 공제 한도 역시 기존 2,250유로⁴⁷⁾에서 3,500유로⁴⁸⁾로 인상함
 - 해당 조치는 최대 2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석유난방을 친환경 난방으로 대체하는 개조 공사와 관련된 인건

45) News IBFD,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Budget Proposal for 2022 with Measures in Line with Expectations" 2021. 8.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13_fi_1.html, 검색일자: 2021. 8. 16.

46) Finland - Corporate Taxation sec. 7.3, Country Tax Guides IBFD, 2021. 8. 24.

47)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8만원임

48)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80만원임

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예정임

-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축소하고, 2023년에는 폐지할 예정임
 - 현재 이자비용의 10%가 공제 가능하며, 2022년에는 5%로 축소할 계획임
- 하이브리드 회사 차량의 과세가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의 친환경 회사 차량의 과세가격이 월 85유로⁴⁹⁾ 감소될 예정임

- (소비세) 담배와 관련된 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추후에 공표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 이미현 세무사>

[네덜란드 - 양도소득세 세제혜택과 관련된 Q&A 법령 발표]

-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7월 23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및 2% 저세율 적용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질의응답 형태의 법령을 발표함^{50), 51)}
 - 청장년층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구매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법안이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추가된 지침은 2021년 1월 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음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 구매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2011년부터 개인 주택 구매자의 양도소득세에 2%의 저세율이 적용됨

- 나이 요건: 18세부터 35세 사이
- 취득 요건: 생애 첫 주택 구입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40만유로⁵²⁾ 이하여야 함(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취득가액의 제한이 없음)

- 네덜란드 정부는 45개의 다양한 예시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예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도소득세 감면 및 2%의 세율 적용을 위해, 본인 주거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공증서가 필요함
- 공동 소유일 경우, 전체 주택가액이 40만유로를 초과하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40만유로 이하이더라도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일부는 거주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 세율이 아닌 8%의 세율이 적용됨
- 실질적 취득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한 구매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

49)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만원임

50) News IBFD, "Government Publishes Q&A Decree on One-off Transfer Tax Exemption, Reduced 2% Rate," 2021. 7.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23_n1_1.html, 검색일자: 2021. 8. 13.

51) 네덜란드 정부,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stort-2021-36308.html>, 검색일자: 2021. 8. 19.

52) 2021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5천만원임



- 해당 조항은 주택을 취득할 때만 적용되므로, 단순 토지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인도네시아 -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확대 및 연장]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매상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발표함⁵³⁾

- 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매공간의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정부가 부담함을 발표함

- 해당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은 2021년 8~10월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로 함

- 해당 세제 인센티브는 독립형 상점 및 아울렛과 쇼핑센터, 쇼핑단지, 아파트, 호텔, 병원, 교육 건물, 대중교통 건물, 사무실 건물 및 공공시장에 위치한 상점에 사용할 수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월에 실시하였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연장함⁵⁴⁾

-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월에 실시하였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연장함

- 해당 인센티브는 3월 최초 실시 발표 당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과세기간에 유효하였으나, 해당 연장 조치로 2021년 12월까지 유효함

- 해당 인센티브는 신규 주택 및 아파트 취득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2억루피아⁵⁵⁾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판매가격의 VAT는 전액, 2억루피아에서 5억루피아⁵⁶⁾ 사이의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가격의 VAT은 50%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⁵⁷⁾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중국 - 주거용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발표]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7월 15일, 주거용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포함된 회람(Circular) [2021] No. 24을 발표함⁵⁸⁾

53)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Announces VAT Incentive on Leased Spaces for Retail Trad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04_id_2.html 검색일자: 2021. 8. 17.

54) IBFD, "COVID-19 Pandemic: Indonesia Extends VAT Incentive for New Residential Proper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8-13_id_1.html 검색일자: 2021. 8. 17.

55) 2021년 8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642만원임

56) 2021년 8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4,105만원임

5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3월호, 2021, "인도네시아 - 부동산 및 자동차 부문 등의 구입에 관한 조세혜택 실시"

58) IBFD, "China Announces Tax Incentives To Stimulate Rental Market for Residential Proper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29_cn_1.html, 검색일자: 2021. 8. 16.

- 2021년 10월 1일부터 개인에게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중국 증치세의 일반납세자 및 소규모 납세자⁵⁹⁾는 총임대수익에 대해 1.5%의 징수율⁶⁰⁾을 적용함
- 또한 동 납세자의 방산세⁶¹⁾ 적용 세율을 기존 12%에서 4%로 8%p 인하함
 - 방산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임대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함
- 납세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주택 도시농촌건설부(Ministry of Urban and Rural Residential Property Construction)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 신고 시 적격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치울 연구원>

[호주 - 라이프스타일 자산(Lifestyle assets) 세무조사]

■ 호주 국세청은 2021년 7월 14일, 고가(高價)의 라이프스타일 자산 세무조사 계획을 공지함⁶²⁾

- 항목별 자산가치가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 자산으로 분류되며, 보험사의 2020회기부터 2022회기까지의 보험가입 정보를 통해 식별됨
 - 항공기 15만호주달러⁶³⁾
 - 선박 및 미술품 10만호주달러⁶⁴⁾
 - 자동차 및 순종 말 6만 5천호주달러⁶⁵⁾
- 주요 점검항목은 아래를 포함함
 - 신고한 소득이 해당 자산 구매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가
 - 신고하지 않은 자산 처분이 있는가
 -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Tax Notes 기사에 따르면, 특정 자산가치가 급등하였을 때, 이를 담보로 다른 자산을 구매함으로써 평가이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 성격이 있다고 함⁶⁶⁾
- 동 조치는 2016년 2월 최초 시행되었고, 2013 회기 이후의 관련 보험 거래에서 식별된 자산

59) 증치세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 또는 제공할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이며, 중국의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하는데 연간 매출액 규모가 500만원인 이하(월 매출액 약 41만 6천위안 이하)일 경우 소규모 납세자로 분류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4월호, 2021. 4. 9., “중국 -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초안 발표,”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21654Zv9_0&rs=/viewer/result/kiTrend/202104///, 검색일자: 2021. 8. 16).

60)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징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적용되는 일반세율과 구분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 2009, pp. 180-186).

61) 방산세란, 건축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건축물 가격이나 건축물의 임대료 수입을 징수 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는 중국 내의 도시, 현 소재지에 있는 징수범위 내의 건축물을 소유한 단위나 개인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 2009, pp. 255-258).

62) 호주 국세청, “Lifestyle Assets 2013-14 to 2022-23 data-matching program protocol,” <https://www.ato.gov.au/General/Gen/Lifestyle-Assets-2013-14-to-2022-23-data-matching-program-protocol/>, 검색일자: 2021. 8. 18.

63) 2021년 8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천만원임

64) 2021년 8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천 400만원임

65) 2021년 8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천 500만원임

66) Tax Notes International, “Australia Examines Insurance Data For ‘Lifestyle assets’ Reviews,” Volume 103, 2021. 8. 9., p. 745



항목들이 조사되어 왔으며, 호주 국세청은 금
번 계획과 관련하여 연간 약 30만건의 데이터
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뉴질랜드 - 결제정보 기반 사업소득 검증 강화]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1년 7월 6일, 지급결제 정
보에 기반한 사업소득 신고 검증 강화 초안을 공
개하였음⁶⁷⁾

● 동 초안이 시행될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 회사는
지급결제 정보를 분기별로 뉴질랜드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함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05년 이후 필요시마다
관련 정보를 관련 법령 및 요청에 기반하여 수
집하여 왔으며, 금번 초안은 이를 정례화하고
자 하는 취지임

● 해당 지급결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며, 고객정
보는 수집되지 않음

- 포함 정보: 가맹점 식별정보, 상호명, 위치, 연
락처, 월 결제액, 은행계좌 외

●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제시한 활용유형의 세 가

지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예시1) 신규 사업체의 매출 추이를 모니터링
하여, 기준금액 초과 예상 시 각종 세무 이행사
항에 대해 안내

- (예시2) 현금결제 비중을 업종별로 산출한 후,
업종 대비 비정상 패턴을 보이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예시3) 회사 주소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해, 동
일인이 법인을 복수로 설립하여 인적 공제혜
택을 중복으로 받았는지 조사

● 동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1년 8월
20일이며,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음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EU -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법안 제출]

■ 2021년 7월 20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EU의 자금세
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4개의 입법 제안 패키지를 제출함⁶⁸⁾

● 새로운 EU 자금세탁방지 기관(AML Authority)
을 설립함

67) 뉴질랜드 국세청, "Regular dataset collection from payment service providers," Tax Policy, 2021. 7. 6., <https://taxpolicy.ird.govt.nz/publications/2021/2021-dd-regular-dataset-collection>, 검색일자: 2021. 8. 18.

68) 유럽 집행위원회,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legislative package," 2021. 7. 20.,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210720-anti-money-laundering-countering-financing-terrorism_en#amla, 검색일자: 2021. 8. 13.; 유럽 집행위원회, "Beating financial crime: Commission overhauls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rules," 2021. 7. 2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3690, 검색일자: 2021. 8. 13.; IBFD,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New Anti-Money Laundering Rules," 2021. 7.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7-22_e2_1.html, 검색일자: 2021. 8. 13.

- EU의 AML/CFT 감독을 혁신하고, 금융정보 분석기구(FIU)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EU 기관을 설립하여 각 회원국에서 관련 EU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함
 - AML/CF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함
 - 고객확인 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분야를 포함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신설함
 - EU 전역에서의 현금 지급 한도를 최대 1만유로⁶⁹⁾로 제한함
 - 기존의 자금이체에 관한 2015년 규정(Regulation 2015/847/EU)을 개정하여 암호화된 자산의 이체를 추적할 수 있게 함
 - AML/CFT에 관한 기존 지침인 Directive 2015/849/EU는 폐지하며, 새로운 지침⁷⁰⁾으로 대체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운 연구원>

69)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69만원임

70) 유럽 집행위원회,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echanisms to be put in place by the Member States for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and repealing Directive (EU) 2015/849," 2021. 7. 20., https://ec.europa.eu/finance/docs/law/210720-proposal-amld6_en.pdf, 검색일자: 2021. 9. 3.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유럽중앙은행(ECB),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을 통해 물가 목표 변경(2021. 7. 26.)¹⁾
 - (물가 목표) 기존 ‘중기적으로 2%에 근접하지만 이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중기적으로 2%로 설정하고, 이를 상·하방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칭적(symmetric)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
 - 목표를 2%로 명시하여 물가안정 유지에 필수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유도
 - (물가 지표)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가 물가안정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여전히 적절한 지표로 판단되나,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시적으로 주택 원가 추정치(initial estimates)를 보완 지표로 활용할 예정

- EU 통계청, 2021년 7월 유로지역 및 EU 물가 상승률(HICP²⁾) 발표(2021. 8. 18.)³⁾
 - (유로지역) 2021년 7월 유로지역⁴⁾의 물가 상승률은 2.2%로 6월 1.9%에 비해 0.3%p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1.8%p 상승함
 - (EU) 2021년 7월 EU의 물가 상승률은 2.5%로 6월 2.2%에 비해 0.3%p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1.6%p 상승함
 - (국가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국가순은 몰타(0.3%), 그리스(0.7%), 이탈리아(1.0%)이고, 가장 높은 국가순은 에스토니아(4.9%), 폴란드와 헝가리(각각 4.7%)
 - 전월과 비교하여 연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국가는 9개 국가이고, 2개국은 변동이 없었으며, 16개 국가에서는 상승함
- EU 집행위, 코로나19 회복·복구수단*을 통해 프랑스에 사전 자금 첫 지출(51억유로) (2021. 8. 19.)^{5), 6)}
 - (개요) 지난 2020년 7월 17~21일 코로나19로 인

* 회복·복구수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은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 2026년까지 EU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 에 재정 지원을 제공

1) 유럽중앙은행, "The ECB's monetary policy strategy statement," 2021. 7. 26., https://www.ecb.europa.eu/home/search/review/html/ecb_strategyreview_monpol_strategy_statement.en.html

2)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로지역 HICP는 유로를 채택한 회원국들의 물가지수 가중 평균임

3) EU 통계청, "Annual inflation up to 2.2% in the euro area. Up to 2.5% in the EU," 2021. 8. 16.,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1563239/2-18082021-AP-EN.pdf/4488fc81-7b31-d682-2087-b7e597c07416?t=1629276661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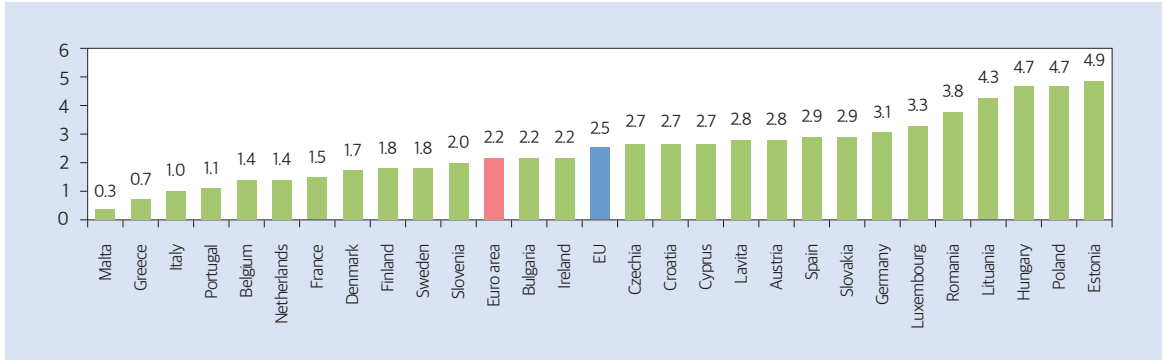
4) 유로지역: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 EU: 유로지역 국가들에서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크로아티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이 포함됨

5) EU 집행위, "NextGenerationEU: European Commission disburses €5.1 billion in pre-financing to France," 2021. 8. 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4225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4월호, 2021, pp. 2~6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443>

[그림 1] 2021년 7월 EU 물가 상승률(HICP, Annual Inflation Rates)

(단위: %)



출처: 유로 통계청, "Annual inflation up to 2.2% in the euro area," 2021. 8. 18.,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1563239/2-18082021-AP-EN.pdf/4488fc81-7b31-d682-2087-b7e597c07416?t=1629276661823>

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U 정상 회의에서 합의된 7,500억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 "Next Generation EU"의 주요 정책 수단 -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도록 함

- (국가별 지원규모) 지원은 EU 27개국 총 3,380억 유로이고, 국가별 상한은 프랑스 394억유로, 이탈리아 689억유로, 스페인 695억유로 순으로 많고, 키프로스·에스토니아·아일랜드 각각 10억유로, 몰타 3억유로, 룩셈부르크 1억유로 순으로 적음⁷⁾ - 국가별 지원금 상한은 EU 집행위의 2020년 가

을 경제전망의 2020년과 2021년 실질GDP를 기준으로 책정

- (지원규모) 프랑스는 회복·복구수단을 통해 보조금의 형태로 총 394억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동 할당액의 13%에 해당되는 51억유로를 사전 지원하여 프랑스의 회복·복구계획의 투자와 개혁 조치의 이행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
- (프랑스 투자 계획⁸⁾) 프랑스의 회복·복구수단 계획은 건물 리노베이션, 친환경 모빌리티 지원 등의 '녹색 전환'에 지원금의 46%, 초고속 광대역 통신 범위 확대와 eHealth 서비스 출시 지원 등의 '디지털 전환'에 지원금의 21%를 배정함 - (녹색 전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7) EU 집행위,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Maximum grant allocations (current prices)," 검색일자: 2021. 8. 30.,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about_the_european_commission/eu_budget/recovery_and_resilience_facility_.pdf

8) EU 집행위, "NextGenerationEU: European Commission endorses France's €39.4 billio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2021. 6. 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3153; EU 집행위, "Factsheet: France's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2021., https://ec.europa.eu/info/files/factsheet-frances-recovery-and-resilience-plan_en;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lan national de relance et de résilience 2021," 2021. 4. 29., <https://www.tresor.economie.gouv.fr/Articles/2021/04/29/presentation-du-plan-national-de-relance-et-de-resilience-2021>



대규모 리노베이션(개보수) 프로그램을 재정비에 58억유로를 투자하고, 탈탄소화⁹⁾를 위한 수소 가치사슬(value chains) 개발에 19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디지털 전환 지원)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3억 8,500만유로를 지원하고, 공공행정 디지털화에 5억유로를 지원하여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근무 환경의 질을 개선할 예정
-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의료 인프라 등과 청년 일자리 및 훈련 지원, 공공지출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지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환영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감과 강력한 정책 지원이 미국 경제를 강력한 기반 위에 놓았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켰다고 평가

- 이사회는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공공부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2021. 7. 27.)¹²⁾

- 세계 경제는 지난 전망(2021년 4월) 이후 국가별로 회복세가 더욱 다변화되면서 2021년 6.0%, 2022년 4.9% 성장할 전망
-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2021년 일시 변동 후 2022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전망의 위험은 하방 위험이 우세
- 회복 격차를 줄이고 세계 성장 전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핵심적임
- 국가 차원의 정책은 지난 보고서¹³⁾에서 제시한 팬데믹 단계별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함



IMF

■ IMF, 미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1. 7. 22.)^{10), 11)}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간 감시 활동

- 미국은 2020년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2021년 강한 성장을 보일 전망
- IMF 이사회는 최근 미국의 팬데믹 통제 노력을

9)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함

10)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2021. 7. 22.,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7/22/pr21224-united-states-imf-executive-board-concludes-2021-article-iv-consulta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1/07/22/United-States-2021-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462540>

11) 협의단 결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7월호, 2021을 참고 바람

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1, 2021. 7. 27.,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1/Update/July/English/text.aspx>,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07/27/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21>

13)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2021 No.2]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2021을 참고 바람

■ IMF, 재정감시보고서 업데이트(Fiscal Monitor Update) 발표(2021. 7. 27.)¹⁴⁾

- 세계 팬데믹 대응 재정 조치는 2021년 7월 초까지 약 16조 5천억달러로 추산되며, 지난 보고서(2021년 4월) 이후 소득그룹 간 정책 대응규모가 더욱 확대됨
- 2021년 세계 재정적자는 GDP 대비 8.8%, 총채무는 98.8%를 기록할 전망
- 신뢰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하에서 소득그룹별 상황에 맞춘 조치가 필요

익이 되고, 준비자산에 대한 장기 글로벌 수요를 해결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글로벌 경제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환영

- 총재는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취약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8월 23일 신규 배분이 발효됨
 - 우리나라는 쿼터(quota)¹⁷⁾ 비중 1.80%에 해당하는 82억 2,610만SDR(약 117억달러)를 배분받아 누적 배분액이 24억SDR에서 106억SDR로 증가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선임연구원>

■ IMF 총회, 특별인출권* 신규 배분 승인(2021. 8. 2.; 8. 23.)¹⁵⁾

*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은 IMF의 준비자산이자 IMF 등 국제기구의 회계 단위로,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스텔링 통화로 구성됨. 국가별 배분액 대비 초과/미달 보유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부과

- 7월 9일 이사회가 6,500억달러(약 4,560억SDR) 특별인출권 신규 배분을 승인¹⁶⁾한 데 이어 8월 2일 총회가 이를 승인
- 이에 대해 총재는 SDR 배분이 모든 회원국에 이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21” 발표(2021. 7. 9.)^{18), 19), 20)}

- 각 국가들의 정부 운영 및 주요 성과에 대한 국제적 비교 분석, 데이터를 제공함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1*, 2021. 7. 27., Box 2.,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1/Update/July/English/text.aspx>, IMF는 통상 연 2회(4월, 10월) 재정감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지난 1월에는 업데이트 보고서를, 이번에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부록에 업데이트를 발표

15) IMF, “IMF Governors Approve a Historic US\$650 Billion SDR Allocation of Special Drawing Rights,” 2021. 8. 2.,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7/30/pr21235-imf-governors-approve-a-historic-us-650-billion-sdr-allocation-of-special-drawing-rights>; IMF, “IMF Managing Director Announces the US\$650 billion SDR Allocation Comes into Effect,” 2021. 8. 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8/23/pr21248-imf-managing-director-announces-the-us-650-billion-sdr-allocation-comes-into-effect>; IMF, SDR Allocations, <https://www.imf.org/en/Topics/special-drawing-right/-/media/Files/Topics/SDR/sdr-allocations.aspx>, 검색일자: 2021. 8. 24.

16)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7월호, 2021을 참고 바람

17) 회원국의 출자금 또는 지분

18) OECD, https://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21_1c258f55-en

19)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7/view.do?seq=2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 OECD는 각 회원국의 주요 정부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국제적 비교 분석과 데이터 제공을 위해 「한눈에 보는 정부보고서(Government at a glance)」를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음



- 공공재정과 경제, 공공고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복원력 강화, 예산, 디지털 정부 등 14개 분야로 분석²¹⁾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복원력 강화)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위기 극복 및 사회적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역량 강화가 필요
 - (재정)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정부 대응으로 공공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을 감소시킴
 -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 3.2%에서 2020년 5% 이상(OECD 18개국)으로 나타남
 - 정부부채 수준도 증가하여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총부채(OECD 22개국)는 2019년 97%에서 2020년 115%로 증가
 - 공공지출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OECD 국가 평균 사회보장 지출은 GDP 대비 13.3%, 의료서비스 지출은 GDP 대비 7.9%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2019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의 +0.9%(OECD 평균 GDP의 -3.2%), 2019년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의 42%(OECD 평균 GDP의 109%)임

- (고용) 정부 공공고용과 리더십 직위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19년 OECD 국가의 공공부문 내 여성인력은 평균 58%이며 총고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 45%보다 높은 수준임
 -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중은 31.6%, 여성장관 비중은 34% 수준임
 - 한국의 경우 2019년 일반정부고용은 총고용 대비 8.1%, 공공부문 내 여성 비중은 45% 수준으로 나타남
- (정부 신뢰 및 공공서비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가 중이며,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음
 - 2020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평균 51%, 한국 45%이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평균 49%, 한국 56%로 나타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의회 하원, 2022 회계연도 9개 세출분야 예산법안(H.R. 4502) 통과 의결(2021. 7. 28.~29.)^{22), 23), 24)}

21)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 및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보고서 요약본 내용 참고

22)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seven-bill-appropriations-package>

23) <https://appropriations.house.gov/legislation>

24) <https://appropriations.house.gov/hr-4502-amendment-tracker>

- (개요) 총 9개의 세출예산법안 중 7개의 법안 (① 농업, ② 에너지·수자원, ③ 재무·일반정부, ④ 내무·환경, ⑤ 군사·재향군인, ⑥ 교통·주택·도시개발, ⑦ 노동·보건·교육)은 개별 세출법안들이 하나의 법안 패키지로 통합되어 하원을 통과(219:209)함²⁵⁾
 - 나머지 2개의 법안(① 국무부·외교,²⁶⁾ ② 입법부²⁷⁾)은 개별 법안²⁸⁾으로 하원을 통과함
 - * (법안 표결) 국무부·외교 분야 법안(217:212) / 입법부 분야 법안(215:207)
 - 따라서 하원의 총 12개 세출예산 분야 중 하원을 통과하지 않은 분야(8. 25. 기준)는 총 3개 분야²⁹⁾(① 국방, ② 국토안보, ③ 통상·사법·과학)임
- (농업³⁰⁾) 총규모 265억달러, 전년 대비 12%(28억 5천만달러) 증가
- (에너지·수자원³¹⁾) 총규모 532억달러, 전년 대비 2.8%(14억 7천만달러) 증가
 - 140억달러 규모 이상의 클린 에너지/과학 분야 투자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폭풍·기근에

- 대비한 수자원 인프라 재건
 - (재무·일반정부³²⁾) 총규모 291억달러, 전년 대비 19.8%(48억달러) 증가
 - (내무·환경³³⁾) 총규모 434억달러, 전년 대비 20.2%(73억달러) 증가
 - 연안 풍력(off-shore wind) 등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민간 기후 지원단(civilian climate corps) 창설 등을 통해 기후 환경 분야 단속 확대
 - (군사·재향군인³⁴⁾) 총규모 2,799억달러, 전년 대비 10%(281억달러) 증가
 - (교통·주택·도시개발³⁵⁾) 총규모 841억달러, 전년 대비 11%(87억달러) 증가
 - (노동·보건·교육³⁶⁾) 총규모 2,538억달러, 전년 대비 28%(552억달러) 증가
 - (국무부·외교³⁷⁾) 총규모 622억달러, 전년 대비 12.1%(67억달러) 증가
 - (입법부³⁸⁾) 총규모 48억달러, 전년 대비 13.8%(약 6억달러) 증가

25) 농업(H.R. 4356), 에너지·수자원(H.R. 4549), 재무·일반정부(H.R. 4345), 내무·환경(H.R. 4372), 군사·재향군인(H.R. 4355), 교통·주택·도시개발(H.R. 4550), 노동·보건·교육(H.R. 4502)

26)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fiscal-year-2022-state-foreign-operations-and-related-programs>

27)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fiscal-year-2022-legislative-branch-funding-bill>

28) 국무부 외교(H.R. 4373), 입법부(H.R. 4346)

29) 국방(Defense),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통상·사법·과학(Commerce, Justice and Science)

30)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31)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and Related Agencies

32) 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33) Interior, Environment, and Related Agencies

34) Military Construction, Veterans Affairs, and Related Agencies

35) Transportation, an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nd Related Agencies

36)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37)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38) Legislative Branch



■ 의회, 1월 6일 의사당 난입 관련 추경세출예산안 (H.R. 3237) 통과 의결(2021. 7. 29.)^{39), 40), 41)}

- (배경) 의회 하원은 지난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및 의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약 19억 달러⁴²⁾ 규모(CBO 추산)의 긴급 안보 추경 세출 예산법안*을 가결(5. 20.)하였음

* Emergency Security Supplemental to Respond to January 6th Appropriations Act, 2021

- (총규모) 하원 통과 이후, 상원의 수정을 거쳐 확정된 동 법안의 지출규모는 약 30억달러⁴³⁾ 규모로 상향 조정됨
- (의회 진행 과정) 동 법안은 5월 14일에 하원에서 발의되었으며, 민주당 내에서 3개의 반대표가 나와 1표(213:212) 차이로 하원 통과⁴⁴⁾ 후 상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7월 29일에 상원을 통과하여 다음 날(7. 30.)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 발효됨
- (주요 내용) 보안 체계 관련 업그레이드, 파손시설 수리, 의사당 경찰 지원을 위한 워싱턴 D.C.의

주방위군 소속 긴급대응 팀 설치, 코로나19 관련 의회 대응 비용 등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 동 세출예산은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에서 모든 조항에 대해 긴급지출(emergency requirement)로 규정

■ 미국 연방 채무한도 유예기간 만료(2021. 7. 31.)^{45), 46)}

- (배경) 지난 2019년 8월에 제정된 2019 초당적 예산법(BBA of 2019⁴⁷⁾)은 당시 향후 2개년 동안의 예산 방향 및 연방채무 한도 유예기간(~2021. 7. 31.) 등을 설정함
- (현황) 연방채무 한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의회의 채무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정부 운영은 현재 비상 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총채무한도 적용규모(subject to debt limit)는 약 28조 5천억달러 = 기존에 설정된 채무한도(debt ceiling) 22조달러 + 추가 채무(2021년 6월 30일 기준) 6조 5천억달러⁴⁸⁾

- (비상조치⁴⁹⁾ 현황) 법규에 따라 재무부는 채

39)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emergency-security-supplemental-to-respond-to-january-6th>

40)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senate-passes-security-supplemental-to-fund-national-guard-capitol-police>

41) 주요 내용 및 의회 진행 과정 내용은 「재정동향」, 5월호, 2021을 참고하여 작성

42) CBO, CBO's Estimate for H.R. 3237, 2021. 5. 17., <https://www.cbo.gov/publication/57228>

43) CBO, CBO's Estimate for Senate Amendment 2123, an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to H.R. 3237, the Emergency Securit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2021. 7. 29., <https://www.cbo.gov/system/files/2021-07/EmergencySecuritySupplementalAppropriationsAct2021.pdf>

44) Courthouse News Service, "House Approved \$1.9 Billion for Capitol Security," 2021. 5. 20. / <https://www.courthousenews.com/house-approves-1-9-billion-for-capitol-security/>

45) 미 재무부,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Debt-Limit-Letter-to-Congress-20210723-Pelosi.pdf>

46) 한국은행(워싱턴주재원), 「동향분석」 미국 정부 부채한도 적용유예 종료, 2021. 8. 1.,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23/view.do?nttlid=10065865&menuNo=200082&pageIndex=1>

47) P.L. 116-37

48) CBO, <https://www.cbo.gov/system/files/2021-07/57152-Federal-Debt-Limit.pdf>

49) 재무부,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Description-of-Extraordinary-Measures-Aug2021.pdf>

권 발행 중단기간(debt issuance suspension period)을 공표(declare)한 후, 공무원 퇴직/장애 인 연금 기금(CSRDF⁵⁰)과 우정국 퇴직 연금 기금(PSSRHB⁵¹) 신규 투자 유예 및 기존 투자금 상황이 가능해짐

- CBO 보고서⁵²에 따르면, 비상 조치 가용 금액은 2022회계연도 1분기(10~11월)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 의회 상원, 인프라 법안(H.R. 3684) 의결(2021. 8. 10.)^{53), 54), 55)}

- (현황) 인프라 계획은 이후 의회와의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세제 및 지출 규모 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는 공식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으로서 상원 통과 후 하원 심의 과정을 남겨 놓은 상태임
- (총규모) 이후 의회의 수차례 협상 과정에서 상원을 통과한 동 인프라 법안규모는 향후 5년간 약 1조달러 규모(신규예산 약 5,500억달러)로 규정하고 있음
- (재원 조달) 미지출된 긴급 완화 정책 자금의 용

<표 1> 미국 상원에서 통과(2021. 8. 10.)된 인프라 법안의 주요 신규 예산 내역

(단위: 억달러)

구분	규모
도로/다리(Roads and Bridges)	1,110
대중교통(Public Transit)	390
기차/철로(Passenger/Freight Rail)	660
전기차(Electric Vehicles)	75
인터넷 액세스(Internet Access)	650
전력 그리드 현대화 (Modernizing the Electric Grid)	650
공항(Airports)	250
상수도 기반시설 (Water and wastewater infra ⁵⁶)	550

출처: <https://www.fox29.com/news/infrastructure-bill-2021-whats-in-the-1-trillion-bipartisan-plan>

도 변경, 가상화폐 징수 행정 강화 및 기타 동 법안의 투자로 인한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 등

■ 미 의회 상원, 휴먼 인프라 법안 및 FY2022 재정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S.Con.Res. 14) 통과 의결^{57), 58), 59)}(2021. 8. 10.) → 이후 하원에서 단독 하원결의안(H.Res. 601) 도입 의결(2021. 8. 24.)⁶⁰⁾

50) CSRDF: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51) PSSRHB: Postal Service Retiree Health Benefits Fund

52)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7152>

53) National Public Radio, <https://www.npr.org/2021/08/10/1026081880/senate-passes-bipartisan-infrastructure-bill>

54) CNBC, <https://www.cnbc.com/2021/08/10/senate-to-pass-bipartisan-infrastructure-bill.html>

55)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8/02/updated-fact-sheet-bipartisan-infrastructure-investment-and-jobs-act/>

56) Fox29, <https://www.fox29.com/news/infrastructure-bill-2021-whats-in-the-1-trillion-bipartisan-plan>

57) 의회 상원 예산위원회, <https://www.budget.senate.gov/imo/media/doc/CPRT-117SPRT45298.pdf>

58) CRFB, <https://www.crfb.org/blogs/senate-budget-resolution-would-allow-175-trillion-borrowing>

59) 의회 상원 예산위원회, <https://www.budget.senate.gov/chairman/newsroom/press/news-senate-budget-chairman-sanders-and-majority-leader-schumer-introduce-historic-budget-resolution>

60) 의회 하원 Daily Press Gallery 공식 계정, <https://twitter.com/HouseDailyPress/status/1430252714907295748>



- (주요 내용⁶¹⁾) 민주당은 예산공동결의안을 통해 휴먼 인프라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 의견 대립이 있는 인프라 법안(H.R. 3684)의 표결은 9월 27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 향후 10년간 1조 7,500억달러의 재정적자 증가가 전망되며, 3조 5천억달러 규모의 법안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의 신규 조세에 대한 제한이 없음(공화당 우려 사항)
- (향후 전망) 상원의 보수 성향 의원들은 휴먼 인프라 법안뿐만 아니라, 물적 인프라 법안에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⁶²⁾
- 특히 공화당은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McCarthy)를 중심으로 지금은 대규모 경제 어젠더보다도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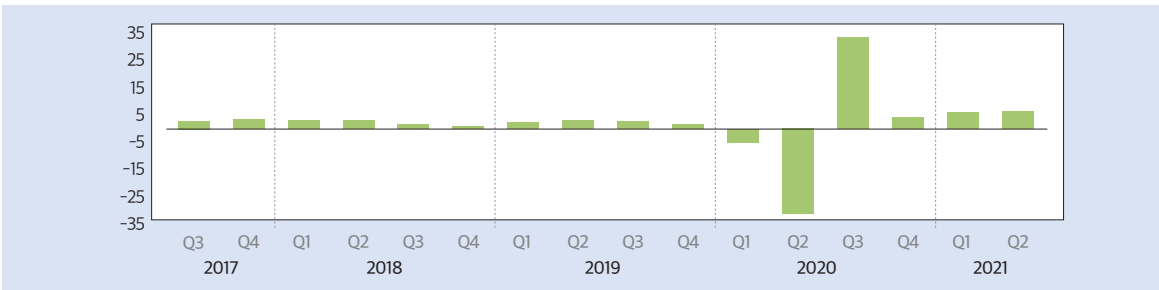
할 때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 따라 법안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⁶³⁾

[기타]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분기 GDP(속보) 발표(2021. 7. 29.)⁶⁴⁾
 - 미국 경제는 2021년 2분기 6.5%(연율, 속보치) 성장하여 2021년 1분기(6.3%)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명목GDP 성장률은 13.0%로 2021년 1분기 성장률(10.9%)보다 증가함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1년 7월 고용통계 발표(2021. 8. 6.)⁶⁵⁾
 - (가계조사) 2021년 7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림 2] 미국 실질GDP 추이

(단위: 전 분기 대비 % 변화, 계절조정, 연율)



출처: BEA, Gross Domestic Product, First Quarter 2021 (Advance Estimate), 2021. 4. 29.

61) Republican Policy Committee(공화당 정책위원회), https://www.rpc.senate.gov/legislative-notice/sconres14_concurrent-resolution-on-the-budget-for-fiscal-year-2022

62) VOA, <https://www.voakorea.com/world/america-now/supreme-court-remain-mexico>

63) CNN, <https://edition.cnn.com/2021/08/24/politics/kevin-mccarthy-white-house-agenda-afghanistan/index.html?form=MY01SV&OCID=MY01SV>

64) BEA,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2021 (Advance Estimate) and Annual Update, 2021. 7. 29., <https://www.bea.gov/news/2021/gross-domestic-product-second-quarter-2021-advance-estimate-and-annual-update>

65)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2021. 8. 6.,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tat.toc.htm>

<표 2> 주요 분야 계절조정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변화)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GDP	-5.1	-31.2	33.8	4.5	6.3	6.5
개인 소비 지출	-6.9	-33.4	41.4	3.4	11.4	11.8
상품	0.3	-10.0	49.5	-0.3	27.4	11.6
서비스	-10.0	-42.4	37.5	5.3	3.9	12.0
총 민간 국내투자	-5.3	-42.4	82.1	24.7	-2.3	-3.5
고정투자	-2.3	-30.4	27.5	17.7	13.0	3.0
비주거	-8.1	-30.3	18.7	12.5	12.9	8.0
주거	20.4	-30.7	59.9	34.4	13.3	-9.8
순수출	-	-	-	-	-	-
수출	-16.3	-59.9	54.5	22.5	-2.9	6.0
수입	-4.8	-65.0	99.0	25.6	-1.4	5.7
정부 소비 지출 및 총투자	3.7	3.9	-2.1	-0.5	4.2	-1.5
연방	2.4	20.6	-5.4	-3.1	11.3	-5.0
주 및 지방	4.4	-5.5	0.1	1.2	-0.1	0.8

출처: BEA,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2021 (Advance Estimate) and Annual Update," 2021. 7. 29.

61.7%, 실업률은 5.4%로 모두 전월 수치(61.6%, 5.9%) 및 전년 수치(61.5%, 10.2%) 대비 개선됨
 - 고용률은 58.4%로 전월까지 지속되던 수준에 비해 0.4%p 증가했고, 전년 대비 3.2%p 증가함
 - 실업자 수는 870만 2천명으로 전월(948만 4천명)보다 감소했고 전년 대비(1,630만 800명) 760만 6천명 감소

- (사업체 조사) 비농업 임금노동자(nonfarm payroll employment)는 1억 4,682만명으로 전월 대비 94만 3천명 증가했고, 2020년 4월 이후 1,670만명 증가함
 - 비농업 민간 임금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전월 대비 11% 증가한 30.54달러로 집계되어, 전년(29.37달러) 대비 약 4.0% 증가

- 미 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록 공개(2021. 8. 18.)⁶⁶⁾

<표 3> 미국 가계조사 지표

(단위: 천명, 계절 조정)

구분	2019년 7월	2020년 7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생산가능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	259,225	260,373	261,210	261,338	261,469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	163,373	160,085	160,935	161,086	161,347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 %)	63.0	61.5	61.6	61.6	61.7
취업자 수(Employed)	157,346	143,777	151,620	151,602	152,645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	60.7	55.2	58.0	58.0	58.4
실업자 수(Unemployed)	6,027	16,308	9,316	9,484	8,702
실업률(Unemployment rate, %)	3.7	10.2	5.8	5.9	5.4

출처: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A," 2021. 8. 6.;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A," 2020. 8. 7.

66) Fed,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1. 8.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minutes20210728.htm>



<표 4> 미국 사업체 조사 지표

(단위: 천명, 시간, 달러, 계절 조정)

구분	2019년 7월	2020년 7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¹⁾	2021년 7월 ¹⁾
전월 대비 고용자 수 변동					
비농업(Total nonfarm)	194	1,726	614	938	943
민간(Total private)	160	1,523	555	769	703
상품생산(Goods-producing)	9	60	16	45	44
민간서비스제공(Private service-providing)	151	1,463	539	724	659
정부(Government)	34	203	59	169	240
민간 근로시간 및 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	34.3	34.6	34.8	34.8	34.8
평균 시급	28.05	29.37	30.31	30.43	30.54
주당 평균 임금	962.12	1,016.20	1,054.79	1,058.96	1,062.79

주: 1) 잠정치

출처: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B," 2021. 8. 6.;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B," 2020. 8. 7.

- FOMC 참석자(participants)⁶⁷⁾들은 7월 27-28일에 개최된 FOMC 회의⁶⁸⁾에서 백신 보급 진척과 강력한 정책 지원에 기인한 경제활동 및 고용지표의 지속적 개선을 언급함
- 노동시장은 강한 수요에 기인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임금 인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함
 - 지난 6월 고용이 85만명 증가했고, 레저 및 접대 부문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음
 - 그럼에도 6월 실업률은 5.9% 수준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최근 몇 달간 노동참여율과 고용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소득 집단과 업종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함
- 인플레이션률이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세가 몇 달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은 상품 및 노동시장의 공급 제약과 경제 재개에 따른 소비 수요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함
 - 특히, 일시적인 공급 병목현상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했으며 이러한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사라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참여자는 2022년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경제 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델타 변이 및 백신 개발 및 접종 둔화에 기인해 공급망 붕괴와 인력 부족에 대해 우려를 포함
 - 위원(member)⁶⁹⁾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
-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선임연구원·서동규 연구원>

67) 연준 이사 7명과 지역연준 총재 12명

68) 베이지북 7월호를 참고 바람

69)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일본

로, 재정법 제41조⁷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잉여금은 36조 9,814억엔으로 나타남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20 결산개요 발표(2021. 7. 30.)⁷⁰⁾

- FY2020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84조 5,788 억엔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47조 5,973억엔으

[기타]

- 스가 총리, 긴급사태 선언 지역 및 확산 방지 등 중점조치 지역 추가 및 연장 발표(2021. 7. 30.; 2021.

<표 5> 일본 FY2020 일반회계 결산개요

(단위 : 억엔, 억엔 미만 버림)

구분	금액	참고
1. 세입결산 총액	1,845,788	
2. 세출결산 총액	1,475,973	
3. 재정법 제41조 잉여금	369,814	(1-2)
4. 2019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 잔액	0	
5. 2020년도 신규 발생 잉여금	369,814	(3-4)
6. 2020년도 이월 세출예산재원 순잉여금의 계산상 공제액	307,804	
7.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2020년도 신규 발생 잉여금	62,010	(5-6)
(1) 세입 순 증가액	23,130	
① 세수	56,966	
② 세외수입	6,164	
③ 공채금	-40,000	
(2) 세출 불용액	38,880	
8.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의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액	16,646	
(1) 지방교부세교부금 자원(지방교부세 정산액분)	16,132	
(2) 공항정비사업비 등 자원(항공기연료세 정산액분)	-	
(3) 부흥비용 및 부흥상환비용재원 (부흥분(FY2011 추경예산(제3호) 이월분 및 FY2020분) 에 의한 잉여금)	514	
9. 재정법 제6조 ⁷¹⁾ 에 의한 순 잉여금	45,363	(7-8)

주: 1. 세외수입에는 부흥분(FY2011 추경예산 제 1-2호 이월분) 17억엔 포함

2. 억엔 미만 버림으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0은 단위 미만 수치

1) 재정법 제6조: 각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금 중 1/2를 하회하지 않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이외에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다음연도(翌々年度)까지 공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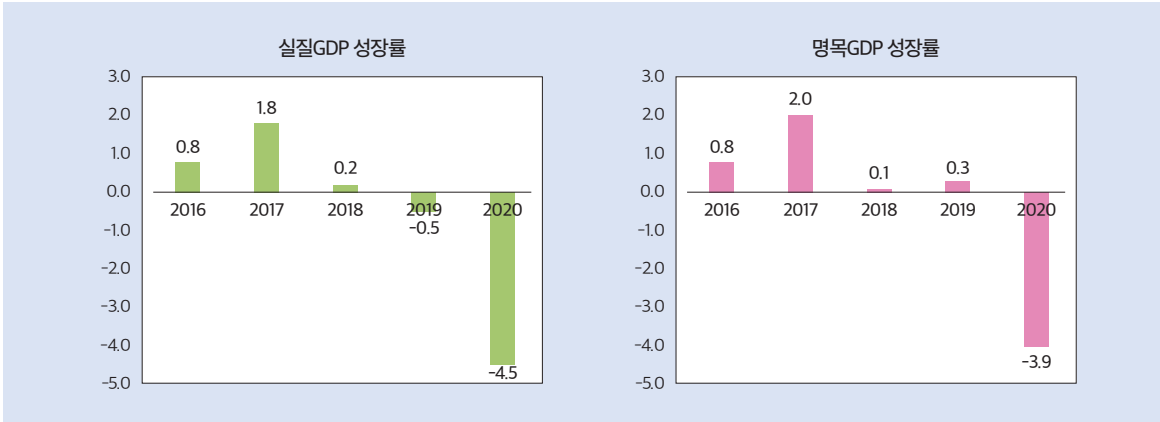
출처: 재무성, 「令和2年度一般会計決算概要」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0/ke030730.pdf, 2021. 7. 30.

70) 재무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0/ke030730.pdf

71) 재정법 제41조: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시킴

[그림 3] 일본 실질GDP 성장률 및 명목GDP 성장률(2016~2020년)

(단위: %)



출처: 내각부, 「2021년4~6개월4분기別 GDP速報(1次速報値)」 p. 7

8. 5.; 2021. 8. 17.; 2021. 8. 25.)^{72), 73), 74), 75)}

- (배경)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간사이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신규 감염자 및 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 (내용) 8월 25일 기준 21개 도도부현에 긴급사태 선언 및 12개 도도부현을 확산 방지 등 중점 조치 지역으로 추가
 - 기간은 9월 12일까지이며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되는 즉시 해제 가능
 - 대상 지역에서는 음식점에서의 주류의 제공이 원칙적으로 정지되고, 재택근무를 통한 출근자 70% 감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요청
 -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 협력금을 조기에 지

급하고, 고용 조정 보조금 및 긴급 소액 자금 등의 특례도 기한을 연장. 대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3천억엔의 교부금을 신규 배정할 예정

■ 내각부, 2021년 2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1. 8. 16.)⁷⁶⁾

- 2021년 2분기 GDP 1차 속보치 기준, 실질GDP 성장률은 0.3%(연율 1.3%), 명목GDP 성장률은 0.1%(연율 0.2%)로 나타남
- 2020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4.5%, 명목GDP 성장률은 -3.9%, GDP 디플레이터는 -0.3%로 나타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72)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99_suga/statement/2021/0730kaiken.html

73) 수상관저, http://www.kantei.go.jp/jp/99_suga/actions/202108/05corona.html

74)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99_suga/statement/2021/0817kaiken.html

75)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99_suga/statement/2021/0825kaiken2.html

76) 내각부,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독일

[예산·결산 등]

■ 연방재무부, 2021년도 상반기 예산사용 실적 발표 (2021. 7. 21.)⁷⁷⁾

- (재정수입) 2021년 상반기 재정수입은 약 1,47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5%(23억유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0.8%(11억유로) 증가한 1,369억유로로 집계됨
- (재정지출) 2021년 상반기 재정지출은 2,456억 유로로 전년 대비 22.7%(455억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수지) 연방 예산은 2021년 상반기에 986억 유로 적자를 기록

[기타]

■ 연방정부,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자금 승인 및 특별기금 설립 채택(2021. 7. 21.; 2021. 7. 30.; 2021. 8. 18.)⁷⁸⁾

- 독일 연방정부는 홍수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프로그램에 4억유로의 자금을 승인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연방주들과의 행정협정을 통

<표 6> 독일 2021년도 상반기 예산 사용 실적

(단위: 억유로)

구분	2020년 실적	2021년 목표 ¹⁾	2021년 6월 실적
재정지출 ²⁾	4,418	5,477	2,456
재정수입 ³⁾	3,111	3,073	1,470
조세수입	2,833	2,840	1,369
재정수지	-1,307	-2,404	-986
신규차입 ⁴⁾	1,305	2,402	194

주: 1) 2021. 6. 3. 발표된 2021회계연도 추경 포함

2) 신용시장에서 발생한 부채 상환 지출, 준비금 할당, 현금적자 커버를 위한 지출, 내부거래 제외

3) 신용시장에서 발생한 대출 수입, 준비금 인출, 현금잉여 수입 제외, 내부거래 제외

4) (-) 부채 상환; (+) 차입

출처: 연방재무부, 2021. 7. 21.

해 신속한 긴급구조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주에서 지원하는 1유로당 연방 자금 1유로를 지원하여 연방-주 공동구호자금은 최대 8억유로에 달하며, 지원금은 신속하고 비관료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강조

- 연방정부는 기반시설의 복원, 구조비용 면제, 피해 지역 세금 감면 등 혜택지원, EU 연대기금(European Union Solidarity Fund)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 등을 약속

- 또한 연방내각은 연방재무부 및 내무부 장관이 제출한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77) 독일 재무부, Monthly Report, 2021. 7. 2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Monthly_Report/Key_Figures/2021-07-federal-budget.html

78) 독일 재무부, 2021. 7. 2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7/2021-07-21-hilfspaket-fuer-hochwasserregionen.html>; 독일 연방정부, 2021. 7. 3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hochwasser-deutschland/bundesregierung-beschliesst-hochwasserhilfen-1944272>; 독일 재무부, 2021. 8. 1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8/2021-08-18-aufbauhilfe-fuer-vom-hochwasser-betroffene-regionen.html>



(Aufbauhilfe 2021)의 설립을 채택

- 특별기금에는 최대 300억유로의 연방자금이 배정될 예정이며, 이 중 20억유로의 연방 기반 시설 재건 비용은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부담하고 280억유로에 달하는 주정부 재건 조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

■ 연방통계청, 2021년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발표(2021. 7. 30.)⁷⁹⁾

- 2021년 2분기 독일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5% 성장, 전년 동기 대비 9.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 경제는 2021년 1분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성장률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분기에는 봉쇄 조치 완화로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표 7> 독일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분기 대비 ¹⁾	-1.8	-10.0	9.0	0.7	-2.1	1.5
전년 동기 대비 ²⁾	-1.5	-11.3	-3.6	-1.9	-3.4	9.6

주: 1) 가격조정, 계절 및 캘린더 효과 조정
 2) 가격조정

출처: 연방 통계청, Press release, 2021. 7. 30.

- 특히, 민간소비 및 정부소비 증가가 2분기 경제성장을 견인

■ 독일 친환경자동차 100만대 목표 달성 발표(2021. 8. 2.)⁸⁰⁾

- 연방 자동차교통청(Kraftfahrt-Bundesamt)에 따르면 7월 독일에서 전기차가 5만 7천대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100만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54%는 순수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선임연구원>



프랑스

[예산·결산 등]

■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 결과 발표(2021. 8. 4.)⁸¹⁾

- (재정수지) 2021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313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64억유로 증가
- (지출) 일반예산지출은 2,242억유로로 257억유로 증가
- (수입) 일반예산수입은 1,377억유로로 119억유로 증가
- (특별회계) 특별회계 재정적자는 132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04억유로 감소

79) 독일 통계청, 2021. 7. 30.,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1/07/PD21_365_811.html

80) 독일 경제에너지부, 2021. 8. 2., <https://www.bmwv.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1/08/20210802-erstmal-rollen-eine-million-elektrofahrzeuge-auf-deutschen-strassen.html>

81)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juin 2021," 2021. 8. 4., https://www.budget.gouv.fr/files/files/publications%20direction/SMB/SMB2021/situation_mensuelle_budget_Etat_30_juin_2021.pdf

[기타]

■ 프랑스 통계청, 2021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1. 7. 30.)⁸²⁾

- 프랑스 GDP가 2021년 2분기 전분기 대비 0.9% 증가하였고,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2019년 4분기)과 비교해 3.3% 낮은 수준

■ 프랑스 통계청, 2021년 2분기 실업률 발표(2021. 8. 13.)⁸³⁾

- 2021년 2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8.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선임연구원>



영국

[기타]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신규 혁신 전략(New Innovation Strategy)’ 발표(2021. 7. 22.)⁸⁴⁾

- (목적) 영국 정부는 ‘신규 혁신 전략’에서 과학,

연구, 혁신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서 영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

- 영국 전역에서 민간부문 R&D 투자를 제고하고 모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조치) 2035년까지 영국이 혁신의 글로벌 허브가 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목표를 설정

- (혁신 기업 지원(Unleashing Business)) 혁신을 원하는 기업이 민간 및 공공 투자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연간 R&D 공공투자를 220억파운드로 확대
- 성장 단계 생명과학 기업의 자금 부족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기업은행의 생명과학 투자 프로그램에 2억파운드를 투자
- 혁신 인프라 프로젝트에 5천만파운드 패키지 제공
- 혁신 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정부 조달 정책 추진 등

- (인재 유치(people)) 유능한 혁신 인재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 신규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숙련된 혁신 인재를 유치
- ‘Help to Grow: Management’⁸⁵⁾ 프로그램

82) 프랑스 통계청(INSEE), “GDP rebounded in Q2 2021 (+0.9%), and approached its pre-crisis level (3.3% from Q4 2019),” 2021. 7. 30.,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5414194>

83)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1,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8.0%,” 2021. 8. 13.,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5416744>

84)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New plans to put UK at front of global innovation race,” 2021. 7. 22.,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plans-to-put-uk-at-front-of-global-innovation-rac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UK Innovation Strategy: Leading the future by creating it, 2021. 7. 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innovation-strategy-leading-the-future-by-creating-it>

85) 중소기업 고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리더십, 마케팅, 인사, 재무 관련 훈련, 1대1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제공



을 통해 중소기업 고위 관리자의 비즈니스 성과와 회복력을 제고 등

- (기관 및 지역(Institutions & Places)) 연구·개발·혁신 기관이 비즈니스 니즈에 부응하도록 하고 영국 전역에서 혁신을 촉진

- R&D 혁신 기관에 대한 독립적 검토 시행
- R&D 역량 개발과 지역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Strength in Places Fund’, 1억 2,700만파운드)
- 산학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투자(‘Connecting Capability Fund’, 2,500만파운드) 등

- (미션 및 기술(Missions & Technologies)) 영국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 국내외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술과 미션의 혁신을 촉진

- 국내외 주요 문제에 대응하는 신규 혁신 미션 프로그램 수립
- 영국이 글로벌 경쟁력과 기회를 갖고 있는 7개 전략 기술 분야*를 선정

*① 첨단 소재·제조, ② AI·디지털·첨단 컴퓨팅, ③ 생물정보학·유전체학, ④ 공학생물학, ⑤ 전자·광자·양자, ⑥ 에너지·환경 기술, ⑦ 로봇공학·스마트 머신

- 5,900만파운드의 산업, 대학, 정부투자자로 혁신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 중심의 연구 프로젝트 착수 등

■ 라이브 이벤트 산업 지원을 위한 재보험제도 발표 (2021. 8. 5.)⁸⁶⁾

● (배경) 코로나19 제한이 해제되고 경제가 재개되는 동안 일부 이벤트 기관들은 적절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우려됨

● (지원 내용) 정부는 일자리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보험사들과 협력해 7억 5천만파운드 이상 금액의 ‘라이브 이벤트 재보험제도(Live Events Reinsurance Scheme)’를 운영하여 이벤트 개최 기관에 확실성을 제공할 예정

- (대상) 음악 축제, 비즈니스 이벤트 등 영국 전역의 라이브 이벤트를 지원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
- (방식) 보험사가 기업이 필요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보험 역할을 함
- (기간) 2021년 9월부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2년 9월 말까지 운영 예정

■ 영국 정부, 홍수 및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한 투자 계획 발표(2021. 7. 29.)⁸⁷⁾

● (투자규모) 영국 정부는 홍수 및 해안 침식 방지 프로그램에 향후 6년간 52억파운드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임

86) HM Treasury, “Government-backed insurance scheme to give boost to events industry,” 2021. 8. 5.,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backed-insurance-scheme-to-give-boost-to-events-industry>

87)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More than 1,000 flood schemes to benefit from record investment,” 2021. 7. 29., <https://www.gov.uk/government/news/more-than-1000-flood-schemes-to-benefit-from-record-investment>;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Flood and coastal erosion risk management: an investment plan for 2021 to 2027, 2021. 7. 2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lood-and-coastal-erosion-risk-management-an-investment-plan-for-2021-to-2027>

- 이는 지난 2015~2021년 투자(약 26억파운드)의 약 2배 수준임
- FY2021-22에는 홍수 완화 프로그램에 8억 6천만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여 잉글랜드 전역, 1천개 이상 계획의 설계·건설을 지원
- (기대 효과) 이를 통해 홍수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제고하고 영국 전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
- ‘홍수 및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한 투자 계획 (Flood and Coastal Erosion Investment Plan)’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는 2027년까지 33만 6천채의 건물을 보호하여 320억파운드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홍수 리스크를 최대 11%까지 줄일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중국

[예산·결산 등]

■ 재정부, 2021년 상반기 재정수입 및 지출 발표 (2021. 7. 20.)⁸⁸⁾

- 2021년 상반기(1~6월) 전국 일반공공예산(全国

一般公共预算) 수입⁸⁹⁾은 11조 7,11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2%, 20.6% 증가한 5조 4,624억위안, 6조 2,492억위안으로 집계

- 2021년 상반기 전국 일반공공예산 지출⁹⁰⁾은 12조 1,67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출(中央一般公共预算本级支出)⁹¹⁾은 1조 5,21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 지방정부 지출⁹²⁾ 10조 6,46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

<표 8> 중국 2021년 상반기(1~6월) 일반공공예산 재정수입 및 지출

(단위: 억위안, %)

구분	2021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입	지출
전국 일반공공예산 재정수입 (全国一般公共预算收入)	117,116	(21.8)
중앙정부 재정수입 (中央一般公共预算收入)	54,624	(23.2)
지방정부 재정수입 (地方一般公共预算本级收入)	62,492	(20.6)
전국 일반공공예산 재정지출 (一般公共预算支出)	121,676	(4.5)
중앙정부 재정지출 (中央一般公共预算本级支出)	15,216	(-6.9)
지방정부 재정지출 (地方一般公共预算支出)	106,460	(6.4)

출처: 중국 재정부, 「2021년 상반기 재정수입 및 지출 상황」 2021.

88) 재정부, http://gks.mof.gov.cn/tongjishuju/202107/t20210720_3739108.htm, 최종 검색일자: 2021. 8. 3.

89) 일반정부 기준을 의미하며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조세수입(18개 세목)과 비조세수입(8개 세목)으로 구분

90) 재정지출은 분세제도 재정관리체제하에 중앙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로 구분,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일반공공서비스, 외교, 국방, 공공안전, 교육, 과학기술, 문화체육 및 미디어, 사회보장 및 취업 등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

91) 주로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기관과 관련된 경비,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지출 및 중앙정부 소관 사업 지출 등이 해당

92) 지방정부 기구의 경상적 지출, 지역경제 및 사회사업의 발전과 관련된 지출 등이 해당



[기타]

■ 류쿤(刘昆) 재정부 부장, 하반기 재정정책 운용 방향 발표(2021. 7. 31.)^{93), 94)}

- 류쿤 부장은 하반기 재정정책 방향을 “한 개의 유지(一个保持)”, “두 개의 제고(两个提高)”, “세 가지 중점(三项重点)”으로 요약
 - “한 개의 유지”란 재정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
 - 재정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없을 것이며 적극적인 세금감면 등 경제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유지
 - “두 개의 제고”란 지출 효율성과 재원 사용성과를 높여겠다는 의미
 - (지출 효율성 제고) 재원 배분 과정에서 집행률을 강화하고 자금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적재적소에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
 - (재원 사용성과 제고) 모든 재정지출에 대해 성과과주의를 도입하여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효과를 따져 보고 효과가 없는 경우 책임을 물을 것
 - “세 가지 중점”이란 국가적 핵심 아젠다 지원, 민생보장 개선, 재정리스크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
 - (국가적 핵심 아젠다 지원) 핵심기술 경쟁에서 우위선점, 산업망 및 공급망 업그레이드,

농촌진흥전략, 오염방지 등의 국가적 핵심 아젠다 달성에 방점을 두고 재정지원

- (민생보장 개선) 고용우선정책, 사회보장 수준 강화, 공공위생 투자 강화, 문화산업 지원 등 포괄
- (재정 리스크 해소) 국채 및 지방정부채권 발행 감독을 통해 지방정부채권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고 재정 리스크 예방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 제14차 5개년 계획 통지 발표(2021. 6. 29.)⁹⁵⁾

-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 확대
 -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고위험 직업군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중점 추진
 - 2025년까지 산재보험 가입 인구를 2020년 말 2억 6,800만명에서 2.8억명으로 확대
 - 중소기업 재직자, 농민공 등의 실업보험 가입률 확대 추진
 - 2025년까지 실업보험 가입인구를 2020년 말 2억 1,700만명에서 2억 3천만명으로 확대
- 양로보험의 전국 단위 운용체계 수립과 양로보험 최저납부기한 연장 등의 변화를 예고
 - 성(省)급으로 운용되던 양로보험의 전국 단위

93) 국무원, http://english.www.gov.cn/statecouncil/ministries/202107/31/content_WS6104b2b4c6d0df57f98d8ddb0.html, 최종 검색일자: 2021. 8. 10.

94) 국무원, http://www.gov.cn/xinwen/2021-08/02/content_5628900.htm, 최종 검색일자: 2021. 8. 10.

95)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6/30/content_5621671.htm, 최종 검색일자: 2021. 8. 23.

96)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성급으로 운용되고 있어 납부요율, 양로보험금 수령액, 기금수지관리 제도 등이 성별로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경제 발전 격차에 따라 기금수지 현황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차이가 있고 지역간 이동 시 양로보험금 수령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전국 단위로 통일하여 양로보험제도를 운용할 때 보장 수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운용체계 수립하여 양로보험 운용에 있어 중앙정부의 직권을 강화⁹⁶⁾

- 점진적으로 법정 퇴직연령을 연장하고 양로금 수령 전 최저납부기한 연장⁹⁷⁾

●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의 보장 수준이 경제 발전 수준과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 물가 상승률, 평균 임금,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점진적 양로금 및 실업급여 표준 상승을 통한 사회보장 수준 제고

■ 베이징 포함 주요 지역, 최저임금표준 인상 발표 (2021. 8. 1.)⁹⁸⁾

● 2020년 한 해 동안 다수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였으나 2021년 올해 31개 성·시·자치구 중 베이징을 포함한 11개 지역에서 최저임금표준 인상 발표⁹⁹⁾

- 31개 지역 중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시로 2021년 7월 1일부터 상하이 월 최저임금표준은 2,480위안에서 2,590위안으로 조정되어 4.4% 상승하였으며,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22위안에서 23위안으로 인상되어 4.5% 상승
- 베이징시의 경우 2021년 8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표준이 2,200위안에서 2,320위안으로 인상이 5.5% 상승하였으며,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은 12.64위안에서 13.33위안으로 인상되어 5.5% 상승

■ 국무원, 인구 장기균형발전을 위한 출산정책에 관한 결정 발표(2021. 7. 20.)¹⁰⁰⁾

● ‘결정’에서는 2025년까지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 수준 향상, 보편적 돌봄 서비스 체계 수립, 출산·양육·교육비용 절감 정책의 내용을 제시

- 허용되는 자녀의 수를 초과하여 출산할 경우 부과하던 사회부양비(社会抚养费)를 철폐하고 호적 등록, 입학, 취직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던 등의 관련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선언

- 조건을 갖춘 기업이 탁아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국유기업이 보편적 탁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보편적 돌봄 서비스 구축

- 지방정부에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을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고

- 학교 간의 교육수준 차이 평준화, 도농 간 교육수준 차이 완화, 사교육 금지 등을 통해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비용을 절감해 나갈 방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재원 연구원>

97) 양로보험금은 만 60세 이상이고 최저납부기한이 15년 이상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령할 수 있음

98) 각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웹사이트 및 인민일보(<http://finance.people.com.cn/n1/2021/0730/c1004-32175460.html>, 최종 검색일자: 2021. 8. 21.) 참조

99) 중국의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월 최저임금 혹은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눌 수 있고, 월 최저임금은 상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됨.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1개 성·시·자치구가 해당 지역의 소비 및 가격 지수, 근로자 개인이 지불하는 사회보험료, 근로자의 평균 임금, 경제발전 수준 및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별화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에 사회보험료 포함 여부도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한국노동연구원, 「중국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그 영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겨울호(Vol. 7), 2018.)

100)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2021-07/20/content_5626190.htm, 최종 검색일자: 2021. 8. 3.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통권 제303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1년 9월 15일 발행 / 제25권 제9호(통권 제30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희망

2020. 05. 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